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 1

1. 재정규모 ····· 3

2. 예산안 현황 ····· 6

가. 세입예산안 ····· 6

나. 세출예산안 ····· 7

3.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 9

가. 양성평등기금 ····· 9

나. 청소년육성기금 ····· 13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7

4. 분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 19

가. 여성정책국 ····· 19

나. 권익증진국 ····· 21

다. 청소년정책관 ····· 24

라. 가족정책관 ····· 27

마.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 30

5. 2025년도 신규 사업 및 종료 사업 ····· 33

Ⅱ. 검토 의견 ····· 35

1. 여성정책국 ····· 37

가. 총괄 ····· 37

1) 개요 ····· 37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39

나. 일반회계 ····· 42

1) 양성평등문화확산(1232-331) ····· 42

2) 여성사전시관(1232-332) ····· 47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3

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 53

라.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 69

1) 개요 ····· 69

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산하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기반 강화 ····· 73

2. 권익증진국 ····· 79

가. 총괄 ····· 79

1) 개요 ····· 79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82

나. 일반회계 ····· 85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 ····· 85

2)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 98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 101

4)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117

다. 양성평등기금 ····· 127

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 127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38
1)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 138
3. 청소년정책관 ····· 143
가. 총괄 ····· 143
1) 개요 ····· 143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145
나. 일반회계 ····· 147
1)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 147
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159
다. 청소년육성기금 ····· 166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2252-436) ····· 166
2)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2254-431) ····· 178
4. 가족정책관 ····· 193
가. 총괄 ····· 193
1) 개요 ····· 193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196
나. 일반회계 ····· 200
1) 가족역량강화지원(2332-321) ····· 200
2)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2332-331) ····· 214
3) 아이돌봄 지원(2334-341) ····· 225
4)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 247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3
1) 가족센터 건립(2333-334) ····· 263

라. 양성평등기금 ····· 270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270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280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291

5. 기획조정실・대변인실・운영지원과 ····· 302

가. 총괄 ····· 302
1) 개요 ····· 302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306

나. 일반회계 ····· 306
1)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1138-511) ····· 306
2) 전산경비(7111-261) ····· 311

[참고자료] ····· 314

1.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2024년 근속연수별 급여 지급기준표 ····· 314
2.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 315
3. 여성가족부 2025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 ····· 317
4.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 ····· 320
5. 부처별 성인지 대상사업 현황 ····· 322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 324

문 의 처	
가족정책관	02)6788 - 5649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 여성정책국	02)6788 - 5650
권익증진국	02)6788 - 5644
총괄· 청소년정책관	02)6788 - 5645

Ⅰ 예산안 개요

Ⅰ. 예산안 개요

1. 재정규모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규모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을 포함하여[1] 총 1조 8,962억 9,3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958억 9,800만원(5.3%) 증가하였음.

법무부가 관리·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제외할 경우 1조 8,568억 8,0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938억 3,900만원(5.3%)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

(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총 계	1,763,041	1,763,041	1,856,880	93,839	5.3
(범피기금 포함)	(1,800,395)	(1,800,395)	(1,896,293)	(95,898)	5.3
일반회계	687,239	687,239	752,823	65,584	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4,227	84,227	91,663	7,436	8.8
양성평등기금	820,868	820,868	841,022	20,154	2.5
청소년육성기금	170,707	170,707	171,372	665	0.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7,354	37,354	39,413	2,059	5.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그 중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사업(성폭력 피해자지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출 규모에 포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및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를 포함한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실제적인 총지출 규모는 1조 8,163억 1,7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928억 7,700만원(5.4%)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 총지출 677조원에서 0.27%를 차지하는 규모임.

【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예산 소계(a)	**771,466**	**771,466**	**844,486**	**73,020**	**9.5**
일반회계	687,239	687,239	752,823	65,584	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4,227	84,227	91,663	7,436	8.8
기금 소계(b)	**914,620**	**914,620**	**932,418**	**17,798**	**1.9**
양성평등기금	758,243	758,243	776,927	18,684	2.5
청소년육성기금	156,377	156,377	155,491	△886	△0.6
총지출 규모(a+b)	**1,686,086**	**1,686,086**	**1,776,904**	**90,818**	**5.4**
범죄피해자보호기금(c)	37,354	37,354	39,413	2,059	5.5
합계(a+b+c)	**1,723,440**	**1,723,440**	**1,816,317**	**92,877**	**5.4**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분야별로 여성가족부의 지출 규모를 보면,

여성정책 분야는 1,203억 3,6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05억 6,700만원(9.6%) 증가하였고,

권익증진 분야는 1,394억 8,9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44억 1,000만원(3.3%)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정책 분야는 2,449억 4,2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57억 1,200만원(2.4%) 증가하였음.

가족정책 분야는 1조 2,703억 5,3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733억 8,300만원(6.1%) 증가하였으며,

행정지원 분야는 411억 9,7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1억 9,500만원(△2.8%)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정책 분야별 지출 규모 】

(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1,723,440**	**1,723,440**	**1,816,317**	**92,877**	**5.4**
여성정책	109,769	109,769	120,336	10,567	9.6
권익증진	135,079	135,079	139,489	4,410	3.3
청소년정책	239,230	239,230	244,942	5,712	2.4
가족정책	1,196,970	1,196,970	1,270,353	73,383	6.1
행정지원	42,392	42,392	41,197	△1,195	△2.8

주: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여성가족부 소관사업 포함, 여유자금 운용 제외
2. 행정지원: 인건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
3.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333억 2,2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48억 3,400만원(△12.7%)이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여성가족부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38,156	33,322	△4,834	△12.7
일반회계 소계	36,815	32,942	△3,873	△10.5
◦ 건물대여료	20	20	-	-
◦ 기타재산·이자수입	2,922	2,922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3,873	30,000	△3,873	△1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1,341	380	△961	△71.7
◦ 기타재산·이자수입	86	-	△86	순감
◦ 기타경상이전수입	1,255	380	△875	△69.7

자료: 여성가족부

이는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감소에서 기인함.

나. 세출예산안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8,444억 8,6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730억 2,000만원(9.5%)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여성가족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771,466	771,466	844,486	73,020	9.5
일반회계 소계	687,239	687,239	752,823	65,584	9.5
◦ 인건비	24,430	24,430	24,938	508	2.1
◦ 기본경비	4,329	4,329	4,337	8	0.2
◦ 주요사업비	658,480	658,480	723,548	65,068	9.9
- 여성정책	34,592	34,592	32,623	△1,969	△5.7
- 청소년정책	87,775	87,775	94,426	6,651	7.6
- 가족정책	497,646	497,646	559,804	62,158	12.5
- 권익증진	24,878	24,878	24,817	△61	△0.2
- 행정지원	13,589	13,589	11,878	△1,711	△1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84,227	84,227	91,663	7,436	8.8
◦ 주요사업비	84,227	84,227	91,663	7,436	8.8
- 여성정책	75,177	75,177	87,713	12,536	16.7
- 가족정책	9,050	9,050	3,950	△5,100	△56.4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7,528억 2,3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655억 8,400만원(9.5%)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예산안의 증가

는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455억 6,200만원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임.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과 가족센터건립 사업 예산으로 총 916억 6,300만원이며 2024년 대비 74억 3,600만원(8.8%) 증가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의 증가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이 125억 3,600만원 증액된 것이 요인임. 가족센터 건립 예산은 지역자율계정[2]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3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51억원(△56.4%) 감액되었음.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에 따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예산안을 편성함.

3.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의 2025년 수입·지출계획안을 보면, 총 규모는 8,410억 2,200만원으로 2024년 수정계획(8,208억 6,800만원) 대비 201억 5,400만원(2.5%) 증가하였음.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안은 자체수입 187억 7,600만원, 정부내부수입 7,769억 2,600만원, 여유자금회수 453억 2,000만원 등으로 이루어짐.

지출계획안은 사업비가 7,769억 2,600만원, 기금운영비 100만원, 정부내부지출 260억원, 여유자금 운용 380억 9,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사업비는 2024년 수정계획에 비해 186억 8,400만원(2.5%)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체수입	27,698	16,491	16,491	18,776	2,285	13.9
	- 기타재산수입	1,760	1,143	1,143	1,128	△15	△1.3
	- 기타경상이전수입	25,938	15,347	15,347	17,647	2,300	15.0
	- 민간융자원금회수	-	1	1	1	-	-
	◦정부내부수입	630,008	758,242	758,242	776,926	18,684	2.5
	- 일반회계전입금	-	-	-	-	-	-
	- 기금전입금	630,008	758,242	758,242	776,926	18,684	2.5
	◦여유자금회수	32,515	46,135	46,135	45,320	△815	△1.8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258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28,257	46,135	46,135	45,320	△815	△1.8
합 계		690,221	820,868	820,868	841,022	20,154	2.5
지출	◦사 업 비	628,310	758,242	758,242	776,926	18,684	2.5
	- 경상지출	628,310	758,242	758,242	776,926	18,684	2.5
	- 융자지출	-	-	-	-	-	-
	◦기금운영비	2	1	1	1	-	-
	- 인건비	-	-	-	-	-	-
	- 기타운영비	2	1	1	1	-	-
	◦정부내부지출	10,446	17,305	17,305	26,000	8,695	50.2
	- 복권기금 전출금	10,446	17,305	17,305	26,000	8,695	50.2
	◦여유자금운용	51,463	45,320	45,320	38,095	△7,225	△15.9
	- 한국은행예치금	2,954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8,508	45,320	45,320	38,095	△7,225	△15.9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단위사업 수준에서 살펴보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190억 3,700만원으로 2024년(185억 1,000만원) 대비 5억 2,700만원(2.8%) 증가하였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비는 512억 9,000만원으로 2024년(494억 5,800만원) 대비 18억 3,200만원(3.7%) 증가하였음.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비는 5,614억 200만원으로 2024년(5,441억 4,300만원) 대비 172억 5,900만원(3.2%) 증가하였음.

가족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1,451억 9,700만원으로 2024년(1,461억 3,100만원) 대비 9억 3,400만원(△0.6%)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 계	820,868	820,868	841,022	20,154	2.5
□ 주요사업비	758,242	758,242	776,926	18,684	2.5
〔215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510	18,510	19,037	527	2.8
〔3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510	18,510	19,037	527	2.8
〔2159〕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49,458	49,458	51,290	1,832	3.7
〔43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41,497	41,497	43,167	1,670	4.0
〔436〕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961	7,961	8,123	162	2.0
〔23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544,143	544,143	561,402	17,259	3.2
〔43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535,595	552,833	17,238	3.2
〔43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3,303	2,723	△580	△17.6
〔43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245	5,245	5,846	601	11.5
〔2356〕 가족서비스 지원	146,131	146,131	145,197	△934	△0.6
〔43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146,131	146,131	145,197	△934	△0.6
□ 기금운영비	1	1	1	-	-
〔7176〕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영비	1	1	1	-	-
〔601〕 기금관리비	1	1	1	-	-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62,625	62,625	64,095	1,470	2.3
〔8999〕 복권기금전출(양성평등기금)	17,305	17,305	26,000	8,695	50.2
〔890〕 양성평등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전출	17,305	17,305	26,000	8,695	50.2
〔9701〕 여유자금운용(양성평등기금)	45,320	45,320	38,095	△7,225	△15.9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5,320	45,320	38,095	△7,225	△15.9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나.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2025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을 보면, 총 규모는 1,713억 7,200만원으로 2024년 수정계획(1,707억 700만원) 대비 6억 6,500만원(0.4%) 증가하였음.

2025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은 기타 재산수입 4억 5,4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63억 9,700만원, 기타잡수익 41억 2,300만원, 기금전입금 1,512억 5,900만원, 여유자금 회수 91억 3,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계획안의 내역은 사업비가 1,554억 4,800만원, 기금운영비 4,300만원, 복권기금 전출금 7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 7억 6,000만원, 여유자금 운용 79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비는 2024년 계획 대비 8억 8,600만원(△0.6%)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 자체수입	5,784	10,340	10,340	10,974	634	6.1
	- 기타재산수입	768	374	374	454	80	21.4
	- 민간출연금	50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4,966	5,818	5,818	6,397	579	10.0
	- 기타잡수입	-	4,148	4,148	4,123	△25	△0.6
	◦ 정부내부수입	157,973	155,387	155,387	151,259	△4,128	△2.7
	- 기금전입금	149,473	149,596	149,596	151,259	1,663	1.1
	- 기금예수금	8,500	5,791	5,791	-	△5,791	순감
	◦ 여유자금회수	16,845	4,980	4,980	9,139	4,159	83.5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78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5,967	4,980	4,980	9,139	4,159	83.5
합 계		180,602	170,707	170,707	171,372	665	0.4
지출	◦ 사 업 비	159,827	156,334	156,334	155,448	△886	△0.6
	- 경상지출	159,827	156,334	156,334	155,448	△886	△0.6
	- 융자지출	-	-	-	-	-	-
	◦ 기금운영비	37	43	43	43	-	-
	- 인건비	37	38	38	40	2	5.3
	- 기타운영비	-	5	5	3	△2	△40.0
	◦ 정부내부지출	11,419	5,191	5,191	7,960	2,769	53.3
	- 복권기금 전출금	11,045	4,512	4,512	7,200	2,688	59.6
	-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	374	679	679	760	81	11.9
	◦ 여유자금운용	9,319	9,139	9,139	7,921	△1,218	△13.3
	- 한국은행예치금	1,837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7,482	9,139	9,139	7,921	△1,218	△13.3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단위사업 수준에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 사업비는 49억 3,200만원으로 2024년(48억 7,900만원) 대비 5,300만원(1.1%)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사업비는 303억 8,700만원으로 2024년(314억 8,500만원) 대비 10억 9,800만원(△3.5%) 감소하였음.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비는 41억 8,900만원으로 2024년(67억 3,800만원) 대비 25억 4,900만원(△37.8%)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는 1,159억 4,000만원으로 2024년(1,132억 3,200만원) 대비 27억 800만원(2.4%)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 계	170,707	170,707	171,372	665	0.4
□ 주요사업비	156,334	156,334	155,448	△886	△0.6
〔2138〕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	4,879	4,879	4,932	53	1.1
〔432〕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879	4,879	4,932	53	1.1
〔2251〕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31,485	31,485	30,387	△1,098	△3.5
〔432〕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485	31,485	30,387	△1,098	△3.5
〔2252〕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6,738	6,738	4,189	△2,549	△37.8
〔43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6,738	6,738	4,189	△2,549	△37.8
〔2254〕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113,232	113,232	115,940	2,708	2.4
〔431〕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72,073	72,073	71,820	△253	△0.4
〔43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30,855	30,855	33,079	2,224	7.2
〔434〕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운영	10,304	10,304	11,041	737	7.2
□ 기금운영비	43	43	43	-	-
〔7076〕 기금운영비	43	43	43	-	-
〔201〕 기금관리비	43	43	43	-	-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5,191	5,191	7,960	2,769	53.3
〔8910〕 복권기금 전출(청소년육성기금)	4,512	4,512	7,200	2,688	59.6
〔890〕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전출	4,512	4,512	7,200	2,688	59.6
〔8920〕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	679	679	760	81	11.9
〔84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679	679	760	81	11.9
〔9701〕 여유자금운용(청소년육성기금)	9,139	9,139	7,921	△1,218	△13.3
〔97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139	9,139	7,921	△1,218	△13.3

주: 기금의 경우 예산은 계획, 본예산은 당초계획, 추경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주체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5년도 수입·지출 계획안 총 규모는 1,448억 7,700만원으로 2024년(1,370억 5,400만원) 대비 78억 2,300만원(5.7%) 증액되었음.

동 기금의 2024년도 지출 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총 945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이 중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세부사업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394억 1,3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20억 5,900만원(5.5%) 증액되었음.

---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4.「아동복지법」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법률구조법」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6.「범죄피해자 보호법」제9조 및「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범죄피해자 보호법」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범죄피해자 보호법」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 감	
				B-A	%
수입	○ 재산수입	417	730	313	75.1
	- 기타재산수입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417	730	313	75.1
	○ 경상이전수입	4,514	4,883	369	8.2
	- 변상금	1,797	1,719	△78	△4.3
	- 기타경상이전수입	2,717	3,164	447	16.5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6,002	50,502	4,500	9.8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6,002	50,502	4,500	9.8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6,121	88,762	2,641	3.1
	- 일반회계전입금	86,121	88,762	2,641	3.1
합 계		137,054	144,877	7,823	5.7
지출	○ 사업비	88,606	94,545	5,939	6.7
	- [1135]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37,060	40,005	2,945	7.9
	- [1136]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51,546	54,540	2,994	5.8
	▪ [303]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9,413	2,059	5.5
	- [1137]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	-	-	-
	○ 기금운영비	48	48	-	-
	- 기금관리비	48	48	-	-
	○ 기금간거래(예수금상환)	2,500	2,230	△270	△10.8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500	2,230	△270	△10.8
	○ 기금간거래	49	15	△34	△69.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9	15	△34	△69.4
	○ 여유자금운용	45,851	48,039	2,188	4.8
	- 통화금융기관예치	45,851	48,039	2,188	4.8

자료: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각목명세서, 지출총괄표(법무부)

4. 분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국 소관의 202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총 1,076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975억 4,000만원) 대비 101억 2,100만원(10.4%)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97,540	97,540	107,661	10,121	10.4
일반회계	22,363	22,363	19,948	△2,415	△10.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5,177	75,177	87,713	12,536	16.7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는 2024년(3억 8,600만원) 대비 2억 2,000만원(57.0%) 증액된 6억 600만원, 여성사전시관은 2024년(43억 5,200만원) 대비 19억 4,100만원(△44.6%) 감액된 24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2024년(751억 7,700만원) 대비 125억 3,600만원(16.7%) 증액된 877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여성정책국 예산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97,540	97,540	107,661	10,121	10.4
일반회계	22,363	22,363	19,948	△2,415	△10.8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48	348	318	△30	△8.6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4,075	4,075	3,940	△135	△3.3
양성평등문화확산	803	803	671	△132	△16.4
여성사전시관	4,352	4,352	2,411	△1,941	△44.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2,191	12,191	11,796	△395	△3.2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386	386	606	220	57.0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	85	85	83	△2	△2.4
여성정책기본경비(비총액)	123	123	123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177	75,177	87,713	12,536	16.7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5,177	75,177	87,713	12,536	16.7

자료: 여성가족부

나. 권익증진국

권익증진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 포함)은 총 1,398억 6,300만원으로 2024년(1,354억 5,800만원) 대비 44억 500만원(3.3%)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4년(252억 5,700만원) 대비 6,600만원(△0.3%) 감소한 251억 9,100만원이고, 양성평등기금 계획안은 2024년(679억 6,800만원) 대비 23억 5,900만원(3.5%) 증가한 703억 2,700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 계획안은 2024년(48억 7,900만원) 대비 5,300만원(1.1%) 증가한 49억 3,200만원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24년(373억 5,400만원) 대비 20억 5,900만원(5.5%) 증가한 394억 1,300만원임.

【 2025년도 권익증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135,458	135,458	139,863	4,405	3.3
일반회계	25,257	25,257	25,191	△66	△0.3
양성평등기금	67,968	67,968	70,327	2,359	3.5
청소년육성기금	4,879	4,879	4,932	53	1.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7,354	37,354	39,413	2,059	5.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은 2024년(34억 1,500만원) 대비 6억 3,900만원(18.7%) 증가한 40억 5,400만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은 2024년(2억 9,1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37.8%)이 증가한 4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양성평등기금에서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2024년(414억 9,700만원) 대비 16억 7,000만원(4.0%) 증가한 431억 6,700만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2024년(185억 1,000만원) 대비 5억 2,700만원(2.8%)이 증가한 190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은 2024년(48억 7,900만원) 대비 5,300만원(1.1%)이 증가한 49억 3,2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2024년(373억 5,400만원) 대비 20억 5,900만원(5.5%) 증가한 394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 권익증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계(범죄피해자보호기금 포함)	**135,458**	**135,458**	**139,863**	**4,405**	**3.3**
일반회계	**25,257**	**25,257**	**25,191**	**△66**	**△0.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77	1,077	1,109	32	3.0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3,415	3,415	4,054	639	18.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692	14,692	13,735	△957	△6.5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91	291	401	110	37.8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5,403	5,403	5,518	115	2.1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	141	141	141	-	-
권익증진기본경비(비총액)	238	238	233	△5	△2.1
양성평등기금	**67,968**	**67,968**	**70,327**	**2,359**	**3.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18,510	18,510	19,037	527	2.8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497	41,497	43,167	1,670	4.0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7,961	7,961	8,123	162	2.0
청소년육성기금	**4,879**	**4,879**	**4,932**	**53**	**1.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879	4,879	4,932	53	1.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7,354**	**37,354**	**39,413**	**2,059**	**5.5**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7,354	39,413	2,059	5.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다.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455억 2,800만원으로 2024년(2,398억 2,500만원) 대비 57억 300만원(2.4%)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4년(883억 7,000만원) 대비 66억 4,200만원(7.5%) 증가한 950억 1,200만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안은 2024년(1,514억 5,500만원) 대비 9억 3,900만원(△0.6%) 감소한 1,505억 1,600만원임.

【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239,825	239,825	245,528	5,703	2.4
일반회계	88,370	88,370	95,012	6,642	7.5
청소년육성기금	151,455	151,455	150,516	△939	△0.6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은 2024년(20억 200만원) 대비 4억 2,500만원(21.2%) 증액된 24억 2,700만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은 2024년(36억 9,100만원) 대비

20억 1,500만원(54.6%)이 증액된 5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2024년(97억 4,500만원) 대비 29억 8,200만원(30.6%)이 증액된 127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024년(308억 5,500만원) 대비 22억 2,400만원(7.2%) 증액된 330억 7,900만원,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은 2024년(103억 400만원) 대비 7억 3,700만원(7.2%)이 증액된 11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2024년(67억 3,800만원) 대비 25억 4,900만원(△37.8%) 감소한 4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청소년정책관	**239,825**	**239,825**	**245,528**	**5,703**	**2.4**
일반회계	**88,370**	**88,370**	**95,012**	**6,642**	**7.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2,002	2,002	2,427	425	21.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27	14,827	16,425	1,598	10.8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7,953	7,953	8,328	375	4.7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3,691	3,691	5,706	2,015	54.6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745	9,745	12,727	2,982	30.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9,967	39,967	39,459	△508	△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9,590	9,590	9,354	△236	△2.5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82	282	275	△7	△2.5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13	313	311	△2	△0.6
청소년육성기금	**151,455**	**151,455**	**150,516**	**△939**	**△0.6**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485	31,485	30,387	△1,098	△3.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6,738	6,738	4,189	△2,549	△37.8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72,073	72,073	71,820	△253	△0.4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0,855	30,855	33,079	2,224	7.2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10,304	10,304	11,041	737	7.2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라.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조 2,705억 1,400만원으로 2024년(1조 1,971억 2,200만원) 대비 733억 9,200만원(6.1%)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4,977억 9,800만원) 대비 621억 6,700만원(12.5%) 증가한 5,599억 6,500만원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90억 5,000만원) 대비 51억원(△56.4%) 감소한 39억 5,000만원이며, 양성평등기금 계획안은 2024년(6,902억 7,400만원) 대비 163억 2,500만원(2.4%) 증가한 7,065억 9,900만원임.

【 2025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1,197,122	1,197,122	1,270,514	73,392	6.1
일반회계	497,798	497,798	559,965	62,167	1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050	9,050	3,950	△5,100	△56.4
양성평등기금	690,274	690,274	706,599	16,325	2.4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억 3,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아이돌봄 지원은 2024년(4,678억

6,600만원) 대비 455억 6,200만원(9.7%) 증액된 5,134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족역량강화지원은 2024년(27억 6,200만원) 대비 6억 6,000만원(△23.9%) 감액된 21억 200만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2024년(245억 1,300만원) 대비 114억 8,700만원(△46.9%) 감액된 130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가족센터건립(지역자율계정)은 건립 완료로 인해 2024년(90억 5,000만원) 대비 51억원(△56.4%) 감소한 3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양성평등기금에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라 2024년(5,355억 9,500만원) 대비 172억 3,800만원(3.2%) 증액된 5,528억 3,3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은 2024년(52억 4,500만원) 대비 6억 100만원(11.5%) 증액된 58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2024년(33억 300만원) 대비 5억 8,000만원(△17.6%) 감소된 27억 2,300만원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2024년(1,461억원 3,100만원) 대비 9억 3,400만원(△0.6%) 감소된 1,45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가족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197,122	1,197,122	1,270,514	73,392	6.1
일반회계	497,798	497,798	559,965	62,167	12.5
가족역량강화지원	2,762	2,762	2,102	△660	△23.9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505	2,505	2,518	13	0.5
아이돌봄 지원	467,866	467,866	513,428	45,562	9.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4,513	24,513	13,026	△11,487	△46.9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	28,730	28,730	순증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19	19	19	-	-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33	133	142	9	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050	9,050	3,950	△5,100	△56.4
가족센터건립(지역자율계정)	9,050	9,050	3,950	△5,100	△56.4
양성평등기금	690,274	690,274	706,599	16,325	2.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535,595	552,833	17,238	3.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3,303	2,723	△580	△17.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245	5,245	5,846	601	11.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46,131	145,197	△934	△0.6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마.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여성가족부의 행정지원 부서는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등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27억 5,1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7억 4,400만원(△1.4%) 감소하였음.

기획조정실의 예산안은 2024년(251억 1,300만원) 대비 11억 800만원(△4.4%) 감소한 240억 500만원이며, 대변인실의 예산안은 2024년(22억 5,600만원) 대비 1억원(△4.4%) 감소한 21억 5,600만원이고,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2024년(261억 2,600만원) 대비 4억 6,400만원(1.8%) 증가한 265억 9,000만원임.

【 2025년도 행정지원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53,495	53,495	52,751	△744	△1.4
기획조정실	25,113	25,113	24,005	△1,108	△4.4
대변인실	2,256	2,256	2,156	△100	△4.4
운영지원과	26,126	26,126	26,590	464	1.8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9억원, 유엔여성기구(UN Women) 기여금 93억 4,500만원, 국제개발협력(ODA) 예산 6억 7,800만원임.

【 2025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5,113	25,113	24,005	△1,108	△4.4
일반회계	25,069	25,069	23,961	△1,108	△4.4
정책연구개발사업	132	132	125	△7	△5.3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575	575	900	325	56.5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8,992	8,992	9,345	353	3.9
국제개발협력(ODA)	808	808	678	△130	△16.1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13,118	13,118	11,334	△1,784	△13.6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471	471	544	73	15.5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	148	148	146	△2	△1.4
기획조정기본경비(비총액)	399	399	446	47	11.8
전산경비	426	426	443	17	4.0
양성평등기금	1	1	1	-	-
기금관리비	1	1	1	-	-
청소년육성기금	43	43	43	-	-
기금관리비	43	43	43	-	-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대변인실 예산은 여성·권익 및 청소년·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의식 확산 및 인지도 제고에 소요되는 홍보비용이고, 운영지원과 예산은 직원 및 보조인력의 봉급, 수당, 임금을 지원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각종 행정물품·장비 운용, 청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임.

【 2025년도 대변인실 예산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256	2,256	2,156	△100	△4.4
일반회계	2,256	2,256	2,156	△100	△4.4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930	1,930	1,833	△97	△5.0
대변인실기본경비(총액대상)	87	87	87	-	-
대변인실기본경비	239	239	236	△3	△1.3

자료: 여성가족부

【 2025년도 운영지원과 예산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6,126	26,126	26,590	464	1.8
일반회계	26,126	26,126	26,590	464	1.8
인건비	24,430	24,430	24,938	508	2.1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대상)	865	865	860	△5	△0.6
기관운영기본경비	831	831	792	△39	△4.7

자료: 여성가족부

5. 2025년도 신규 사업 및 종료 사업

202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지출계획안의 신규사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억 3,000만원이며, 종료사업은 없음.

Ⅱ 검 토 의 견

Ⅱ. 검토의견

1. 여성정책국

가. 총괄

1) 개요

2025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총액은 1,076억 6,100만원으로 전년(975억 4,000만원) 대비 101억 2,100만원(10.4%)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9억 4,800만원으로, 전년(223억 6,300만원) 대비 24억 1,500만원(△10.8%) 감소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77억 1,300만원으로, 전년(751억 7,700만원) 대비 125억 3,600만원(16.7%)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여성정책국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92,720	97,540	107,661	10,121	10.4
일반회계	18,524	22,363	19,948	△2,415	△10.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196	75,177	87,713	12,536	16.7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사전시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확대’, ‘여성정책기본경비’ 등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여성정책국 예산안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여성정책국 예산	97,540	97,540	107,661	10,121	10.4
【일반회계】	22,363	22,363	19,948	△2,415	△10.8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48	348	318	△30	△8.6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4,075	4,075	3,940	△135	△3.3
양성평등문화확산	803	803	671	△132	△16.4
여성사전시관	4,352	4,352	2,411	△1,941	△44.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2,191	12,191	11,796	△395	△3.2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386	386	606	220	57.0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대상)	85	85	83	△2	△2.4
여성정책기본경비(비총액)	123	123	123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177	75,177	87,713	12,536	16.7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5,177	75,177	87,713	12,536	16.7

자료: 여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5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6개 사업임.

이 중 일반회계 '여성사전시관'은 내역사업 중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건립사업 진행 현황을 반영하여 공사비 19억 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2024년(43억 5,200만원) 대비 19억 4,100만원(△44.6%)이 감액되었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구조조정을 반영하여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이 2024년(40억 7,500만원) 대비 1억 3,500만원(△3.3%)이 감액되었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이 2024년(121억 9,100만원) 대비 3억 9,500만원(△3.2%) 감액되었음.

또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의 경우 내역 사업인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이 참여기관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어 1억 3,2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2024년(8억 3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16.4%) 감액되었으며,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과 '여성정책 기본경비' 가 각각 2024년 대비 3,000만원(△8.6%), 200만원(2.4%) 감액됨.

【 2025년도 여성정책국 주요 감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21,854	21,854	19,219	△2,635	△12.1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348	348	318	△30	△8.6	양성평등 정책 관련 위탁사업비 등 조정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4,075	4,075	3,940	△135	△3.3	재정사업 자율평가 구조조정 반영
양성평등문화확산	803	803	671	△132	△16.4	양성평등문화 조성 사업비 조정
여성사전시관	4,352	4,352	2,411	△1,941	△44.6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진행 현황 반영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지원	12,191	12,191	11,796	△395	△3.2	재정사업 자율평가 구조조정 반영
여성정책기본경비 (총액대상)	85	85	83	△2	△2.4	기본경비 일부 조정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5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일반회계의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이 있음.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의 경우 내역사업인 ‘미래 여성인력양성기반마련’에서 기업의 HR담당자의 조직문화 개선 관련 긍정적 인식변화 및 기업의 높은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2024년(3억 8,600만원) 대비 2억 2,000만원(57.0%)이 증액됨.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내내역사업 중 ‘직업교육훈련’ 사업에서 고부가가치 과정을 증설(10개)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새일여성인턴’ 사업에서 장기고용유도를 위한 12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추가 지원에 따라 2024년(751억 7,700만원) 대비 125억 3,600만원(16.7%)이 증액됨.

【 2025년도 여성정책국 주요 증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386	386	606	220	57.0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386	386	606	220	57.0	· ‘24년 교육 시행 결과, 기업의 HR담당자의 조직문화 개선 관련 긍정적 인식변화 및 기업의 높은 교육수요에 대응한 예산 반영 필요 · 일가정 양립 인식 및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변화 유도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필요 *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대상 100개사 →400개사로 확대 및 심화교육 추진 계획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177	75,177	87,713	12,536	16.7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5,177	75,177	87,713	12,536	16.7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강화 필요 * 새일여성인턴 장기고용유도를 위한 12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추가 확대 지원(1인당 지원금 380만원→460만원) *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79개→89개) 및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원, 최대 4회) 신설 등

자료: 여성가족부

나. 일반회계

1) 양성평등문화확산(1232-331)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민간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여 직접 수행하는 방안 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출연금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 개요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은 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4]를 통해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②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계획 수립·이행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3,200만원(△16.4%)이 감액된 6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4)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 2025년도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양성평등문화확산	1,044 (1,020)	803	671	△132	△16.4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86 (86)	93	93	-	-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275 (251)	-	-	-	-
· 대외협력강화사업	31 (31)	-	-	-	-
· 양성평등조직문화조성	652	710	578	△132	△18.6

자료: 여성가족부

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 적정 비목 편성 필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 양성평등주간(매년 9. 1.~9. 7.)을 기념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5년도에는 2024년과 동일한 9,300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유공자 공적심사 사례비 및 운영경비 등 1,300만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 주제영상 제작, 축하공연 등의 기념식 경비 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정산액	재위탁(행사대행)	내역
202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9	29	28	19	행사 홍보, 주제영상 제작 및 포상 수여식 * 코로나19로 포상 수여식 위주로 소규모 행사진행
2021		89	89	71	64	기념행사 홍보, 온라인이벤트, 주제영상,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소개영상 및 포상 수여식 개최 등 *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진행
2022		87	87	87	82	기념행사 홍보, 온라인이벤트, 주제영상,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소개영상 및 포상 수여식 개최 등 *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진행
2023		80	80	80	77	행사 홍보 및 초청, 식전행사, 사전간담회,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 기념공연, 퍼포먼스 등
2024. 9.		80	80	정산중	정산중	행사 홍보 및 초청, 식전행사, 사전간담회,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 기념공연, 퍼포먼스 등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사업수행방식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사업 총괄 업무를, 보조사업자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기념행사 기획 및 구성, 유관·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홍보, 실적·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관리를, 행사대행사는 주제영상 제작, 축하 공연 등 행사진행과 관련한 업무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매년 유사한 내용과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14조[5]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동시에 받도록 할 경우 중복적인 국고지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또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423)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보조금 중복계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제한의 예외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규정은 ①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출연기관이 민간보조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② 출연기관의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데,

해당 보조사업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유업무[6]와 관련된 것

---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고, 별도의 간접보조사업자도 없음.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일반용역비(210-14) 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여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제5항에 의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7]에 따르면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내 출연금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2) 여성사전시관(1232-332)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은 2025년에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기재부)〕 및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만 편성하고,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지 않은 바, 2025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 개요

‘여성사전시관’[8]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9]에 따라 한국의 역사발전에 기여한 여성인물 및 성평등 문화의 전형을 발굴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고 한국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9억 4,100만원(△44.6%)이 감

8) 2002년 최초로 서울시 여성플라자건물을 임차하여 전시관을 설립하였고 2012년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지방합동청사로 이전 개관

9)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액된 24억 1,1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여성사전시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여성사 전시관	567 (566)	4,352	2,411	△1,941	△44.6
· 여성사전시관 운영	562 (561)	569	578	9	1.6
· 간담회 등 사업추진	3	5	5	-	-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2	3,778	1,828	△1,950	△51.6

자료: 여성가족부

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의 실시설계비 편성 필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10]은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하고 다양한 역사인식의 확산을 위한 복합 전시·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9억 5,000만원(△51.6%)이 감액된 1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음.

10)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개요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부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일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관' 부지
총사업비	268억원(설계비 15억 7,500만원, 공사비 234억 4,600만원, 감리비 17억 300만원, 부대비 5,300만원)
규모	부지면적 2,000㎡, 연면적 7,000㎡
공간구성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강당, 카페, 사무실, 주차장 등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 현행 총사업비 등록보고서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17억 100만원, 감리비 1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음.

【 2025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비 산출내역 】

(2024) 3,778백만원 → (2025) 1,828백만원 (감 1,950백만원)
- (공사비) 1,701백만원 (* 전체 공사비(23,446백만원) 대비 약 7% 수준 반영)
- (감리비) 123백만원 (* 전체 감리비(1,703백만원) 대비 약 7% 수준 반영)
- (시설부대비) 4백만원 (* 시설부대비(53백만원) 대비 약 7% 수준 반영)

자료: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박물관의 건립 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살펴보면,

2024년도 10월 현재 중간설계 실시 후 2023년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공사비가 약 105억 6,600만원이 증가[11]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으로

2025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기재부)〕 및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임에도 불구

11) <중간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 사유>

(단위: 백만원)

공사비 증액 사유	증가액	비고
물가상승 반영	4,496	
연면적 증가, 지하층 층수 추가	1,912	
토목공사비 증액	3,741	
기존시설 철거 및 이송비용 추가	417	
합 계	10,566	

자료: 여성가족부

하고,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만 편성하고, 실시설계비는 편성하지 않음.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및 계획 】

기 간		절차
추진 경과	2020. 6.	문체부의 국립여성사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0. 12.	2021년도 예산안(설계비) 반영
	2021. 1.	기획재정부와 협의, 총사업비 확정, 사업내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
	2021. 4.	국립여성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고시
	2021. 4. ~ 9.	설계공모지침 마련, 공공건축심의
	2021. 9. ~ 12.	설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공모
	2021. 12.	설계 계약 체결 (* 용역 일시정지 중)
	2022. 2. ~ 4.	경계복원측량, 부지 현안 검토 및 변경안 검토
	2022. 3. ~ 5.	건립부지 관련 관계기관(은평구청, 국무조정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협의
	2022. 6. ~ 9.	서울시 경관심의(7월),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2022. 9. ~ 11.	중간설계 추진
	2023. 1. ~ 5.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3. 6. ~ 11.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협의
	2023. 12. ~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
향후 일정	2024. 하반기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재협의
	2025년 이후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기재부)), 시설공사 추진 등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실시설계비 편성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였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설계비를 편성하기 보다는 총사업비 조정 및 설계비가 확정된 이후 조치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시설공사 발주를 감안한 일부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설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에 총액 12억 1,900만원의 설계용역 계약 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계획설계를 진행하였고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중간설계를 완료하여 실시설계비 4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실시설계용역비 6억 1,000만원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전시설계 용역비 2억 5,600만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나,

중간설계 결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실시설계용역 등이 중지되어 2023년도에도 이월된 실시설계비가 전액 불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의 실시설계비는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 국립여성사박물관 설계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		2025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계	296	252	44	1,323	457	866	866	-	866	-	-	-
▪ 기본조사 설계비(420-01)	296	252	44	44	44	-	-	-	-	-	-	-
- 설계보상	100	100	-	-	-	-	-	-	-	-	-	-
- 계획설계(설계용역)	196	152	44	44	44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1,279	413	866	866	-	866	-	-	-
- 실시설계(설계용역)	-	-	-	1,023	413	610	610	-	610	-	-	-
- 지하안전영향평가	-	-	-	72	-	72	72	-	72	-	-	-
- 전시설계	-	-	-	184	-	184	184	-	184	-	-	-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전이라도 실시설계비의 최소 비용은 예측 가능하므로 실시설계비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의 연간 총 보수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의 81.4% 수준으로 사기저하 및 이직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취업상담사의 처우를 유사 직종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의 신설로는 직업교육훈련 종료 후 취업률 제고를 담보할 수 없는바,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새일여성인턴 계획인원인 7,777인이 모두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49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6개월 이후 고용유지율(약 70%대) 및 12개월 이후 고용유지율(약 50%대)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 개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근거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등[12]에게 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및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 3. (생략)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25억 3,600만원(16.7%)이 증액된 877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4,196 (69,742)	75,177	87,713	12,536	16.7
· 새일센터 지정·운영	72,465 (68,051)	73,468	85,292	11,824	16.1
- 센터운영지원	27,480	28,095	28,730	635	2.3
- 직업교육훈련	21,343	21,731	27,943	6,212	28.6
- 새일여성인턴	23,642	23,642	28,619	4,977	21.1
· 중앙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 운영	1,237 (1,201)	1,385	1,556	171	12.3
· 연구용역	91	150	700	550	366.7
· 기타 관서경비	149	174	165	△9	△5.2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및 K-스타트업 지원	254 (250)	-	-	-	-

자료: 여성가족부

나)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처우개선 필요

새일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13]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사례관리,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시설임.

'센터운영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보조율 50%)으로 새일센터 운영, 경력단절 예방 지원, 경력이음 사례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6억 3,500만원(2.3%)이 증액된 28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새일센터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5,000만원 및 공통 처우개선(3%) 5억 8,5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1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5년도 센터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 센터운영지원	28,095	28,095	28,730	635	2.3
- 새일센터 운영	23,708	23,708	24,327	619	2.6
- 경력단절 예방지원	3,905	3,905	3,905	-	-
- 경력이음 사례관리	482	482	498	16	3.3

자료: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에는 센터장,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취업상담사'가 구인·구직상담, 취업연계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 전반의 진행을 관리하고 있고, 취업상담사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 새일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 】

구분	인원	국비 지원	담당 업무	비고
센터장	1명	미지원	새일센터 운영 총괄	필수인력 ※ 단, 직업상담사의 경우 경력개발형 및 농어촌형은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상담사	3~8명	여성가족부 (50%)	구인·구직상담, 취업연계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창업상담사 (운영 시)	1명		창업지원 전담	
경력단절예방 전담인력 (운영 시)	1~3명		여성 고용유지 지원 전담	
사례관리 전담인력 (운영 시)	1~2명		경력단절여성 특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전담	
직업상담사	3명 이내	고용노동부 (100%)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지도	
사업 지원인력	1명 이상	미지원	구인·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사업 지원	시설의 기존 인력 활용 가능

자료: 「2024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4년 9월 말 현재 159개소 새일센터의 취업상담사는 총 1,214명으로 센터별 배치 인원이 평균 7명이며, 이 중 창업상담사, 경력단절예방 전담인력, 사례관리담당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만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상담 업무만 수행하는 센터의 취업상담사 인원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새일센터 종사자 현황 】

(2024. 9. 기준, 단위: 명, 개소)

구분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소 계	취업상담사	창업상담사	경력단절 예방전담인력	사례관리 담당	
인원	1,214	1,040	40	104	30	267
배치센터	159	159	40	80	28	140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의 경우 취업상담사 수는 1,214명으로 2020년에 비해 83명(7.3%)이 증가하였으나 구직건수(58만 9,685건)도 2020년에 비해 37,487건(6.8%)이 증가하여 취업상담사 1인당 평균 구직건수는 486건인바, 취업상담사의 업무량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임.

취업상담사의 최근 4년 1인당 평균 구직건수는 479건으로 취업상담사 인원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취업상담사의 업무량의 경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1인당 구직(상담) 건수 현황 】

(단위: 명, 건)

연도	취업상담사 수 (A)	구직건수 (B)	취업상담사 1인당 연간 담당 구직건수(B/A)
2020년	1,131	552,198	488
2021년	1,199	572,560	478
2022년	1,199	553,590	462
2023년	1,214	589,685	486
2024. 8.	1,214	420,763	347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취업상담사의 처우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14]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의 연간 총 보수[15]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16] 중 전임상담원의 81.4% 수준(5호봉 기준[17]))으로, 연간 641만원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

14) < 취업상담사 연도별 인건비 단가>

(단위 : 천원, 국비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계	2,407	2,428	2,500	2,596	2,677	2,764
상담사 보수	2,042	2,059	2,112	2,199	2,267	2,340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사업자부담금	365	369	388	397	410	424
증가율	**7.0**	**0.9**	**3.0**	**3.8**	**3.1**	**3.2**

15) 급여 및 비급여(복리후생비 등) 포함

16) **「직업상담원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82호)

제4조(직업상담원의 직무) 직업상담원은 고용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
2.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
4. 구인자의 원활한 인력 채용에 필요한 사업 지원
5. 그 밖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5조(직업상담원의 직급) 직업상담원의 직급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으로 구분한다.

17) 새일센터 평균 근속연수(4.2년)를 참고하여 5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급 외 지급액(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기본급 외 지급액을 제외하는 경우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기본급의 99.4%에 해당함.

한 차이는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등 기본급 외에서 발생하고 있음.[18]

【 새일센터-고용센터 상담사 처우 비교(2024년 기준)[19] 】

구분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A)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 (B)	차이 (B-A)
총 보수(연간) [가+나]		1호봉 기준: 26,942천원 **5호봉 기준: 28,106천원** 11호봉 기준: 31,154천원	1호봉 기준: 32,400천원 **5호봉 기준: 34,516천원** 11호봉 기준: 37,728천원	1호봉 기준: 5,458천원 **5호봉 기준: 6,410천원** 11호봉 기준: 6,574천원
	기본급(연간) [가]	1호봉 기준: 24,924천원 5호봉 기준: 26,088천원 11호봉 기준: 29,136천원	1호봉 기준: 24,127천원 5호봉 기준: 26,243천원 11호봉 기준: 29,455천원	1호봉 기준: △797천원 5호봉 기준: 155천원 11호봉 기준: 319천원
	기본급 외(연간) ※비급여 포함 [나]	평균 2,018천원 -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등 포함[20]	평균 8,273천원 -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등 포함 **- 가족수당, 법정수당**	**6,255천원**
평균 근속연수		4년 2개월	10년 5개월	6년 3개월
5년 이상 근무자		41.7% (506명)	80.9% (1,522명)	39.2%p
연평균 이직률		23.3%	-	
호봉제 적용여부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1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기본급 차등 지급)	적용 (최고호봉 30호봉)	

자료: 여성가족부

18) 기본급 외 지급액을 제외하는 경우 15만원임.
19) [참고자료 1]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2024년 근속연수별 급여 지급기준표
[참고자료 2]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 2024년 보수 지급기준
20) 모든 취업상담사에게 지급되는 활동경비(10만원) 및 해당인원(정규직 360인)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등 연 276만원 이내) 합계의 평균(단, 센터별 1인에게만 지급되는 팀장직무수당 10만원은 제외)

이로 인하여 취업상담사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바, 최근 5년간 취업상담사의 이직률과 평균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4명 중 1명꼴로 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근속연수 또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5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취업상담사의 이직률 및 평균 근속연수 현황 】

(단위: 명,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직률	25.5%	26.6%	25.9%	23.3%	-
평균 근속연수 (매년 7. 31.기준)	3년 6개월	3년 6개월	3년 11개월	4년 8개월	4년 2개월

주: 이직률은 매년 차년도 1월에 조사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은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임금 차이가 확연하여 취업상담사들이 새일센터에서 경력을 쌓은 후 고용센터로 이직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함(새일센터 경력은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 호봉에 반영 가능).[21]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과 실적은 취업상담사의 역량과

21) **「직업상담원 운영규정」**【별표 1】직업상담원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에 상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업무 숙련도 등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경력 있는 취업상담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취업상담사의 처우를 유사 직종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직업교육훈련과정 철저한 운영 관리

새일센터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새일센터 직업훈련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22]에 따라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 편성 시 지역의 구인수요, 실제 취업현황, 시·도별 주요 역점산업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보조율 100%)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62억 1,200만원이 증액된 279억 4,300만원임. 증액 사유는 신규 교육과정으로 6~10개월 기간의 신기술, 고숙련 또는 고부가가치 직종과정 10개를 개설하고, 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함에 따른 것임.

---

22)**「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25년도 직업교육훈련 예산안 산출 내역 】

○ **직업교육훈련 : 27,943백만원 (증 62억 1,200백만원)** - 직업교육훈련 : 761개과정×36.06백만원x100% = 27,443백만원(증 6,212)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 (2024년) 79 → (2025년) 89개 과정(증 612) *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 (신설) 14천명×10만원×4회(순증 5,600) - 온라인교육 및 상담 : 1식×500백만원 = 500백만원(전년동)

자료: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은 2024년 9월 기준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79개) 과정, 일반, 전문기술, 창업, 취업취약계층, NCS(국가직무능력표준)과정 등 총 72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과정 현황 】

(단위: 개)

연도	합계	고부가가치	일반	기업맞춤	전문기술	창업	NCS 등 기타
2020년	658	50	322	140	78	41	27
2021년	738	59	348	156	90	65	20
2022년	718	66	334	175	87	48	8
2023년	715	74	349	151	71	60	10
2024년	727	79	353	140	81	62	12

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여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10만원씩 최대 4개월 동안 훈련생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새일센터 지원과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교해 보면, 고용노동부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수당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 수당 또한 지급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음.

【 새일센터 지원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

구분		새일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소득 지원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해당없음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수당 지원 15~25만원(1회)
	훈련참여 지원수당	(2025년도 예산안)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수당 지원 월 10만원(4개월) 신설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수당 지원 월 28.4만원(6개월)
	참여 장려수당	해당없음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 참여시 수당 지원 1회 2만원(3회)
	조기취업 성공수당	해당없음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수당 지원 50만원(1회)
	취업 성공수당	(새일여성인턴 참여 후 정규채용되고 6개월 근속시 장려금 6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 무관)에게 취업 후 근속시 수당 지원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최근 5년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수료율은 95% 이상이나, 평균 취업률은 73% 정도임.

【 새일센터 교육훈련과정 운영 실적 】

(단위: 명)

연도	운영 과정수	교육인원 (A)	수료인원 (B)	수료율 (B/A)	취업인원 (C)	취업률 (C/B)
2019	745개	14,544	13,924	95.7%	10,008	71.9%
2020	658개	11,023	10,532	95.5%	7,770	73.8%
2021	738개	12,573	11,998	95.4%	8,800	73.3%
2022	718개	12,586	11,919	94.7%	8,892	74.6%
2023	715개	13,381	12,807	95.7%	9,348	73.0%

주: 2024년 교육·수료인원은 2025년 초 산출되며, 취업인원은 2025년 6월말 산출 가능함(과정별 취업률은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자로 산출됨).

자료: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여 훈련 참여를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의 신설로는 직업교육훈련 종료 후 취업률 제고를 담보할 수 없는바,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라) 새일여성인턴 장기 고용유지율 제고노력 필요

‘새일여성인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23]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고 보조율 80%)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9억 7,700만원(21.1%)이 증액된 28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새일여성인턴 예산안 산출 내역 】

○ 새일여성인턴: (2024년) 23,642백만원 → (2025년) 28,619백만원(증 4,977백만원)
- (2024년) 7,777명×3.8백만원×80% → (2025년) 7,777명×4.6백만원×80%
* (2025년)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신설(1인당 8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의 경우 새일여성인턴 1인당 총 380만원을 한도로 새일여성인턴을 연계한 기업에 매월 80만원씩 3개월간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여성인턴에게 근속장려금(60만원), 기업에 고용유지 장려금(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

2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영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새일여성인턴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게 고용유지 장려금으로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음.

한편,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취업 후 고용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인턴종료 후 취업률은 95% 이상인 것에 비해 6개월(고용유지 기간) 및 12개월 이후 고용유지율은 약 70% 및 50% 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새일여성인턴 사업 연계·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

(단위: 명)

구분	새일여성인턴 연계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고용유지 현황	
	계획	연계	종료	소계 (A)	취업 (B)	취업률 (B/A)	6개월 (비율)	12개월 (비율)
2020년	6,177	6,945 (100%)	5,812 (83.7%)	5,812	5,658	97.4%	72.9%	54.7%
2021년	9,777 (추경포함)	11,761 (100%)	9,611 (81.7%)	9,611	9,312	96.9%	75.8%	56.2%
2022년	7,777	10,145 (100%)	8,298 (81.8%)	8,298	8,027	96.7%	75.6%	56.4%
2023년	7,777	9,253 (100%)	7,202 (77.8%)	7,202	6,984	96.9%	-	-
2024. 8.	7,777	7,756 (99.7%)	4,708	4,708	4,534	96.3%	-	-

주: 2023년 6개월 고용유지 현황은 2024. 10. 이후 산출 가능, 12개월 고용유지 현황은 2025. 4. 이후 산출 가능, 2024년 6개월 고용유지 현황은 2025. 10. 이후 산출 가능, 12개월 고용유지 현황은 2026. 4. 이후 산출 가능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은 새일여성인턴 계획인원인 7,777인이 모두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전년 대비 49억 7,700만원[7,777인×80만원×80%(국비보조율)]을 증액하였는바,

6개월 이후 고용유지율(약 70% 대) 및 12개월 이후 고용유지율(약 50% 대)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라.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평가와 환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안정적인 성인지 예·결산 운영체계의 구축·확립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의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여성가족부의 2025년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포함, 이하 같음)의 대상사업 수는 2024년 대비 1개[24] 증가한 31개로, 그 중 일반회계 사업은 22개, 기금 사업은 9개(양성평등기금 6개, 청소년육성기금 3개)이고,

규모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증액 편성 등에 따라 2024년 대비 911억 5,400만원(6.3%)이 증가한 1조 5,355억 300만원임.[25]

24) 2024년 대비 3개 사업 제외, 4개 사업 신규편성됨.
25) [참고자료 3] 여성가족부 2025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

【 2023년 ~ 2025년(안)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A)	2025년안(B)	증감(B-A)
계	사업수	35	30	31	1
	금 액	1,266,416	1,444,349	1,535,503	91,154
회계	사업수	22	19	22	3
	금 액	506,352	610,105	696,025	85,920
기금	사업수	13	11	9	△2
	금 액	760,064	834,244	839,478	5,234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2024년에 이어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년~2027년)의 대과제 중 하나인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선정함.

여성가족부의 2025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등 2개 사업으로, 총 규모는 897억 8,300만원임.

【 여성가족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유형)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목표(지표)	2025년 예산안
회계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 수(개사)	2,070
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일센터 등을 통한 종합 취·창업 지원	◦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87,713
합 계				89,783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국가재정법」 제16조[26] 개정에 따라, 2023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성인지 대상사업 유형에 성별영향평가 사업 표기를 신설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을 명시하도록 하였음.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로 통보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중 개선의견, 자체 개선안 등의 의견이 있는 사업임.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으로는 '여성사전시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청소년지도사 양성)'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으

26)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었음.

【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여성가족부 소관 성별영향평가 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유형)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목표(지표)	2025년 예산안
회계	여성사전시관	◦ 국립여성사전시관 운영을 통해 역사 속 여성을 발굴하고,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여성사와 사회 이슈를 접목한 전시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로 우리나라 여성의 문화 유산 계승·발전	◦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명)	2,411
회계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운영 지원 (청소년지도사 양성)	◦ 청소년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연수 및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 대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 및 보수교육 이수자 수(명)	312

자료: 여성가족부

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산하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기반 강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보면,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27]」(기재부 훈령)에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사전 심의·평가 등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28]'를 두어

재정·젠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6명)와 실무위원회(18명)로 이루어진 전문평가위에서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등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분야별 3개 분과별로 사업 적절성을 사전 검토하고,

이후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최종 결정하고 있음.

---

27) [참고자료 4]「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28)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21.2.부터 운영)>**
- 구성: 기재부,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민간위원 등
- 기능: 지침 개정 협의,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검토, 성과평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문평가위원회('21.4.부터 운영)>
- 구성: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분야 중심으로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등 3개 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야 민간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기능: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 사전 심의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대상사업 선정 절차 】

1 단계 : 차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대상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실행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한 사업 •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 • 기타 부처가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2 단계 : 전문평가 실무위원회 평가지침	• 사업목표의 적합성 - 해당 사업의 추진은 양성평등 추진 5대과제(제3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의 달성과 연관성이 있는가? • 사업규모의 적정성 - 예산규모의 측면에서 해당 사업은 특정 분야 성평등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비중 있는 사업인가? • 성과관리 실익의 유무 - 해당 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성평등 성과관리의 실익이 발생하는가? • (정성지표) 각 항목별 검토근거

↓

3 단계 :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지침	•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규모의 적정성 • 성과관리 실익의 유무 • (정성지표) 각 항목별 검토근거

↓

4 단계 :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 (논의 원칙) ① 3개 지표에 대한 실무위원 검토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평가위원 문제제기의 경우 재논의하여 최종판단 ③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결정

↓

5 단계 : 협의회 회의	• (논의 원칙) ① 평가위원 검토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협의회 위원 문제제기의 경우 재논의하여 최종판단

↓

해당 부처 공문 발송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협의회와 전문평가위는 2025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총 35개 부처, 264개 사업에 대하여 심의·검토하였고, 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 등[29] 38개 사업을 제외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사업 및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등[30] 19개 세부 사업을 새로 추가하여, 2025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수는 2024년 대비 총 19개(△6.7%)가 감소한 264개, 규모는 2024년 대비 2조 491억원(8.6%)이 증가한 25조 7,462억원으로 작성되었음.[31]

【 2024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

구분	일자	안건	회의결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1.30. ~ 2. 1. (서면)	◦ 성인지 예·결산 사업성과 평가 결과 및 활용 방안	◦ 성인지 예·결산 사업성과 평가 결과 확정 및 활용 방안 논의
	3. 7. ~ 3.11. (서면)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안)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지침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안) 확정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지침 확정
	5.14. (대면)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적절성 검토결과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적절성 검토결과 확정
	8.16. ~ 8.19. (서면)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개요(안) 논의 ◦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성과 평가 지침(안) 보고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개요(안) 확정 ◦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성과 평가 지침(안) 보고

29) 사업 종료(순감), 적절성 검토 결과 부적절 판단 사업 등
30)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 ~ '27) 관련 사업, '23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사업, 기타 부처가 성인지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등
31) [참고자료 5] 부처별 2025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

구분	일자	안건	회의결과
성인지 예·결산 전문 평가 위원회	3.22. (화상)	◦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개요 및 추진계획 보고 ◦ 적절성 검토 지침 보고	◦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개요 및 추진계획 보고 ◦ 적절성 검토 지침 보고 및 확정
	5. 7. (화상)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결과 논의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결과 확정
	9. 9. (화상)	◦ 성인지 예·결산 사업성과 평가 지침 보고	◦ 성인지 예·결산 사업성과 평가 지침 보고 및 확정
	12.10. (예정)	◦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성과 평가 결과 보고 (예정)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32]에 따라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33]은 연구사업 형식으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참고자료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

【 2025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결산	2024 본예산 (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16,078	16,087	16,933	846	5.3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1547-309)	506	500	500	-	-

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그런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현행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은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훈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훈령에서 운영기관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국가재정법」제12조[34]의 위반 소지가 있음.

또한,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를 위해서 전문평가위를 통해 2021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평가위의 기능에 대해서는 동 훈령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35] 하고 있을 뿐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3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음(「2021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p.153~ 156).

35)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전문평가위원회) ③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고,[36] 성인지 예·결산 운영 사업[37]을 소관하는 부처이므로 안정적인 성인지 예·결산 운영체계의 구축·확립을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법률에 훈령 위임규정 및 운영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평가위의 성인지 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환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의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6)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구성 및 임기)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37)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1231-321)의 내역 사업으로 성인지 예·결산 운영(성인지 예·결산 분석연구,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됨(`25년 예산안 기준).

2. 권익증진국

가. 총괄

1) 개요

2025년도 권익증진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소관)으로 구성되어 총액은 1,398억 6,300만원으로 전년(1,354억 5,800만원) 대비 44억 500만원(3.3%)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1억 9,100만원으로, 전년(252억 5,700만원) 대비 6,600만원 감소하였고(△0.3%),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안은 49억 3,200만원으로 전년(48억 7,900만원) 대비 5,300만원(1.1%)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안은 703억 2,700만원으로 전년(679억 6,800만원) 대비 23억 5,900만원(3.5%) 증가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소관) 지출계획안은 394억 1,300만원으로 전년(373억 5,400만원) 대비 20억 5,900만원(5.5%) 증가하였음.

【 2025년도 권익증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포함)	135,458	135,458	139,863	4,405	3.3
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외)	98,104	98,104	100,450	2,346	2.4
일반회계	25,257	25,257	25,191	△66	△0.3
청소년육성기금	4,879	4,879	4,932	53	1.1
양성평등기금	67,968	67,968	70,327	2,359	3.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7,354	37,354	39,413	2,059	5.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권익증진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이 있으며,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음.

【 2025년도 권익증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권익증진국 예산(범피 포함)	135,458	135,458	139,863	4,405	3.3
합 계(범피제외)	98,104	98,104	100,450	2,346	2.4
【일반회계】	25,257	25,257	25,191	△66	△0.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77	1,077	1,109	32	3.0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3,415	3,415	4,054	639	18.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692	14,692	13,735	△957	△6.5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291	291	401	110	37.8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지원	5,403	5,403	5,518	115	2.1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	141	141	141	-	-
권익증진기본경비(비총액)	238	238	233	△5	△2.1
【청소년육성기금】	4,879	4,879	4,932	53	1.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879	4,879	4,932	53	1.1
【양성평등기금】	67,968	67,968	70,327	2,359	3.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510	18,510	19,037	527	2.8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497	41,497	43,167	1,670	4.0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7,961	7,961	8,123	162	2.0
(참고)【범죄피해자보호기금】	37,354	37,354	39,413	2,059	5.5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7,354	39,413	2,059	5.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5년도 권익증진국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2개 사업임.

이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은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비 회계이관(일반회계 → 양평기금) 등을 사유로 2024년 예산 대비 9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5년도 권익증진국 주요 감액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14,930	14,930	13,968	△962	△6.4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지원	14,692	14,692	13,735	△957	△6.5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비 회계이관 등(일반회계 →양평기금)
권익증진기본경비 (비총액)	238	238	233	△5	△2.1	기본경비 절감 등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 이관사업 】

회계 변동 내역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이관 세부사업명 (이관 내역사업명)	사유
일반회계 → 양평기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지원	지방비 매칭을 통한 통합 서비스 확대 (5개소→11개소)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5년도 권익증진국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일반회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증액, 법정 실태조사 및 시설 평가 실시를 사유로 6억 3,900만원 증액되었고,

양성평등기금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1366 세종센터 1개소 지원 및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인상 등을 사유로 16억 7,000만원 증액되었음.

【 2025년도 권익증진국 주요 증액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 (A)		B-A	%	
【일반회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77	1,077	1,109	32	3.0	물가상승률 반영한 생활안정지원(월지원금, 간병비) 단가 증액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3,415	3,415	4,054	639	18.7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증액, 법정 실태조사 및 시설평가 실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91	291	401	110	37.8	인신매매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및 피해자 지원사업 강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5,403	5,403	5,518	115	2.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확대 등
【청소년육성기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879	4,879	4,932	53	1.1	종사자 처우 개선
【양성평등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18,510	18,510	19,037	527	2.8	종사자 처우 개선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497	41,497	43,167	1,670	4.0	1366 세종센터 1개소,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인상 등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961	7,961	8,123	162	2.0	종사자 처우 개선
(참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7,354	39,413	2,059	5.5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반영 및 퇴소자립 지원수당 추가 등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나. 일반회계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

○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9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10월 현재 생존자는 8명이므로 1명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정지원,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자 기념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3,200만원(3.0%)이 증액된 1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400 (1,355)	1,077	1,109	32	3.0
· 생활안정지원	554 (554)	590	619	29	4.9
· 피해자 지원사업	-	10	10	-	-
· 피해자 기념사업	714 (669)	320	320	-	-
· 기타 경상경비	132 (132)	157	160	3	1.9

자료: 여성가족부

나) 생존자 감소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예산 조정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38]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월 지원금, 간병비, 특별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을 제외한 월

3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금과 간병비는 생존자 인원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

여성가족부는 2024년 7월말 기준으로 피해자 9명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2025년도 생활안정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

○ 생활안정지원 : (2024) 590 → (2025) 619백만원
- 월지원금 204백만원 = 1,882천원×9명×12월
- 간병비 372백만원 = 3,446천원×9명×12월
- 특별지원금 43백만원 = 43백만원×1명×1회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4년 9월 7일 피해자 한 분이 별세하여 2024년 10월 기준 생존자가 8명이 됨. 이에 생존자 인원수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 월 지원금, 간병비는 생존자 8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1명분 약 6,400만원[39]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39) 1명분의 월 지원금 22,584,000원(1,882천원×12개월) + 41,352,000원(3,446천원×12개월)을 합친 금액은 63,936,000원임.

2)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 최초로 시행된 “2022년 여성폭력통계”가 기존 통계의 나열에 그칠 뿐 기존 통계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 통계로 본 여성폭력 현실에 대한 분석 등은 제시되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2025년 여성폭력통계”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성폭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중복된 조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에 성폭력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성가족부는 2025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예산을 이전과 동일하게 별도 편성하고 있는바, 향후 통합된 실태조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은 2018년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등 여성폭력 관련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5년도에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분석,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성매매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등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40억 5,400만원(18.7%)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761 (715)	3,415	4,054	639	18.7
·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24 (24)	39	38	△1	△2.6
·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분석	132	150	150	-	-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	1,230	1,535	305	24.8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	816	825	9	1.1
·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	-	160	160	순증
· 가정폭력 실태조사	-	-	597	597	순증
· 성매매 실태조사	-	-	326	326	순증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	-	333	333	순증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평가	-	-	90	90	순증

자료: 여성가족부

나)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내실화 필요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4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41]에 따른 여성폭력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한 후 3년이 경과하여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됨.

여성폭력통계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된 후 2020년부터 3년 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통계 작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수행[42]

---

4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①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
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수집ㆍ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42) 2020년에는 여성폭력통계구축 위탁사업 첫 해로 ‘여성폭력 통계 지표 체계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 연구 분석, 기관별 생산 통계 분석, 신규 지표 개발을 비롯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여성폭력통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여성폭력 통계 지표 체계안’을 토대로 시범 수집,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하였고, 여성가족부가 이 결과물을 종합하여 2022년 12월 29일에 “2022년 여성폭력통계”로 최초 공표함.

【 2020~2022년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예산 및 집행 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0	200	156	44
2021	100	77	23
2022	160	135	25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살펴보면, 여성폭력의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것인데, 수록된 내용이 대부분 기존 통계나 조사 결과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성폭력에 관한 별도의 분석이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등은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43)]

지표 개선안 연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통계 수집 프로세스 구체화 등 통계 구축 사전 준비 과정 위주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여성폭력통계 공표를 위한 관계기관별 통계 수집, 통계 신뢰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회의, ‘여성폭력통계 자료집’ 인쇄·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43) 윤석열 정부 ‘여성폭력통계’가 담지 못한 것들, 한겨레신문, 2023. 1. 2.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화요논평, 2023. 1. 4.

【 2022년 여성폭력통계 구성 】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여성폭력 발생 현황	여성폭력 피해 실태	여성폭력 피해경험
		2차 피해
		여성폭력 가해자 특성
	여성폭력 범죄 입건 실태	입건 사건 수 및 범죄율
		입건 사건 범죄자 특성
여성폭력 피해 현황	여성폭력 피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입건 사건 피해자 특성
	여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폭력 대응
		지원 기관 인지도 및 도움 요청
	여성폭력 피해 영향 및 인식	피해 영향
		지원기관 인식
		피해 두려움 인식
		안전 인식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및 기관·종사자 현황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위기·종합 지원기관 현황
		상담 기관 현황
		보호·지원시설 현황
		지원기관 종사자 현황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상담 현황
		위기·종합지원기관 지원 현황
		상담소 지원 현황
		보호시설 지원 현황
		수사·사법상 지원 현황
		의료 지원 현황
		자립 지원 현황
	대상별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장애여성
		이주여성
		아동·청소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범죄자에 대한 처분	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판 전 단계 처분	경찰단계
		검찰단계
	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벌
		보안처분 부과 비율
		치료프로그램 부과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여성폭력통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한 것은 기존 통계가 여성폭력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44]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폭력통계는 여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향성을 분석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025년 여성폭력통계는 기존 통계의 한계를 넘어 여성폭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4) "여성폭력 관련 통계의 출처는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한국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임. 검찰·경찰의 통계는 실제 사건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 관계로 전체적인 범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입건된 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리되어 송치되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현재의 사법통계로는 가정폭력범죄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음.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범죄 피해 실태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설문조사의 특성상 민감한 질문이 포함되는 조사에서는 솔직한 응답을 얻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음. 또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피해자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상담 결과만을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성폭력의 실태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검토보고서(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2065)」, 46쪽)

여성가족부는 최초로 구축한 2022년 통계는 여성폭력발생부터 범죄자 처분까지 흩어져 있는 통계를 집약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2025년 통계에는 여성폭력 실태분석 및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통계집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개선할 예정이라고 함.

다) 향후 종합적인 여성폭력실태조사 실시 필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방지 관련 실태조사는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실시됨. 여성가족부의 최근 3년간 여성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에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1136-303)]가, 2024년에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성희롱 실태조사가 각각 실시됨.

2025년도 예산안에는 가정폭력실태조사로 5억 9,700만원, 성매매실태조사로 3억 2,600만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2136-319)에서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예비조사)로 7,0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1136-303)에서 성폭력안전실태조사로 6억 8,600만원이 계상됨.

【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실태조사명	내용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여성폭력실태조사	- 근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45] - 조사주기: 3년 - 최근 시행시기: 2024년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7,000명) - 조사내용: 전반적인 여성폭력 피해 경험,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 경험, 스토킹 피해 경험 등	-	-	600	-
가정폭력실태조사	- 근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2[46] - 조사주기: 3년 - 최근 시행시기: 2022년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9,000명) - 조사내용: 가정폭력 관련 인식 및 경험,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 등	597	-	-	597
성희롱실태조사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47] - 조사주기: 3년 - 최근 시행시기: 2024년 -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30일 이상 민간사업체 및 공공기관(2,530개) - 조사내용: 성희롱 실태 및 제도운영 현황 등	-	-	500	-
성매매실태조사	- 근거: 성매매방지법 제4조[48] - 조사주기: 3년 - 최근 시행시기: 2022년 - 조사대상: 성매매집결지,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 성매매 종사자(청소년 포함), 일반국민(2,000명) 등 - 조사내용: 온라인 및 청소년 성매매 실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성매매 알선가능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및 지역심층조사, 사법적 대응현황 등	298	-	-	326

실태조사명	내용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인신매매등실태조사	- 근거: 인신매매방지법 제10조[49] - 조사주기: 5년 - 시행시기: 2026년 예정(본조사) * 2025년에는 예비조사 실시 계획	-	-	-	70
성폭력안전실태조사	-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4조[50] - 조사주기: 3년 - 최근 시행시기: 2022년 - 조사대상: 만 19~64세 일반국민 (1만 명) - 조사내용: 성폭력 발생 양상, 피해 실태, 인식 등 변화 파악 및 요인 분석 등	686	-	-	686

자료: 여성가족부

4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7)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되어 기존의 체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발전해 온 법체계로는 이러한 폭력의 태양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여성폭력실태조사,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간 항목 및 가구조사 방식이 유사·중복된다는 점[51], 상대표준오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52] 등도 지적되어 옴.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비교: 피해경험 유사문항 】

구분	여성폭력실태조사(성적폭력)	성폭력안전실태조사
	문항	문항
피해 경험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나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 -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키스, 포옹 껴안기 등) - 강압적인 성관계	- 성기노출 - 성추행 - 강간(미수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51) 통계청의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기존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간 일부 유사중복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무조정실에서 2023년 5월 발표한 행정조사 정비방안(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2023.5.3.)에서도 행정조사 폐지·통합이나 공동조사로 전환할 조사에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포함됨.

5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22.12, 218~219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23. 12. 36쪽 참조.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가정폭력실태조사 간 비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경험 】

구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폭력 실태조사
	내용	내용
친밀한 관계 범위	배우자 또는 동거 중인 파트너	당시/피해 전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포함), 당시 사귀던 사람, 사귀다 헤어진 사람 * 폭력 유형별로 위 가해자 유형에 응답한 사례에 대해 분석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5개 유형)	피해 경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통제, 경제적)	피해 경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통제, 경제적)
스토킹	이혼·별거·동거종료 후 스토킹 피해 경험(3개 하위유형: 나에 대한 접근, 나의 가족 또는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한 접근, 나의 친구 등 지인에 대한 접근)	스토킹 피해 경험(7개 하위유형: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 등)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여성폭력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별(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3월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 】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에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포함하고 비용도 2022년과 동일하게 각각 5억 9,700만원과 6억 8,600만원을 계상함.

두 실태조사 비용을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해당 실태조사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고 2025년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할 2027년까지 5년간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고 2027년부터 통합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여성폭력실태조사에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분절적으로

진행된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에 대하여 빈틈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임.

또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각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사내용이 유사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합하여 1건의 행정조사로 운영하는 것이 피조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폭력까지 포섭할 수 있는 통합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되고 이에 따른 법 개정도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에는 불가피하게 개별적인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향후에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확산하고 있고 2024년 10월 법 개정(2025. 4.17. 시행예정)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및 책임이 증가한 측면이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센터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일분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9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10월 현재 생존자는 8명이므로 1명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53]에 따라 설치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53)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조사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9억 5,700만원(△6.5%)이 감액된 13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233 (13,237)	14,692	13,735	△957	△6.5
· 인건비	6,285 (5,793)	6,618	6,898	280	4.2
· 운영비	2,191 (2,177)	1,964	2,006	42	2.1
· 사업비	5,757	6,110	4,831	△1,279	△20.9
-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1,773	1,888	1,120	△768	△40.7
-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934	825	735	△90	△10.9
-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1,216	1,443	1,056	△387	△26.8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1,754	1,954	1,920	△34	△1.7

주: 2023년에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비 8,000만원이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

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54]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내부조직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5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 ⑥ (생 략)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절차 】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예산안 137억 3,500만원 중 디성센터 관련 예산은 32억 6,900만원으로, 기관운영출연금(인건비, 운영비)과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사업출연금에 각각 편성되어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중 디성센터 관련 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2025년 예산안 산출근거
계	3,475	3,269	△206	
◦ 기관운영출연금	2,062	2,243	181	- 인건비 1739.1백만원=52.7백만원×33명 - 운영비 504.9백만원=15.3백만원×33명
◦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1]	1,413	1,026	△387	
-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1,228)	(841)	(△387)	- 인력 운영 294백만원=약 3.8백×8명×10개월 - 시스템 운영 358백만원 - 지원체계 고도화 29백만원=약 2.4백×12개월 - 국내외 협업 등 60백만원=30백×2회 - 소진방지 60백만원 - [신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40백만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185)	(185)	-	- 워크숍 60백만원=30백×2회 - 전문교육 운영 및 이러닝 개발 125백만원

주: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사업에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2개 내역사업(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외에 여성폭력 초기대응(1366중앙센터 운영비) 내역사업(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예산은 2024년 14억 4,300만원, 2025년도 예산안은 10억 5,600만원임.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먼저, 기관운영출연금에는 디성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41명 중 정규직 3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사업의 내역사업인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사업으로는 디성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400만원, 시스템 운영비 3억 5,800만원, 전문가 자문, 피해지원 보고서 및 매뉴얼 발간 등을 하는 지원체계 고도화 비용 2,900만원,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 6,000만원, 종사자들을 위한 소진방지 프로그램(전문가 심리상담 등) 운영비 6,000만원, 신규 사업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비용 4,000만원이 편성됨.

다른 내역사업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사업에는 워크숍 비용 6,000만원과 전문교육 운영 및 이러닝 개발비용 1억 2,500만원이 편성됨.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정규직 정원이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증가함에 따라 기관운영출연금이 2024년 대비 1억 8,100만원 증가하였고,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사업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연구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으나, 기간제 인력이 13명에서 8명으로 줄고 2024년 서버 이중화 사업이 종료되면서 2024년 대비 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사업은 2024년과 동일한 수준임.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들을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포·확산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성센터의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음.

디성센터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상담 지원 건수는 2019년 5,735건에서 2023년 28,082건으로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삭제 지원 건수도 2019년 95,083건에서 2023년 245,416건으로 연평균 21% 증가하였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

(단위: 건수)

기 간	총 지원건수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18년[1)] (4.30.-12.31.)	33,921	4,787	28,879	203	52
2019년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년	170,697	11,452	158,760	445	40
2021년	188,083	17,456	169,820	708	99
2022년	234,560	19,259	213,602	1,525	174
2023년	275,520	28,082	245,416	1,819	203
2024년 6월	181,300	13,519	165,365	2,365	51
계	1,185,459	100,290	1,076,925	7,565	679

주: 디성센터가 2018.4.30.에 개소하였음.
자료: 여성가족부

그러나 디성센터의 정원은 2021년 이래 2024년까지 39명으로 유지되었고, 2025년도에 2명이 증가한 것에 그침.

【 디성센터 인력 변동 내역 (2020~2025) 】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정규직	17	17	21	24	26→31[2]	33
기간제	50[1]	22	18	15	13→8	8
합계	67	39	39	39	39	41

주: 1. 텔레그램 N번방 대책 수립 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4개월 간 인력 50명 운영하였고, 2021년 본예산에 반영(4개월→12개월, 50명→22명), 상담 및 삭제 1팀으로 운영
2. 정기증원(2명) 외 정규직 자체조정 +5, 정규직 증원에 따른 기간제 조정 −5

자료: 여성가족부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정원은 유지됨에 따라 1인당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음. 피해자 신청에 의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업무의 경우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의 정규직 인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1인당 처리건수가 2021년 9,472건에서 2023년 16,035건으로 증가함.

【 디성센터 1인당 삭제지원 건수 】

(단위: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 총 삭제지원 건수		169,820	213,602	245,416
피해자 등 요청 삭제 지원	· 전체건수	123,138	164,883	192,424
	· 담당인원(정규직)	13	13	12
	· 1인당 건수	**9,472**	**12,683**	**16,035**
선제적 삭제지원	· 전체건수	46,682	48,719	52,992
	· 담당인원(기간제)	11	10	12
	· 1인당 건수	4,244	4,872	4,416

주: 담당인원 수는 정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인당 처리건수는 늘어날 수 있음.

* 선제적 삭제지원[55],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5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삭제지원 할 수 있는 업무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더욱이 2024년 10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성폭력방지법(법률 제20461호, 2025. 4. 17. 시행예정)」에서 디성센터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제7조의4제1항·제2항)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추가(제7조의3제1항)되며, 디성센터가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되는(제7조의3제7항) 등 디성센터의 책임과 업무가 증가한 상황임.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시행예정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불법촬영물등 및 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1.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 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④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제1항----------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 ⑤ (생 략)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바로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디성센터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의 중요한 부분임.

여성가족부는 성적 허위영상물 확산에 대응하고 법 개정에 따라 중앙 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27명을 추가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56]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에 비해 2023년에 약 2배 이상 증가[57]하였고, 이에 따라 디성센터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신상정보 삭제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58]에

56) 정부는 정규직 인력 27명 증액비용 18억 3,600만원 외에도 AI기반 딥페이크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 시스템 고도화비용 13억 5,000만원, 국제협력 비용 2억 6,000만원, 그 외 통합 홈페이지 구축, 기관 컨설팅 및 사업평가, 전문인력 양성·보수교육, 홍보 등을 위한 비용 9억 3,000만원 등 총 40억 8,200만원(정규직 증원에 따라 기간제 인력 인건비 2억 9,400만원 감액 반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57) 국회도서관의 "접촉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디지털 성범죄는 8,193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6,306건으로 나타남.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국회도서관 Data&Law 2024-11호(통권 제23호), 2024.10.23. 1쪽 참조).

58)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11.6.),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위장-비

서 디성센터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현재 디성센터는 야간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24시간 운영체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59], 기간제 인력의 현원이 예산상의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60] 기간제로 운영할 경우 업무의 안전성 및 연속성이 저해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2명의 증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으로써 디성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간제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추가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감소에 따른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액 감액 조정 필요

내역사업 중 하나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61]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

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59) 현재 디성센터는 휴무 없이 365일 운영하나 평일 8시-22시, 주말 9시~1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고, 디성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야간에는 1366여성긴급전화에서 대응하고 있음.

60) 2024년 10월 현재 선제적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기간제 인력의 정원은 8명이나 실제 현원은 2명에 불과함.

61)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국내외 교류 및 유네스코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정서적 지원 등을 함.

이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62]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비급여치료비용 지원, 일상생활 및 장제비 지원, 정기적 연락·방문 및 맞춤형 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생존자 인원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

여성가족부는 2024년 7월말 기준으로 피해자 9명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함.

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6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 2025년 예산안 산출 근거 】

○ 조사연구, 기록, 홍보: 946백만원 - 조사연구 240백만원, 아카이브 456백만원, 교육홍보 250백만원 ○ 국내외 교류 및 유네스코 지원: 639백만원 - 학술연구 168백만원, 민간단체 협력 121백만원(약 40백 ×3개 단체), 전시유네스코 350백만원 ○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335백만원(약3.1백만원×**9명**×12개월)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4년 9월 7일 피해자 한 분이 별세하여 2024년 10월 기준 생존자가 8명이 됨. 이에 생존자 인원 수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 건강치료비 등은 생존자 8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1명분 예산 3,700만원[63]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63) 1명분의 지원금은 3,720만원(약 3.1백만원 × 12개월)임.

4)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재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구조·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하며, 지역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한 피해 신고접수, 응급조치, 피해자 판정,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인신매매 피해 구조·지원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인신매매방지 기반조성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만원(37.8%)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320	291	401	110	37.8
· 인신매매방지 기반조성	320	111	167	56	50.5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	180	234	54	30.3

자료: 여성가족부

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미설치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동 사업은 2021년 인신매매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발견 및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6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조정협의회 운영,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인신매매 방지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임.

현행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65]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

64)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912호)」 제안이유 참조.

6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 8. (생 략)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

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광역지방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에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1개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50% 보조하는 시범운영비 2억 1,700만원과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발굴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생활, 자립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 협업프로그램 비용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관련 예산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	산출내역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 운영	217	
- 인건비	67	・인건비: 55백만원 = 5명×1개소×2.7백만원×8개월×50% ・초과근무수당: 6백만원 = 5명×1개소×0.3백만원×8개월×50% ・퇴직적립금 6백만원 = 1개소×12백만원×50% * 인건비의 10%
- 운영비	66	・기관운영비: 19백만원 = 1개소×4.8백만원×8개월×50% ・기자재 구입: 1백만원 = 1개소×.0.2백만원×8개월×50% ・사무실임차(보증금, 월세): 31백만원 = 1개소×61백만원×50% ・사무공간 확보: 15백만원=1개소×30백만원×50%

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 사업비	39	· 홍보(캠페인): 18백만원=1개소×35백만원×50% ·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6백만원=1개소×10명×6회×0.2백만원×50% · 교육사업비: 10백만원=1개소×(2회×8개월×1.3백만원)×50% · 신고접수, 현장조사, 통역 등: 5백만원=1개소×11백만원×50%
- 법률지원	45	· 45백만원=30명×1.5백만원×100%
▪ 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 운영	44	· 프로그램사업비: 19백만원 · 생활지원서비스(의료지원): 10.5백만원 · 자립지원서비스(직업훈련): 13.5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2024년 10월 현재까지도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설치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이나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2년 2월부터 시·도 개별접촉, 시·도 국장 회의 상정, 수요조사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나,

인신매매 업무는 성매매·성착취·노동착취 등 강력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여성·외국인·인권·노동 관련 부서가 각자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업무구조상 다양한 착취유형을 담당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전담인력·수행기관 확보가 어려워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입장임.

【 여성가족부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독려 노력 】

△ 시·도 순회 설명회 개최('22.2월)
△ 시·도 수요조사 공문 시행('22.7월, 2회)
  * 여가부 전담직원 파견 등 인센티브 제공 포함
△ 전남도에서 지역권익보호기관 참여 신청('22.7월) 및 이후 미참여 전달('22.10월)
  * (미참여 사유) 당초 시범운영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철회, 기타 기관 찾기 어려움
△ 시도 수요조사 추가 공문 시행('22.10월, 23.3월)

○ 인센티브 제공 계획
  - (인력지원) 여가부 인력(6급) 1명 파견
  - (포　　상)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우선 고려
  - (업무지원) 중앙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업무 협조·지원
  - (위탁기준)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 유예

△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차관 및 시도부단체장 참석) 상정 협조요청('23.2.13./3.15.)
△ 시·도(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 개별접촉 협의('23. 4~5월)
△ 여가부-시도국장회의 상정 협조요청 ('23.4.7.)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수행기관 공모('23.5.16.~6.16.) 보조율 50%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업무협의('24.3.19.)
  * 행안부(자치행정과), 서울시 및 경기도 여성부서 참석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수요조사('24.4.1~4.8)
  * 참여 희망 지자체 없음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못함에 따라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66]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역피해자

6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판정하기 위하여 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권익보호기관에 설치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가 규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짐.

이에 여성가족부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한시적으로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67]하여 2023년 8월부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68]하고,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상담, 신고접수, 구조지원비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함.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미설치되어 중앙 중심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운영할 것을 전제로, 내역사업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조사·연구 및 사례판정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금액 5,000만원과 인신매매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지원비 1억원이 계상됨.

67) 2023년 6월 「(임시)사례판정위원회 한시적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2023.7.13.)하였고 감사원은 임시사례판정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필요성을 인용(2023.8.18.)하였음.

68) 2024년 10월까지 총 13건의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었음
- (23.9.4.) 3건, (24.6.27.) 8건, (24.10.11.) 2건.

【 2023년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 】

○ 인건비 79백만원 : 3.3백만원×2명×1개소×12개월
○ 운영비 5백만원 : 5백만원×1개소
○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지원 50백만원**
- 인신매매등 예방·방지관련 조사 및 연구,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개발 20백만원
- 인신매매 예방·방지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캠페인 등) 10백만원
- 인신매매 방지관련 종사자 교육개발 및 역량강화 사업 11백만원
-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인신매매등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자문 등 9백만원
○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 100백만원**
- 생계지원 35백만원 = 713천원×6개월×8명
- 의료지원 25백만원 = 5,000천원×5명
- 귀국지원 5.6백만원 = 700천원×8명
- 취업지원 4.5백만원 = 1,500천원×3명
- 법률지원 30백만원 = 6,000천원×5명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중앙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사례판정 업무는 「인신매매방지법」상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는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지원 업무 등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인신

매매등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는 법에서 지역피해자보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직접적인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은 동 법률 제정 당시 구상했던 대응체계에 맞지 않은 측면도 있음.

【 중앙 및 지방권익보호기관 업무 관련규정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정책 개발·보급
4.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8.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

③ ~ ⑤ (생 략)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 서비스 관련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지원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업무 지원
4. 그 밖에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해자의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피해자가 응급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입소 지원
3.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
4. 인신매매등 피해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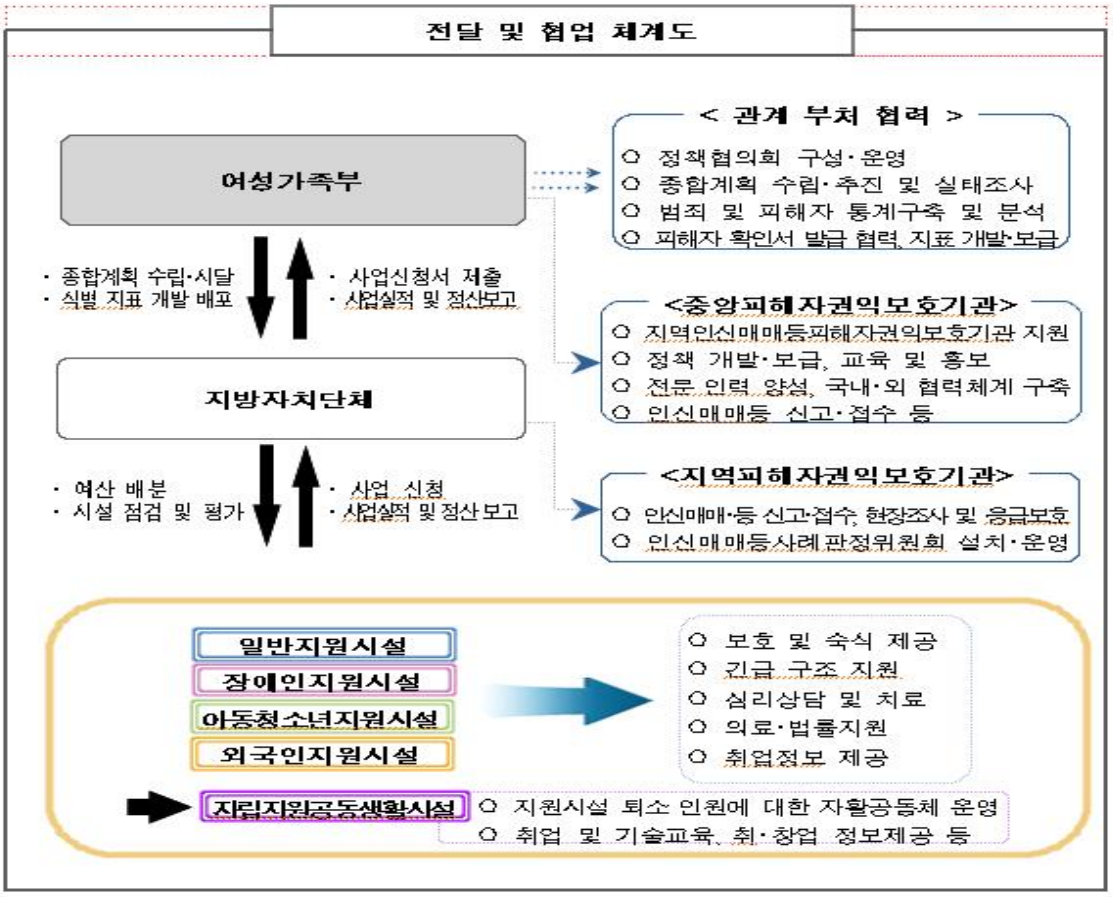

종합하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재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69]

69)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여성가족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불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청 연계, 관계 부처와의 협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이란 시정요구와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지역피해자보호기관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여성가족위원회,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여성가족부 소관)”, 2024. 9, 324 및 359쪽)

다. 양성평등기금

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각 시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고 지원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시스템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가중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여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10대 피의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예산의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등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거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

램·의료비 등,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등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6억 7,000만원이 증액된 431억 6,700만원(4.0%)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 (B)	증감	
				B-A	%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8,458 (35,591)	41,497	43,167	1,670	4.0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6,345 (6,095)	6,832	7,940	1,108	16.2
·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11,299 (10,801)	8,568	12,937	4,369	51.0
·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	-	3,683	-	△3,683	△100
·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	613	712	99	16.2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3,569 (12,556)	13,254	13,144	△110	△0.8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1,104 (1,018)	1,041	1,155	114	11.0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등	1,853 (1,698)	1,853	1,853	-	-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	3,195 (2,535)	3,195	3,195	-	-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1,093 (888)	2,458	2,231	△227	△9.2

자료: 여성가족부

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기관의 설치 등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사업은 지역별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로 지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2명의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는 지원 기관 수가 1개 증가하고 인건비 처우 개선 비용이 반영되어 2024년 대비 9,900만원이 증액된 7억 1,200만원이 편성됨.

【 2024~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사업 산출내역 】

2024년 예산 (613백만원)	2025년도 예산안 (712백만원)
○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형) 지원 : 613백만원 ◦ 인건비 444백만원 = 14개소×2명×31,707천원××50% ◦ 운영비 50백만원 = 7,200천원×14개소×50% ◦ 사업비 119백만원 = 17,000천원×14개소×50%	○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 712백만원 ◦ 인건비 530백만원 = 15개소×2명×35,363천원×50% ◦ 운영비 54백만원 = 7,200천원×15개소×50% ◦ 사업비 128백만원 = 17,000천원×15개소×50%

2024년 현재 14개 시·도에서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지원을 받고 있고, 각 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

으로 상담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와 연계한 불법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및 초기 삭제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설치 현황 】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4	-	1	1	1	1	1	1	-	-	1	1	1	1	1	1	1	1

주: 서울과 경기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법률 제20461호, 2025. 4.17. 시행예정)」 제7조의4제3항[70]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역디성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는 지역디성센터로 전환하거나 지역디성센터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2024년 10월 현재 지역디성센터는 4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는 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국비지원 없이 모두 자

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1호, 2025.4.17. 시행예정)」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체재원으로 운영하는 반면, 부산과 인천은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인력 2명과 자체재원으로 채용한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디성센터 설치 현황 】

구 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근거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7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72]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8조[73]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6조[74]
사업기간	2022. 3. ~	2021. 2. ~	2022. 9. ~	2021. 6. ~
사업수행기관	서울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인력	13명	15명	6명	6명
2024년 예산	1,419백만원(시비 100%)	298백만원 (도비 100%)	1,269백만원 (국비 44백만원, 시비 1,225백만원)	587백만원 (국비 44백만원, 시비 543백만원)
주요사업	피해자원스톱 지원,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상담・삭제지원 등 피해자지원, 도민 대응감시단 운영, 예방 및 홍보 사업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유포 모니터링, 자료작성 등 수사지원	상담・삭제지원 등 피해자지원, 인식개선 사업, 예방 서포터즈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71)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7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73)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8조(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74)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나머지 12개 시도는 별도의 지역디성센터 설치 없이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사업으로 국비지원 받는 전담인력 2명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초기 긴급 삭제지원, 심층 상담, 수사 동행, 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4년 지역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현황(부산·인천 제외) 】

시도	지정기관
경남	(사)경남여성회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
대구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전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전남	(사)행복누리-목포여성상담센터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제주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충남	아산 해뜰통합상담소
충북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자료: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 및 가파른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 등의 빠른 유포·확산,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특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관을 두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난 10월 개정되어 2025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법률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디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지역디성센터가 각 시·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적극 협조하고 지원[75]하는 한편,

각 지역에 단순히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인력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나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삭제지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지원인력의 전문성 보완 및 상호 간 사례 공유 등 지역간 편차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받을 수

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1호, 2025.4.17. 시행예정)」**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홍보예산 증액 필요

앞서 살펴본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사업은 지역별로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를 지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불법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및 초기 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되어 2023년도까지는 일반회계의 '여성폭력방지 정책기반구축' 사업(2136-316)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사업의 취지 및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76]을 받아, 2024년도 예산부터 양성평등기금의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을 포함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사업(2159-432)으로 7억 1,200만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2136-318)에서 디성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로 32억 6,900만원, 여성폭력방

76) "디지털 성범죄 또한 여성폭력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해자 지원 업무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에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었던 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모두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11, 103쪽)

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2136-316)에서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역사업 내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로 5억 2,900만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사업(2137-322)에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3억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상담 2억 6,500만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1233-341)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디클' 유지관리비로 2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4년 대비 주요 증액사항은 ①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지원개소수 1개 증가(14개→15개), ② 디성센터에 삭제지원을 도울 정규직 2명 증가(31명→33명), ③ 디성센터 사업 중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비용 4,000만원 신규 편성, ④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비 3억원 증가 등이 있음.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 사업	내역 사업	2023년	2024년	2025년	주요 증액사유
양평기금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	613 (이관)	712	1개소 추가
일반회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계	2,593	3,475	3,269	
		인건비 및 운영비	1,407	2,062	2,243	정규직 2명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디성센터 전문성 강화)	1,186	1,413	1,026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40)
일반회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229 (이관)	529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300)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지원	595	(이관)		
일반회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	200	300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상담	261	265	265	
일반회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양성평등진흥사업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디클' 유지관리)	240	240	240	
일반회계	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종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996	-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329	(이관)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홍보 예산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사업에서 콘텐츠를 개발한 후 이에 부수하는 홍보(배너광고, 콘텐츠 관련 이벤트 등) 비용만 반영[77]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는 비교적 최근에 새로 등장한 개념으로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78]되는 등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허위영상물 범죄는 10대 피의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79],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회적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 최근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지원 시스템을 알려주는 대국민 홍보예산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7) 2025년도 예산안에는 콘텐츠 개발과 홍보비용을 합쳐 3억원이 편성됨.
7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94&ccfNo=1&cciNo=1&cnpClsNo=1)
79) 2024년 9월 25일 기준 10대 피의자가 전체 387명 중 324명으로 83.7%에 달함(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국회도서관 Data&Law 2024-11호(통권 제23호), 2024.10.23. 2쪽 참조).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사업 중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안이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 편성되어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과 통합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20억 5,900만원이 증액된 394억 1,300만원(5.5%)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6,732 (35,182)	37,354	39,413	2,059	5.5
·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033 (13,440)	14,181	14,980	799	5.6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8,222 (17,547)	19,465	20,035	570	2.9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4,338 (4,056)	3,536	3,540	4	0.1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39	172	172	-	-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	686	686	순증

자료: 여성가족부

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2023년 수준으로 회복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가족, 친지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도록 의료비, 간병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안은 의료비·간병비 지원에 21억 3,4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억 7,400만원, 피해자 치료동행 서비스 등 기타 부대비용 지원에 9억 3,200만원 등 총 35억 4,0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 3,540백만원
○ 의료비·간병비 지원 : 2,134백만원
- (의료비) 170천원 × 20천명 × 50~70% = 2,108백만원
- (간병비) 2,300천원 × 17명 × 50~70% = 26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474백만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평균 18백만원×35개소×50~70% = 474백만원
○ 피해자 치료동행 서비스, 기타 부대비용 등 지원 932백만원
- (치료동행 서비스) 47백만원×24개소×50~70% = 778백만원
- (부대비용) 6백만원×41개소×50~70% = 154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이 중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피해자에게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관련 금액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지원하는 사업임.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2023년도까지는 약 50개소에 평균 2,800만원(보조율 50～70%)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에 절반 수준인 4억 7,400만원으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되었음. 2025년도 계획안에도 2023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액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됨.

【 2023~2025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편성 내역 】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	2025년도 계획안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947백만원 - 평균 28백만원×50개소×50~70%=947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474백만원 - 평균 18백만원×35개소×50~70% =474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474백만원 - 평균 18백만원×35개소×50~70% =474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2024년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비가 50% 감축 구조조정이 된 것임.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80]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였고 2023년 4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함.

그런데 해당 사업은 성폭력 피해로 손상된 심신·정서 회복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높아 상당한 수준의 회복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2024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시설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81]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81) 허민숙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 7. 18. 참조.

이에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은 마련하되, 피해자를 지원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은 2023년 이전 수준으로 증액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청소년정책관

가. 총괄

1) 개요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되어 총액은 2,455억 2,800만원으로 전년(2,398억 2,500만원) 대비 57억 300만원(2.4%)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50억 1,200만원으로, 전년(883억 7,000만원) 대비 66억 4,200만원(7.5%) 증가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안은 1,505억 1,600만원으로 전년(1,514억 5,500만원) 대비 9억 3,900만원(△0.6%)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39,825	239,825	245,528	5,703	2.4
일반회계	88,370	88,370	95,012	6,642	7.5
청소년육성기금	151,455	151,455	150,516	△939	△0.6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39,825	239,825	245,528	5,703	2.4
【일반회계】	88,370	88,370	95,012	6,642	7.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2,002	2,002	2,427	425	21.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27	14,827	16,425	1,598	10.8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7,953	7,953	8,328	375	4.7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3,691	3,691	5,706	2,015	54.6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745	9,745	12,727	2,982	30.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9,967	39,967	39,459	△508	△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9,590	9,590	9,354	△236	△2.5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총액대상)	282	282	275	△7	△2.5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13	313	311	△2	△0.6
【청소년육성기금】	151,455	151,455	150,516	△939	△0.6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485	31,485	30,387	△1,098	△3.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6,738	6,738	4,189	△2,549	△37.8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72,073	72,073	71,820	△253	△0.4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0,855	30,855	33,079	2,224	7.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10,304	10,304	11,041	737	7.2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4개, 청소년육성기금 3개 사업임.

이 중 일반회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5억 800만원(△1.3%)이 감액된 394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 효율화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2.5%)이 감액된 9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의 국고 보조율 조정(50% → 30%)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5억 4,900만원(△37.8%)이 감액된 4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은 급식비 등 지원인원 현실화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0억 9,800만원(△3.5%)이 감액된 303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9,967	39,967	39,459	△508	△1.3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9,590	9,590	9,354	△236	△2.5	사업 효율화 등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총액대상)	282	282	275	△7	△2.5	기본경비 절감 등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13	313	311	△2	△0.6	기본경비 절감 등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485	31,485	30,387	△1,098	△3.5	급식비 지원인원 현실화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6,738	6,738	4,189	△2,549	△37.8	국비보조율 조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72,073	72,073	71,820	△253	△0.4	법정실태조사 주기에 따른 순감 등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나. 일반회계

1)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 초등학생 단계에서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고, 초등학생 단계에서 과의존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대상에 초등학교 고학년(초등 4년∼6년)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은 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②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③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④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억 7,500만원(4.7%)이 증액된 8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7,606 (7,278)	7,963	8,328	375	4.7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2,641 (2,641)	2,749	3,056	307	11.7
·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	2,645	2,683	38	1.4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2,003 (2,003)	2,047	2,077	30	1.5
·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 정화 등	130	106	106	-	-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430 (409)	406	406	-	-

자료: 여성가족부

나)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개요

내역사업인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2233-332)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되던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2253-431)’ 사업을 통·폐합하여 2024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임.[82)]

82) 일반회계인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인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사업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의료치료, 기숙 치유캠프,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00만원(1.4%)이 증액된 26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여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을 총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협력병원, 치유캠프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연계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및 청소년 상담전문가의 사후관리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기관[83]을 통해 상담, 추가심리검사, 치료협력병원 연계, 기숙치유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주의사용자군'에게는 학교별 집단상담, '위험사용자군'에게는 개인별 상담을 제공하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병원치료까지 연계 지원함.
-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중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및 주말 중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11박 12일, 중·고생 대상), 가족치유캠프(1박 2일: 초1 대상, 2박 3일: 초2~초6 대상)를 운영하고, 학기 중에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에서 상시적인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함.

8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위험수준별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의존 위험군(A+B-C)	235,687	230,634	221,029
위험사용자군(A)	32,694	31,256	174,374
주의사용자군(B)	291,116	281,369	127,845
중복위험군(C)	88,123	81,991	81,190

주: 1. 위험사용자군: 일생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2. 주의사용자군: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
3. 과의존 위험군: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 합계에서 중복위험군 제함.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2023년까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외에 사이버 도박 중독 위험군인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사이버 도박 중독 단일 위험군의 경우 바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하고, 사이버 도박 중독 위험군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병존한 경우 1차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필요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하는 체계이며, 도박문제 집중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사이버 도박 중독 기숙치유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함.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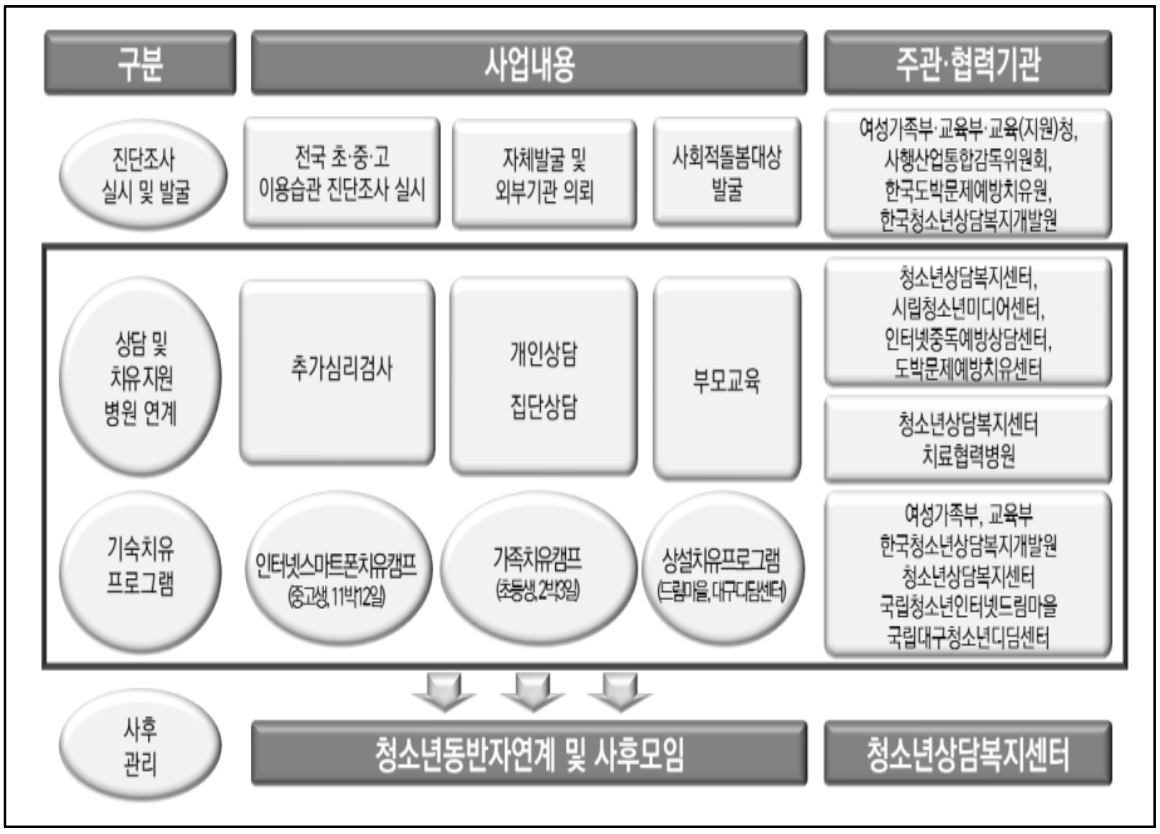

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지원대상 확대 운영 필요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사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치료 및 상담, 체험활동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700만원(11.7%)이 증액된 30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3,056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 사업비 774백만원 · 식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 373백만원 = 12개월×31,083천원 · 멘토인건비 : 401백만원 = 13명×10,310원×8시간×17일×22회 2) 인건비 1,414백만원 · 인건비 : 1,414백만원 = 25명×4,713천원×12개월 3) 운영비 611백만원 · 공공요금, 4대보험, 자산유지 관리비 등 : 487백만원 = 12개월×40,583천원 ·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 124백만원 = 6명×11,716원×7시간×21일×12개월 4) 시설보수비 257백만원 · 노후화된 버스 교체 : 257백만원 = 1대×257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8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주의사용자군+위험사용자군) 및 사이버 도박문제 청소년(13~18세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의존 위험 정도에 따라 기숙치유캠프 방식으로 1~4주간의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84) 2023년도부터 사업비목(민간경상보조(320-01) → 민간위탁사업비(320-02) 전환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사업대상 】

구 분		대 상
심층 프로그램	4주 (25박 26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으로 일상생활 지도 등 보다 체계적·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3주 (18박 19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중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일반 프로그램	2주 (11박 12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주의사용자군 청소년 ※ 사이버 도박문제 청소년 대상 캠프(2회)
	1주 (7박 8일)	

출처: 여성가족부 지침(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Ⅱ)), p922.

2024년에는 총 22회[85]의 치유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9월말 현재 17회(1주 8회, 2주 8회, 4주 1회)의 치유캠프를 실시하여 385명의 청소년을 지원하였음.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 운영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기준)
계	18회	19회	22회	17회
1주	8회	9회	8회	8회
2주	6회	7회	12회	8회
3주	3회	2회	1회	0회
4주	1회	1회	1회	1회
참가인원	323명	382명	469명	385명

85)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력캠프 6회를 포함한 것임.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사업의 지원대상인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위험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령전환기(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24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

구 분	주 요 내 용
조사기간	2024. 4. 1. ~ 4. 26.
참여인원	전국 11,746개 초·중·고등학교, 총 1,249,317명 - 초등 4년 388,399명, 중등 1년 441,897명, 고등 1년 419,021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웹 기반의 설문 시스템 운영)
이용척도	K척도(인터넷 과의존), S척도(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관찰자(유아동관찰자 척도) 청소년 도박문제 측정도구(사이버 도박)

자료: 여성가족부

본 진단조사는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외에 초등학교 4학년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진단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참여학생 388,399명 중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이 58,081명(15.0%)이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중학생(20.3%), 고등학생(17.5%)에 비해 낮기는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참여인원	388,399	441,897	419,021
과의존 위험군	58,081	89,812	73,136
과의존 위험군 비율	15.0	20.3	17.5

자료: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초등학생(42.1%)이 고등학생(3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현황 】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과의존률	24.4	30.5	31.6	37.6	42.1	34.7	39.6	41.0	45.4	42.1	29.5	35.0	36.4	36.6	36.0
고위험군	2.8	4.3	5.0	5.1	2.8	4.6	5.8	6.5	5.8	5.6	4.2	5.3	5.7	4.6	6.2
잠재위험군	21.6	26.2	26.6	32.5	39.3	30.1	33.8	34.5	39.6	36.5	25.2	29.7	30.7	32.1	29.7

자료: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이처럼 초등학생 단계인 저연령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은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13~18세

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치유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와는 별도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치유캠프(11박 12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초등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치유캠프〔1박2일(초등 1학년), 2박3일(초등 2~6학년)〕를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숙캠프 및 가족캠프 치유프로그램 비교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대상	중·고생(13세~19세 미만)	초등학생(8세~12세 이하) 및 보호자
운영 형태	운영기관별 11박 12일 기숙형 캠프(1회)	운영기관별 1박2일(초1), 2박 3일(초2~6) 기숙형 캠프(1회)
운영 기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 내용	▸상담지원 : 개인상담(청소년, 부모), 집단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활동지원 : 체험활동, 가족활동, 대안활동, 자치활동, 봉사활동 ▸기타지원 : 멘토링, 생활지원, 안전교육 실시 등	▸상담지원 : 집단상담(청소년, 부모, 가족), 부모교육 ▸활동지원 : 가족활동, 대안활동
사후관리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생활 점검, 사후모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시간 점검, 사후모임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작성

【 2021∼2024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캠프 지원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현재)
인터넷드림마을	18회 323명	19회 382명	22회 469명	17회 385명
기숙치유캠프	10회 115명	10회 189명	8회 151명	4회 83명
가족치유캠프	12회 178가족	15회 267가족	15회 311가족	10회 196가족

자료: 여성가족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중·고등학생 대상 기숙치유캠프는 체험활동, 봉사활동, 멘토링, 생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인터넷드림마을의 일반프로그램(2주) 과정과 유사한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가족치유캠프의 경우 1박 2일, 2박 3일의 짧은 운영 기간으로 인해 상담, 가족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치유캠프에 비하여 치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초등학생 단계에서 인터넷·스마트폰 등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고 초등학생 단계에서 과의존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 발굴하여 치유할 필요성이 높아 보이는바,

여성가족부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대상에 초등학교 고학년(초등 4년~6년)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이·전용, 이월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은 지방에 거주하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치유기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① 국립 호남권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② 국립 광주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③ 국립 경상권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0억 1,500만원(54.6%)이 증액된 5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194 (194)	3,691	5,706	2,015	54.6
· 국립호남권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185 (185)	600	3,732	3,132	522.0
· 국립광주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9 (9)	2,091	1,974	△117	△5.6
· 국립경남권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	1,000	-	1,000	-

자료: 여성가족부

나)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지연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필요성에 따라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동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5년(2023년~2027년), 총사업비는 229억원임.

【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센터 개요 】

구 분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187-2번지 일원
총사업비	229억원
사업기간	2023년~2027년(예정)
사업규모	부지면적 28,533㎡, 건축연면적 4,150㎡, 3층이내
설립목적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9~18세)
주요시설	치료실, 상담실, 대안교실, 생활동, 체육관 등
프로그램	「치료+보호+교육+자립」 종합적·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19억 7,400만원(공사비 18억 700만원, 감리비 1억 5,6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0억원에서 전용액 7억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3억원 중 기본조사설계비 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9,100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이 0.9%에 불과하였음.

또한, 2024년(9월말 기준)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본예산 20억 9,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9,100만원을 더한 23억 8,200만원으로, 이 중 4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집행률은 19.7%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다음연도 예산안
2023	계	1,000	-	700	300	9	291	-	2,091
	건설보상비	-	-	-	-	-	-	-	1,351
	기본조사설계비	400	191	200	200	9	191	-	520
	실시설계비	600	100	500	100	-	100	-	220
2024 (9월말)	계	2,091	291	±218	2,382	470	1,590	36	1,974
	건설보상비	1,351	-	-	1,351	-	1,351	-	-
	기본조사설계비	520	191	△218	493	364	94	35	-
	실시설계비	220	100	211	531	100	145	-	-
	공사비		-	-	-				1,807
	감리비		-	-	-				156
	시설부대비		-	7	7	6	-	1	11

주: 2024년은 9월말 기준으로 연내 집행 계획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예상액 작성
자료: 여성가족부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사업 기본계획이 늦어지면서 광주광역시,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준비,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 절차가 단계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사업 실집행 현황 】

월 별 일 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3. 6월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3. 6월	건립예산 총사업비 확정(229억원, 기획재정부)
‘23. 8월	맞춤형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조달청)
‘23. 9월	토지보상 업무협약 체결(광주광역시)
‘23. 10 ~ 12월	설계공모 및 심사·선정
‘23. 12 ~ ’24. 2월	계획설계 실시
’24. 2월	계획설계 완료
‘24. 2 ~ 4월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4. 5 ~ 8월	중간설계 실시
’24. 8월	중간설계 완료
‘24. 8 ~ 10월	중간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조달청)
‘24. 11월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4. 11 ~ ’25. 4월	실시설계 실시
‘25. 4월	실시설계 완료
‘25. 4 ~ 6월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5. 6월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5. 7 ~ 8월	시공사 및 감리사 입찰 및 계약
‘25. 9월	착공
‘27. 8월	준공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8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87]에 따라 설계공모, 시공관리 등 공사 계약 등에 관한 업무는 조달청에 일괄대행 위탁 방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등 절차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가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6월에 건립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설계공모(2023. 10. 26.) 및 선정(2023. 12. 1.)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 12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결과 2023년 예산현액 3억원 중 2억 9,100만원(기본조사 설계비 1억 9,100만원, 실시설계비 1억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동 사업은 당초 2023년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조사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2024년 12월까지 모두

---

8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8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 공사등의 시공관리
라. 공사등의 사후관리
마.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완료할 계획이었으나,[88] 2024년 9월말 현재 중간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중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조달청 적정성 검토 등이 완료된 이후에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89]에 따라 실시설계는 중간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전까지 착수할 수 없으므로 연내 실시설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여성가족부는 실시설계가 2025년 6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설보상비(부지매입비)는 토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협의를 거친 후 집행이 가능하므로, 2024년 예산 중 설계용역비 잔금[90] 및 건설보상비 13억 5,100만원 전액은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91]에 따라 센터 건립부지 내 공유지 매입·보상 등에 관한

88) 기본조사설계 용역 기간, 실시설계 용역 기간
89)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15)」
(2) 실시설계 착수 시점
◦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 후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착수한다.
90) 기본조사설계비 9,376만원(소규모재해·환경영향평가 잔금 등), 실시설계비 1억 4,488만원(실시설계 잔금)
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광주광역시가 수행하는데, 2024년 10월 현재 보상계획에 관한 열람을 공고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토지보상 업무(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협의→수용신청 재결(미협의시)→공탁)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여성가족부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겠음.

동 사업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서도 다시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사업비 협의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협의가 길어질 수 있고, 건축협의 및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계약 절차 등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센터 건립은 2025년 연내 착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동 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이·전용, 이월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음.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청소년육성기금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2252-436)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현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연례적으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우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를 환류·제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②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③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④ 청소년수련시설 협력강화 및 발전지원사업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5억 4,900만원(△37.8%)이 감액된 4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6,064 (5,631)	6,738	4,189	△2,549	△37.8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513 (5.080)	5,717	3,533	△2,184	△38.2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126	691	160	△531	△76.8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327	251	425	174	69.3
· 청소년수련시설 협력 강화 및 발전지원사업	98	79	71	△8	△10.1

자료: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지원 문제

내역사업인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 8,400만원(38.2%)이 감액된 35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3,533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가. 기본급 3,403백만원 · 430명×2,198천원×지자체보조 30%×12개월=3,403백만원 나 정규직전환비용 130백만원 ·152명×2,843천원×30%=130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9월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57억 1,700만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4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실집행률은 73.3%임.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2024년 9월말 현재)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5,717	5,717	4,191	73.3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중심으로 수련활동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시설에 우선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9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시설에

9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한정하여 지원하되, 시설당 1명 배치를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수련원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 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 특화시설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배치(채용) 요건으로 하며, 각 수련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등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청소년 대피훈련·이용자 안전교육 등 안전업무를 담당함.

2024년 9월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을 보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540개소 중 425개소(78.7%)와 청소년수련원 5개소에 청소년지도사를 시설당 1명씩 배치·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도 430명으로 올해와 동일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2024년 9월말 현재) 】

구 분	시설수 (개소)	지원인원(명)			
		소계	1급	2급	3급
합 계	430	430	29	389	12
청소년수련관	143	143	6	134	3
청소년문화의집	282	282	23	250	9
청소년수련원	5	5	-	5	-

주: 청소년수련원은 기존 지원시설에 한하여 지원중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받는 수련시설 중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은 23개소, 2022년 미준수 시설은 16개소, 2023년 미준수 시설은 16개소로 나타났고, 2024년 9월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은 8개소인 것으로 확인됨.

【 2022~2024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단위: 개소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현재)
지원 시설 수	428	430	430	430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수	23	16	16	8

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현황은 매 연도 12월말(2023년은 8월말) 자료 제출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작성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종료시설 현황을 보면, 전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지원이 제외된 시설은 2022년은 8개소, 2023년은 10개소, 2024년은 2개소로 나타남.

【 2022~2024년(9월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종료시설 현황 】

(단위: 개소수)

구분	신규 지원시설	지원 종료시설	지원 종료사유	
			배치기준 미준수	휴지·폐지 등
2022년	15	13	8	5
2023년	20	20	10	10
2024년	9	9	2	7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작성

여성가족부 지침[93]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은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94]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매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구인공고실적을 같이 제출하게 하면서, 추진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구인공고를 하지 않은 시설은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부터 2024년 9월말 현재까지 연도별로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구인공고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2021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23개소 중 15개소는 2022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이 중 구인공고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시설이 4개소이며, 5개소의 시설은 2022년에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93) 「2024년 청소년 사업안내(Ⅰ)」, p289, 290.
94) 다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 및 산간 지역으로 지도사 구인이 어려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퇴사로 인한 일시적인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은 지원 가능함.

【 2021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중 2022년 지원 시설 현황 】

지역	시설명	미준수 시점	구인공고 실적		2022년 준수 여부
			상반기	하반기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2021년 하반기	-	1회(10월)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	1회(10월)	○
광주	동구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1회(6월)	1회(7월)	○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2021년 하반기	-	-	○
충북	단양군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3회(2, 3월)	2회(7월)	○
강원	정선군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3회(2, 6월)	2회(7, 8월)	×
전북	김제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	1회(11월)	○
전남	목포시청소년수련원	2021년 하반기	-	-	○
	여수시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	-	○
경북	칠곡군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1회(2월)	-	×
	칠곡군청소년문화의집	2021년 상반기	1회(1월)	-	×
	청송군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	2회(9, 10월)	×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2021년 하반기	-	-	○
	하동군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2회(5, 6월)	-	×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1회(2월)	-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작성

202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16개소 중 6개소는 2023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2개소의 시설은 2023년에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중 2023년 지원 시설 현황 】

지역	시설명	미준수 시점	구인공고 실적		2023년 준수 여부
			상반기	하반기	
강원	정선군청소년수련관	2021년 상반기	1회(2월)	-	○
전남	진도군청소년수련원	2022년 하반기	-	1회(9월)	×
경북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2022년 하반기	-	1회(12월)	○
	칠곡군청소년문화의집	2021년 상반기	1회(2월)	1회(11월)	○
경남	의령군청소년수련관	2022년 상반기	1회(3월)	-	×
제주	용담1청소년문화의집	2021년 하반기	7회(1~6월)	1회(7월)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작성

2023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16개소 중 14개소가 2024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구인공고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시설이 8개소이고, 3개소의 시설은 2024년에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중 1개소는 연중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중 2024년 지원 시설 현황 】

지역	시설명	미준수 시점	구인공고 실적		2024년 준수 여부
			상반기	하반기	
서울	관악청소년센터	2023년 하반기	-	-	○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2023년 상반기	1회(2월)	-	×
대전	도안청소년문화의집	2023년 하반기	-	5회(8~12월)	○
경기	단원청소년수련관	2023년 하반기	-	-	○
강원	태백시청소년수련관	2023년 하반기	-	-	○
충북	장락청소년문화의집	2023년 상반기	1회(6월)	2회(8, 9월)	○

지역	시설명	미준수 시점	구인공고 실적		2024년 준수 여부
			상반기	하반기	
충남	홍성군청소년수련관	2023년 하반기	-	-	○
전북	김제청소년수련관	2023년 상반기	-	-	×
전남	장흥군청소년수련관	2023년 하반기	-	1회(7월)	○
경북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2023년 상반기	2회(5월)	-	○
경남	창원봉림청소년수련관	2023년 상반기	-	-	○
	사천시청소년수련관	2023년 하반기	-	-	○
	의령군청소년수련관	2022년 상반기	휴지 중		×
	고성군청소년수련관	2023년 상반기	-	-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작성

2024년 9월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8개소 중 4개소는 구인공고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1개소의 시설은 2023년부터 계속 운영을 중지 중인 상황임.

【 2024년(9월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 현황 】

지역	시설명	미준수 시점	구인공고 실적	
			상반기	하반기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2023년 상반기	2회(2, 4월)	1회(7월)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2024년 상반기	-	-
경기	연천군청소년수련관	2024년 상반기	2회(2, 4월)	1회(10월)
강원	동면청소년문화의집	2024년 상반기	-	-
강원	국토정중앙면청소년문화의집	2024년 상반기	-	-
강원	방산면청소년문화의집	2024년 상반기	-	-
전북	김제청소년수련관	2023년 상반기	2회(4, 5월)	-
경남	의령군청소년수련관	2022년 상반기	휴지 중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작성

또한, 2021년부터 2024년 9월말 현재까지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2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2개소, 3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3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남 의령군청소년수련관은 2023년부터 휴지 중인 것으로 확인됨.

【 2021∼2024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2년 이상 미준수 시설 현황 】

지역	시설명	연도별 배치기준 준수 여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현재)
강원	정선군청소년수련관	×	×	○	○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	○	×	×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	○	○	×
전북	김제청소년수련관	×	○	×	×
경남	의령군청소년수련관	○	×	×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재작성

2024년 기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540개소 중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받는 시설 수는 425개소(78.7%)로, 나머지 115개소의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2024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수 대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현황 】

청도년지도사 배치 지원인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전체 시설 수	지원 시설 수	지원 비율
425명[95]	540개소	425개소	78.7%

자료: 여성가족부

95) 2024년 지원 430개소 중 5개소는 청소년수련원 지원

한정된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21.3%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 노력이 부족한 시설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연례적으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2254-431)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비목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례적으로 수검률이 저조하므로, 연례적으로 수검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하여 수검률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등을 통하여 건강검진 수검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신규 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은 2024년 9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 집행 편차도 크므로, 각 지자체별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체험기관 발굴·연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96]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97] 등에 따라 지역

9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① 청소년안전망 운영, ② 청소년상담 1388 운영,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④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⑥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억 5,300만원(△0.4%)이 감액된 71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72,490 (69,284)	72,073	71,820	△253	△0.4
· 청소년안전망 운영	29,744 (28,105)	31,242	31,698	456	1.5
· 청소년상담 1388 운영	2,545 (2,545)	2,601	2,670	69	2.7
· 학교밖청소년 지원	27,262 (26,477)	28,888	29,408	520	1.8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3,587 (3,358)	4,287	4,287	-	-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3,940 (3,936)	3,966	2,428	△1,538	△38.8
·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1,089	1,329	240	22.0

자료: 여성가족부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예산 비목전환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 하나이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매 3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와 동일한 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762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 검진비 517백만원 · 6,900명×75천원×100% 2) 사업비 245백만원 · 검진표 및 안내문 발송 · 관련기관 연계 및 교육 · 전산장비 활용료 및 인건비 지원 · 건강검진 결과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98]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실시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서, 건강진단 실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99]은 민간보조사업의 적용대상을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하고 있으며, 사업성격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보조 →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도록 하고 있음.

종합하면,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비목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9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9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102, 104.)」

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지역별 편차 문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검진이 가능하고 검진비용은 무료이며 본인부담은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개요 】

대 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검진기간	연중
검진항목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진,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HDL·LDL콜레스테롤·중성지방 등
검진기관	전국 1,000여개 병·의원·보건기관 등
검진비용	무료(본인부담 없음)
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9월말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집행 내역 및 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7억 6,200만원 중 5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67.7%이며,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5,791명 중 수검자는 4,288명으로 수검률은 74.0%임.

【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집행 및 수검 현황 】

(단위: 천원, 명,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대상자[100]	수검자	수검률
검진비	517	365	152	5,791	4,288	74.0
관리운영비등	245	151	94			
계	762	516	246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최근 3년 동안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수검률 86.0%에서 2022년 수검률은 84.1%, 2023년 수검률은 82.5%로 수검률의 변동 폭이 크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례적으로 수검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2021~2023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 현황 】

(단위: 명, %)

연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21년	7,153	6,148	86.0
2022년	6,724	5,654	84.1
2023년	6,557	5,409	82.5

자료: 여성가족부

2021년부터 2024년 9월말 현재까지 17개 시·도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보면, 서울, 울산, 세종, 전남 등 4개 지

100) 2023년까지의 건강검진 대상 인원 중에 3년이 초과하였으나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수를 포함하여 지자체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건강검진을 신청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집계한 것임.

자체는 매년 평균 수검률에 미달하였음.

세종의 경우 4년 연속 수검률이 가장 낮았으며, 울산, 전남 등 2개 지자체도 매년 수검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건강검진 수검실적 저조한 4개 지자체 연도별 수검률 현황 】

(단위: 천원, 명, %)

지방자치단체	수검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현재)
서울	73.5	81.8	70.9	66.9
울산	80.5	74.0	67.0	51.3
세종	53.0	47.0	47.0	27.0
전남	77.6	71.0	67.8	50.2
평균 수검률	**86.0**	**84.0**	**82.5**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지방의 경우 병·의원 방문이 용이하지 않고, 일부 수도권(경기 등)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 출장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지자체별 일부 편차가 있다는 설명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건강검진에 필요한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연례적으로 수검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참여율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의원·보건소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인지 수검률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 등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 하나이며,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를 위해 개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에 신규로 도입된 자치단체경상보조(320-01)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한 1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1,90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맞춤형 직업훈련비 지원 : 510명×3,600천원×50,70% = 1,263,600천원 · 인턴십 지원 : 340명×2,000천원×50,70% = 468,000천원 · 취업연계 지원 : 17개소×15,000천원×50,70% = 175,400천원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은 ① 자립·취업 희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② 맞춤형 직업훈련, ③ 인턴십·직장체험, ④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지원체계로 운영되며, 16개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의 각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분야별 기술훈련장 및 해당 전문직업훈련을 연계·지원하는 것이고,

인턴십·직장체험은 직업훈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장체험처 및 지역 기업을 연계·지원하는 것임.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는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력서 코칭, 모의면접, 취업 알선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연계를 위한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임.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지원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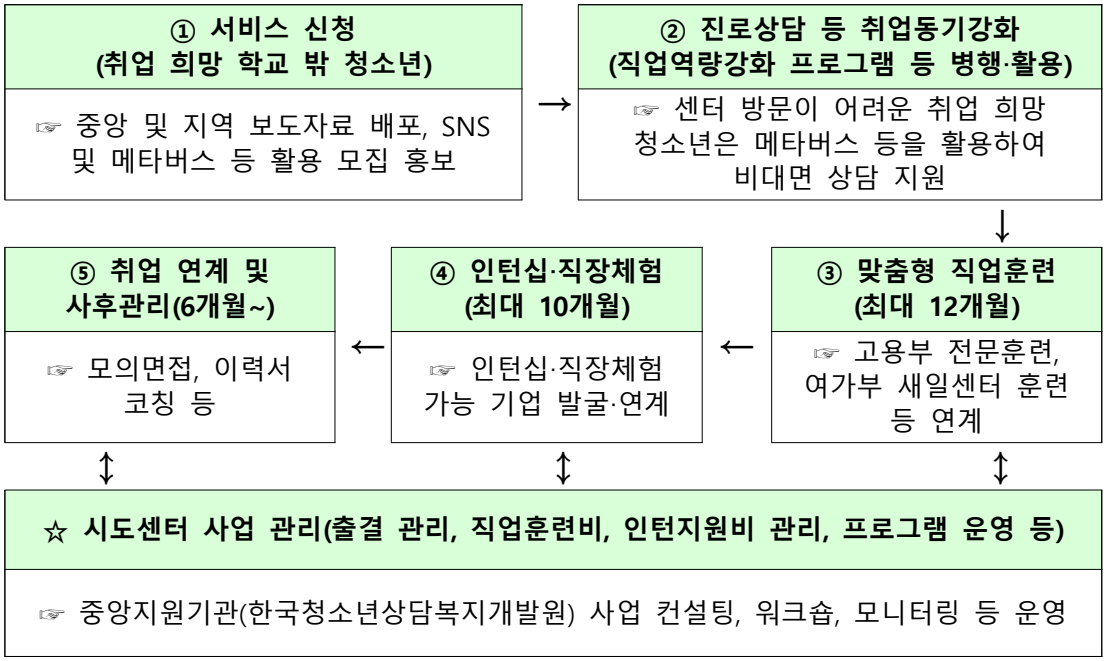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을 희망하는 15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일 8시간 이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업훈련의 경우 직업훈련기관에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인턴십·직장체험의 경우에는 제공 기업에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함.

【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 지원내용 】

구 분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직장체험
대상자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연간 지원인원	시·도별 32명 이상	시·도별 21명 이상
연간[101] 지원액	최대 36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12개월	10개월
지원내용	정부인증 직업훈련 전문기관 프로그램 참여	직업분야별 직장체험처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경험 제공
지원항목	직업훈련과정에 필요한 수강료 및 강사비 등	직장체험처 연계운영비,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등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의 2024년 9월말 현재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9억 700만원을 16개 시·도에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9억원을 집행하였는바, 실집행률이 47.2%로 저조한 상황임.

【 2024년(9월말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맞춤형 직업훈련	1,264	1,264	662	52.4
인턴십·직장체험	468	468	150	32.0
취업연계 지원	175	175	88	50.0
계	1,907	1,907	900	47.2

자료: 여성가족부

101) 맞춤형 직업훈련비 및 인턴십·직장체험 연계운영비는 해당 기관 및 기업에 지급하며, 해당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당초 계획했던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 기간과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은 기간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이 주된 요인임.

동 사업은 연중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인원을 510명(시·도별 32명), 지원기간을 12개월로, 인턴십·직장체험 지원인원을 340명(시·도별 21명), 지원기간을 10개월로 계획하고 2024년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2024년 9월말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 평균 지원기간은 2.6개월에 불과한바, 당초 지원계획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 지원인원 및 기간 】

(단위: 명, 개월수, 2024. 9월말 기준)

지역명	직업훈련		인턴십·직장체험		소 계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서울	70	1.0	44	2.5	114	1.5
부산	94	2.6	49	2.4	143	2.5
대구	70	1.8	48	2.6	118	2.0
인천	156	2.9	26	2.9	182	2.9
광주	165	2.0	0	0.0	165	1.9
대전	37	3.2	40	2.8	77	2.9
울산	67	1.1	20	3.2	87	2.6
경기	109	3.4	40	2.6	149	3.1
강원	58	3.2	15	3.0	73	3.2
충북	79	5.0	31	2.9	110	3.9

지역명	직업훈련		인턴십·직장체험		소 계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충남	33	2.6	4	1.2	37	2.6
전북	94	2.7	47	3.3	141	2.9
전남	61	4.0	29	2.1	90	3.4
경북	48	1.8	27	2.0	75	1.9
경남	84	3.3	41	1.2	125	2.5
제주	80	3.0	31	2.5	111	2.9
계	1,305	2.6	492	2.6	1,797	2.6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9월말 현재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은 1,797명으로, 당초 계획한 850명보다 947명 늘어났음에도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취업을 희망한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현장에서 단기과정에 주로 참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각 시·도별 집행 편차도 나타나는데, 실집행률 60% 이상인 지자체가 5개(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인 반면, 실집행률이 40% 미만인 지자체가 5개(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로 지방자치단체별 집행실적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중 실집행률이 가장 높은 전북(76.9%)과 가장 낮은 서울(18.8%)의 실집행률 차이는 무려 58.1%에 달하고 있음.[102)]

102)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동 사업이 2024년 신규로 추진되어 지방비 매칭이 지연(지방비 부족분 추경 편성 등)된 일부 지자체들의 사업 시작 시기가 늦어졌으며, 각 지역에서

【 지자체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 집행 및 지원 현황 】

(단위: 명, 개월수, 2024. 9월말 기준)

지역명	교부액	실집행액	계획인원 (연간)	지원인원	실집행률
서울	86,680	16,269	53	114	18.8
부산	121,352	82,549	53	143	68.0
대구	121,352	37,870	53	118	31.2
인천	121,352	55,808	53	182	46.0
광주	121,352	54,819	53	165	45.2
대전	121,352	29,952	53	77	24.7
울산	121,352	52,826	53	87	43.5
경기	121,352	50,240	53	149	41.4
강원	121,352	75,300	53	73	62.1
충북	121,352	75,423	53	110	62.2
충남	121,352	31,858	53	37	26.3
전북	121,352	93,280	53	141	76.9
전남	121,352	90,352	53	90	74.5
경북	121,352	29,101	53	75	24.0
경남	121,352	57,914	53	125	47.7
제주	121,352	66,011	53	111	54.4
계	1,906,960	899,572	848	1,797	47.2

자료: 여성가족부

집행실적이 가장 낮은 서울의 경우 지원인원은 114명으로 계획인원을 61명이나 초과 지원하였으나 실집행률이 18.8%에 불과하였고, 집행실적이 두 번째로 높은 전남의 경우 지원인원이 90명으

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로 오히려 서울보다 24명 적은 인원을 지원하였으나 실집행률은 74.5%로 높게 나타났음.

서울 외에도 실집행률이 40% 미만인 지자체 모두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당초 계획인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요인은 중장기 참여보다는 단기과정 위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중장기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과정 개설이 필요해 보임.

각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선호를 반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업 발굴·연계 체계 확보 등을 통해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장기 과정 참여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별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함께 청소년의 직업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체험 기관 발굴·연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가족정책관

가. 총괄

1) 개요

2025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으로 구성되어 총액은 1조 2,705억 1,400만원으로, 전년(1조 1,971억 2,200만원) 대비 733억 9,200만원(6.1%)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99억 6,500만원으로, 전년(4,977억 9,800만원) 대비 621억 6,700만원(12.5%)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 5,000만원으로, 전년(90억 5,000만원) 대비 51억원(△56.4%) 감소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안은 7,065억 9,900만원으로, 전년(6,902억 7,400만원) 대비 163억 2,500만원(2.4%) 증가하였음.

【 2025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197,122	1,197,122	1,270,514	73,392	6.1
일반회계	497,798	497,798	559,965	62,167	1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050	9,050	3,950	△5,100	△56.4
양성평등기금	690,274	690,274	706,599	16,325	2.4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아이돌봄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가족센터 건립 지역자율계정 1개[103]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03) 가족센터 건립(제주계정)은 2023년 예산 순감으로 폐지함.

【 2025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가족정책관)	1,197,122	1,197,122	1,270,514	73,392	6.1
【 일반회계 】	497,798	497,798	559,965	62,167	12.5
가족역량강화지원	2,762	2,762	2,102	△660	△23.9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505	2,505	2,518	13	0.5
아이돌봄지원	467,866	467,866	513,428	45,562	9.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4,513	24,513	13,026	△11,487	△46.9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	28,730	28,730	순증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19	19	19	-	-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33	133	142	9	6.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050	9,050	3,950	△5,100	△56.4
가족센터 건립(지역자율계정)	9,050	9,050	3,950	△5,100	△56.4
【 양성평등기금 】	690,274	690,274	706,599	16,325	2.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535,595	552,833	17,238	3.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3,303	2,723	△580	△17.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245	5,245	5,846	601	11.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46,131	145,197	△934	△0.6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5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2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양성평등기금 2개 사업임.

이 중 일반회계 '가족역량강화지원'은 청소년부모 가구 수 감소 등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감소로 6억 6,000만원(△23.9%) 감소하였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분리에 따라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114억 8,700만원(△46.9%) 감소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족센터 건립(지역자율계정)'은 가족센터 건립 개소 수 감소[104]로 51억원(△56.4%) 감소하였음.

양성평등기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감소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2억 7,000만원 감액,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시기 경과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예산 4억원 순감 등 5억 8,000만원(△17.6%) 감소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학습 지원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감액, 3년 주기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순감 등으로 9억 3,400만원(△0.6%) 감소하였음.

104) 13개→7개

【 2025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감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주요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가족역량 강화지원	2,762	2,762	2,102	△660	△23.9	청소년부모 가구 수 감소 등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감소로 660백만원 감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4,513	24,513	13,026	△11,487	△46.9	양육비이행관리원 분리에 따른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11,487백만원 감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족센터 건립(지역자율계정)	9,050	9,050	3,950	△5,100	△56.4	가족센터 건립 개소수 감소(13개→7개) 등에 따라 5,100백만원 감액
양성평등기금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3,303	2,723	△580	△17.6	청소년한부모 가구수 감소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270백만원 감액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시기 경과에 따라 400백만원 순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46,131	145,197	△934	△0.6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수요 감소 등에 따라 621백만원 감액 3년주기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328백만원 순감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5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은 일반회계 3개, 양성평등기금 2개 사업임.

이 중 일반회계 '아이돌봄지원'은 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확대(11만 가구 → 12만 가구), ② 아이돌봄 이용단가 인상(11,630원 → 12,180원), ③ 정부 지원대상 확대, ④ 아이돌보미 증가(35,000명 → 36,000명), ⑤ 바우처 시스템 운영(신규) 등에 따라 455억 6,200만원(9.7%) 증액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은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분리 및 독립기관화('24. 9.27.)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87억 3,000만원이 순증되었음.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21만원 → 23만원),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등에 따라 172억 3,800만원(3.2%)이 증액되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은 시설 기능보강 지원(신축 1개소, 증축 2개소)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6억 100만원(11.5%)이 증액되었음.

【 2025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증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4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주요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아이돌봄 지원	467,866	467,866	513,428	45,562	9.7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수 확대(11만 가구→12만 가구),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시간당 단가 4.7% 인상 등에 따라 돌봄수당 38,816백만원 증액 아이돌보미 수 증가 및 4대보험·퇴직적립금 인상 등으로 아이돌보미 관리 4,019백만원 증액 서비스제공기관 개소수 및 종사자수 증가로 서비스제공 기관운영 1,732백만원 증액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	28,730	28,730	순증	기관분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8,730백만원 순증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33	133	142	9	6.8	국내여비 및 관서업무비 등 9백만원 증액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535,595	552,833	17,238	3.2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및 학용품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급여 17,238백만원 증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5,245	5,245	5,846	601	11.5	시설 기능보강 지원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 등 601백만원 증액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나. 일반회계

1) 가족역량강화지원(2332-321)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매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의 단가 인상에 따라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소송비 및 변호사보수비용 단가 인상과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청구 추세 등 명확한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예산이 과소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수행과정에서 대상자 파악 및 발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타 복지사업의 사례와 같이 서울과 그 외 지자체의 국고보조율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가) 개요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③ 경상경비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6억 6,000만원(△23.9%) 감액된 2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가족역량강화지원	9,698 [8,898]	2,762	2,102	△660	△23.9
· 가족희망드림 지원	7,121 [6,848]	-	-	-	-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492 (492)	492	492	0	0.0
· 조손가족 실태조사	277 [277]	-	-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800 [1,272]	2,250	1,590	△660	△29.3
· 경상경비	9 [9]	20	20	0	0.0

자료: 여성가족부

나) 명확한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 편성 필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과 동일하게 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한부모 가족에게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사업수행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2025년 예산안) 492백만원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국가부담의무)
(지원사건)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 사건

동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105]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음.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주체는 민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2024년도부터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예산비목은 민간경상보조 사업(320-01)에서 민간위탁 사업(320-02)으로 변경되었고[106], 이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연도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10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106)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용 】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2024년의 경우 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였음.

그런데,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885건, 2023년 1,581건, 2024년 9월말 기준 1,023건으로 매년 사업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2024년도 사업비 계약 시의 소송 건수도 1,375건으로 전년도 실적에 못 미치는 수준임.

【 2022년~2024년 월별 무료법률구조서비스 현황 】

(단위: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2	135	108	153	168	164	142	164	163	154	180	187	167	1,885
2023	134	199	183	133	157	126	112	123	90	79	129	116	1,581
2024 9월말	108	99	132	116	123	115	123	102	105	-	-	-	1,023
계	377	406	468	417	444	383	399	388	349	259	316	283	4,489

자료: 여성가족부(2024년 9월말 기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지원사업 예산은 2021년도부터 4억 9,200만원으로 동일하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비용 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9월말 기준 금년도 법률구조사업비의 99.1%가 집행되어 연말까지 추가 무료법률지원 신규 접수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함.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지원사업 단가 현황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 산		290백만원	492백만원	492백만원	492백만원
단가	소송비용	118,709원	115,546원	129,559원	142,827원
	변호사 보수비용	191,073원	177,911원	158,566원	192,633원

자료: 여성가족부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의 단가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2021년 이후 매년 동일한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소송비 및 변호사보수비용 단가 인상과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청구 추세 등 명확한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예산이 과소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330-01)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6억 6,000만원(△29.3%)이 감액된 1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안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 1,060명에게 매월 25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24)2,250 백만원 → ('25)1,590백만원, △660백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의 아동 1,060명×250천원×12개월×50% = 1,590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202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4년에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되었음.

2025년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었으나, 지원인원은 1,500명에서 1,060명으로 440명이 감소한

규모임.

【 2025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개요 】

○ (추진배경)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필요

* 청소년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로 자녀 양육비(30.7%), 생계 및 의료비 지원(29.4%), 주거지원(10.9%)등을 꼽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19)

○ (사업대상) ① 청소년(만 24세 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추진체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보조금 지원(국비-지방비 매칭)

여성가족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재원확보 및 배분, 사업운영지침 제공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실시 등	⇒	· 수요조사 및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아동양육비 집행(신청·접수 - 대상판별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급 - 사후관리) · 사업 정산결과 보고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060명
· (지원예산) 국비 1,59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금액) 자녀 1명당 매월 25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5년도에는 4년차가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소득 이하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청소년 복지지원의 근거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21년 3월 23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청소년부모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복지지원의 경우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 지원 규정 】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

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소득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실시 및 자료요청 규정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생략)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

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 ⑤ (생략)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주거 등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출국·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병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략)

이로 인하여 여성가족부는 금융기관과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부모가 제출한 소득판별 관련 서류만[107]을 확인하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임.[108]

특히 동 사업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2025년도 예산안 규모가 삭감(△6억 6,000만원)되었음. 이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2023년도 실제 지원실적이 35.3%로 낮은 데 기인함.

107)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시 소득금액증명 소득판별 관련 서류(소득이 없는 가구원은 국체청이 발급한 사실증명)를 제출함(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는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108)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근로·사업·자산 소득 등 공적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는 의견임.

【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B)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C)	불용액	실집행률	
본예산	추경(A)							C/A	C/B
3,600	3,600	1,800	1,800	-	1,800	1,272	528	35.3	70.7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수행과정에서 대상자 파악 및 발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의 차등 보조율 반영 검토 필요

2025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게 월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과 지방에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50%로 동일함.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과 관련 2025년도 계획을 살펴보면, 동 사업 외에 한부모가족복지급여(청년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의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로 차등을 두고 있음.

【 2025년 여성가족부 아동양육비 지원 계획 】

(단위: 만원, %)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부모연령	소득기준	아동연령	아동양육비(월)			보조율	보조율 근거
						기본	추가	계		
일반회계	가족역량 강화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63% 이하	만 18세 미만	25	-	25	50	-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청년 한부모: 만 25~34세	63% 이하	만 5세 이하	23	10	33	서울 50, 지방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1]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23	5	28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복지급여(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부 또는 모 만 24세 이하	65% 이하	만 18세 미만	35	-	35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2024년도 시·도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105명), 인천(165명), 경기(355명), 충북(108명), 경북(119명) 등 서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도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24. 8월 기준) 】

(단위: 단위: 명)

시·도	지원 대상	시·도	지원 대상
서울	**105**	**충북**	**108**
부산	77	충남	61
대구	34	전북	100
인천	**165**	전남	64
광주	59	**경북**	**119**
대전	57	경남	101
울산	45	제주	34
경기	**355**	합계	1,544
강원	60		

자료: 여성가족부, 실인원 기준(누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와 같이 전국에 시행되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동일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타 복지사업의 사례와 같이 서울과 그 외 지자체의 국고보조율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2332-331)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심사 건수는 예산 계획 대비 달성률 평균이 2022년 85.3%이고, 2023년은 91.1%로 계획에 미달하였는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된 인증심사 계획의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 수준조사의 대상은 민간부문 기관의 수가 공공부문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7년도부터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어 그 변화 양상이 사회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족친화 수준조사 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표본 건수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가족정책 연구를 통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가족정책을 개발하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가족정책전략 지원사업, ② 경상경비, ③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④ 가족실태조사 예비조사, ⑤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 및 가족친화 수준 조사 등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300만원(0.5%)이 증액된 25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5,875 [5,870]	2,505	2,518	13	0.5
· 맞돌봄 문화 확산	269 [269]	290	-	△290	△100.0
·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101 [101]	145	73	△72	△49.7
· 가정의달 기념 행사 및 홍보 등	98 [94]	-	-	-	-
· 가족정책 홍보	1,845 [1,845]	-	-	-	-
· 경상경비	-	-	75	75	100.0
· 가족 소통·참여 사업	143 [143]	-	-	-	-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2,070 [2,070]	2,070	2,070	0	0.0
· 2023년 가족실태조사	1,349 [1,349]	-	-	-	-
· 가족실태조사 예비조사	-	-	150	150	100.0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 및 가족친화 수준조사	-	-	150	15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나)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 계획 달성률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사업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증제가 최초로 시행(2008. 6.)되었고,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2017. 3.)에 따라 제도가 확대되었음.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인증심사는 한국경영인증원이 수행하고,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수행하는 체계로서, 정부,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인센티브[109]가 지원되고, 신규인증은 3년, 유효기간 연장은 2년, 재인증은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가족친화인증제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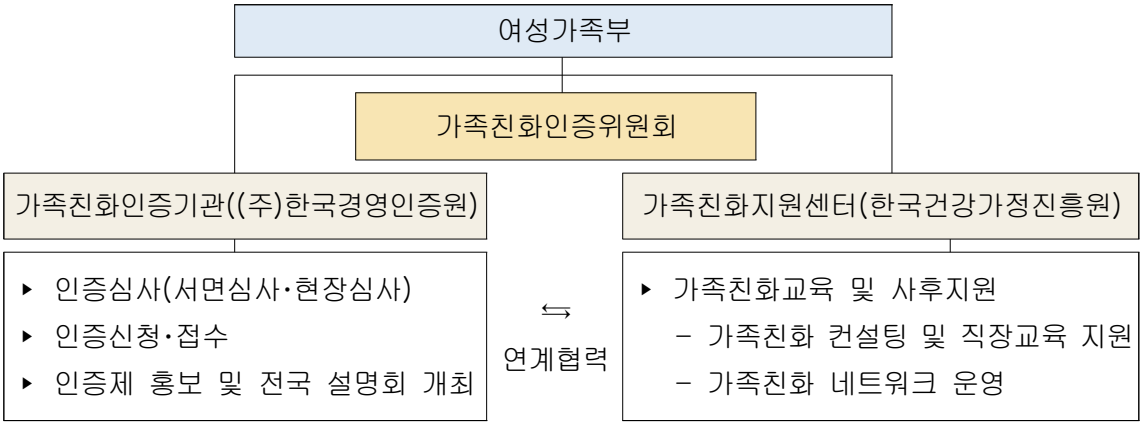

109) ▲(조달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재무 컨설팅 등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인증유효기간 동안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

가족친화기업인증 비용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100만원을 자부담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가 인증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증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 비용 】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신규인증 신청	무료	100만원	신청기관의 인증심사 비용으로 전액 사용
유효기간 연장	무료	50만원	
재인증 신청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15억 5,000만원, 인증사무국 운영비 2억 4,000만원, 인증설명회 및 홍보 1억 5,000만원, 인증심사원 양성 8,000만원, 인증수여식 5,000만원으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비는 신규 1,000개사, 연장 600개사, 재인증 500개사를 인증심사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사업 산출 근거 】

○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 1,550백만원 (신규 1,000개사 × 1백만원)+(연장 600개사 × 0.5백만원) + (재인증 500개사 × 0.5백만원) = 1,550백만원
○ 인증사무국 운영비 : 240백만원
○ 인증설명회 및 홍보 : 150백만원,
○ 인증심사원 양성 : 80백만원
○ 인증수여식 : 50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2022년도와 2023년도를 기준으로 가족친화인증 예산 및 인증 현황을 보면, 2022년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증 건수는 신규 753건, 연장 391건, 재인증 405건으로 나타났고, 2023년도의 경우 중소기업 인증 건수는 신규 757건, 연장 498건, 재인증 391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족친화인증 예산 및 인증 현황 】

(단위: 백만원, 개사)

년도	예산	구분	소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2023	2,070	신규	894	91	**757**	46
		연장	609	52	**498**	59
		재인증	680	92	**391**	197
2022	2,070	신규	897	87	**753**	57
		연장	498	60	**391**	47
		재인증	960	115	**405**	440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2년부터 인증심사 예산(15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 대상 신규 1,000개사, 연장 600개사, 재인증 500개사를 심사할 계획으로 편성된 것이나,

계획 대비 심사율은 2022년의 경우 신규 93%, 연장 70.8%, 재인증 87.4%로 평균 85.3%이고, 2023년은 신규 92.4%, 연장 92%, 재인증 87.4%로 평균 91.1%로 예산편성시 계획한 인증심사 건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예산 반영 및 실적 현황 】

(단위: 백만원, 개사, %)

년도	구분	예산상 심사 계획 건수(A)	심사실적(B)	계획 대비 심사율(B/A)
2023년	신규	1,000	924	92.4
	연장	600	552	92.0
	재인증	500	437	87.4
	계	2,100	1,913	91.1
2022년	신규	1,000	930	93.0
	연장	600	425	70.8
	재인증	500	437	87.4
	계	2,100	1,792	85.3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2022년도말 기준 가족친화기업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총 5,415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3,706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현황 】

(단위: 개사)

년도	계	중소기업 (비율)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비율)	공공기관(비율)	
				기타공공기관	인증의무화된 공공기관
2023	5,911	4,110(-)	668(-)	1,133(-)	780(97.9%)
2022	5,415	3,706(0.96%)	591(7.8%)	1,118(-)	781(97.6%)
2021	4,918	3,317(0.88%)	520(6.4%)	1,081(-)	776(97.5%)
2020	4,340	2,839(0.78%)	456(5.8%)	1,045(-)	769(98.5%)

주: 1. 대기업, 중소기업 수의 통계는 익익년 9월 발표로 2023년 기업수 미발표되어 비율 산정이 곤란함
2. 중소기업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통계자료(소상공인 제외), 2020년 361,790개사, 2021년 378,498개사, 2022년 386,008개사
3. 대기업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기본통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시대상기업집단」수를 합산, 2020년 7,810개사, 2021년 8,092개사, 2022년 8,462개사
4. 기타공공기관: 군부대, 사립대학 등 포함
5. 인증 의무화된 공공기관(가족친화법 시행령 제10조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기재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2020년 781개, 2021년 796개, 2022년 800개, 2023년 797개

한편,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결과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간 가족친화지수가 18.4점 차이를 보이는 등 가족친화인증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를 확대하여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바, 예산에 반영된 인증심사 계획의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 수준조사의 가족친화 인증과 미인증 기업 및 기관 비교 】

(단위: 점)

구분 (인증·미인증 비교)	가족친화지수	가족친화 문화조성	출산·양육·교육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탄력근무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전체	46.9	69.0	58.0	29.4	29.1	29.5
인증기업	59.0	76.3	68.8	42.3	47.3	40.5
미인증기업	40.6	65.2	52.4	22.6	19.6	23.8
차이 (인증-미인증)	18.4	11.1	16.4	19.7	27.7	16.7

주: 인증기업·기관 678개, 미인증기업·기관 1,022개사

다) 가족친화 수준조사의 민간부문 표본건수 확대 필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및 가족친화 수준조사'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5,000만원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110]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사업임.

---

11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동 사업은 당초 3년 주기에 해당하는 2024년도에 수행하여야 하는 법정 조사였으나,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행정조사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111]

- 정부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이 현행법 제6조제2항[112]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사항과 유사[113]하고,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가 226개 시군구 단위의 가족친화 시설환경(인프라) 영역별 제공률(이용률)을 단순 분석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친화지수 측정제도의 측정지표와 현행법 제15조[114]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인증심사기준이 유사하고, 가족친화인증심사를 통해 생산되는 통계를 활용할 경우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가족친화지수 측정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

111) 정부는 2023년 12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2023.12.6.), 임기만료로 폐기됨.

1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13)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는 법률에 평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11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의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로 하고, 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③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 정책 대응에 집중하고,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 노력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115)]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및 가족친화 수준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5년도에 두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동 사업을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가족친화 수준조사의 표본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공공부문(800개)이 민간부문(700개)보다 비중이 높았고, 2018년부터 민간부문(800개) 비중이 공공부문(700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부분의 표본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가족친화 수준조사 표본 현황 】

(단위: 개사)

연도	2015년	2018년	2021년
공공	800	700	800
민간	700	800	900
계	1,500	1,500	1,700

자료: 여성가족부

1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2024.6.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가족친화 수준조사의 대상은 국가 행정기관(41개), 지자체(226개),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2024년 327개), 상장법인(2022년 기준 2,437개) 등이 포함되는데[116], 기본적으로 민간부문 기관의 수는 공공부문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7년도부터 가족친화 인증이 의무화되어 민간부문에 비해 가족친화 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변화 양상이 사회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 등 가족친화 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표본 건수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11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 아이돌봄 지원(2334-341)

○ 돌봄수당 사업은 2025년도 이용대상자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되어 서비스이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인데,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저조, 대기일수 증가,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 연계율 편차 발생, 소득유형별 연계율 편차, 낮은 처우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한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2024년도 대비 2025년에 9% 증가(33,000명 → 36,000명)된 인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의 잦은 이직으로 교육비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아이돌보미의 연속적 활동을 유인하되, 효과적인 교육 방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지원 사업(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중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돌봄수당에서 충당하였는데, 2025년도 예산안도 과소 편성되었는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이므로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어 예산 교부 기준 인원 대비 37명(19%)이 미달 상태이나, 2025년도 예산안은 광역지원센터 총 187명의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광역지원센터 지정 현황, 수행 업무,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돌봄수당,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② 광역지원센터 운영, ③ 중앙지원센터 운영, ④ 바우처 시스템 운영, ⑤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55억 6,200만원(9.7%)이 증액된 5,134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아이돌봄 지원	354,509 (318,938)	467,866	513,428	45,562	9.7
· 서비스지원	348,210 (314,069)	461,821	506,387	44,566	9.7
- 돌봄수당	281,874 (231,883)	384,222	423,038	38,816	10.1
- 아이돌보미 관리	46,969 (57,430)	57,299	61,318	4,019	7.0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367 (24,756)	20,300	22,032	1,732	8.5
· 광역지원센터 운영	4,955 (3,525)	4,697	5,194	497	10.6
· 중앙지원센터 운영	1,196 (1,196)	1,249	1,249	0	0.0
· 바우처시스템 운영	-	-	95	95	100.0
· 경상경비	148 (148)	99	503	404	408.1

자료: 여성가족부

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한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유형에 따라 가형부터 마형까지 있고, 서비스종류에 따라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

봄(만 36개월 이하 영아)이 있으며, 소득유형과 서비스종류에 따라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에 차이가 있고, 가형부터 라형까지는 정부지원금이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에 해당하는 마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음.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

소득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주: 1.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2.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3.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돌봄수당"은 ① 영아종일 돌봄, ② 시간제 돌봄, ③ 취약가정 가형 추가(5%) 지원, ④ 영아돌봄수당 추가 지원 등 4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3,842억 2,200만원) 대비 388억 1,600만원(10.1%)이 증액

된 4,230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돌봄수당 예산안 산출 근거 】

○ **돌봄수당** : 423,038백만원('24) 384,222백만원→('25) 423,038백만원, 38,816백만원 증
(영아종일제) 29,821백만원 ('24) 28,033백만원→('25) 29,281백만원, 1,788백만원 증
- (산출) {(가형2,753가구×85%) + (나형1,119가구×60%) + (다형109가구×30%) + (라형192가구×15%)}× 12,180원×1,200시간(연평균 지원, 200시간×6개월)×65%
(다자녀) 본인부담금 10% 할인 지원: {(가형 1,652가구×2%) + (나형 672가구×4%) + (다형 66가구×7%) + (라형 114가구×9%)}×12,180원×평균 1,200시간(최대 2,400시간)×65%
(시간제) 384,105백만원 ('24) 352,138백만원 →('25) 384,105백만원, 31,967백만원 증
- (산출) 미취학: {(가형47,726가구×85%)+(나형22,100가구×60%)+(다형6,273가구×30%)×(라형6,856가구×15%)}×12,180원(서비스요금)×평균 620시간(최대 960시간)×65%
취학: {(가형21,420가구×75%) + (나형6,000가구×40%) +(다형2,500가구×20%)×(라형2,952가구×15%)}×12,180원(서비스요금)×평균 620시간(최대 960시간)×65%
(다자녀) 본인부담금 10% 할인 지원:
미취학: {(가형28,930가구×2%)+(나형13,289가구×4%)+(다형2,883가구×7%)+(라형 4,112가구×9%)}×12,180원×평균 620시간(최대 960시간)×65%
취학: {(가형11,080가구×3%)+(나형3,675가구×6%)+(다형1,014가구×8%)+ (라형1,771가구×9%)}×12,180원×평균 620시간(최대 960시간)×65%
(취약가정 지원) 4,229백만원 ('24) 3,137백만원 →('25) 4,229백만원, 1,092백만원 증
- 가형취약가정 5% 추가지원: 14,052가구×609원×평균 620시간(최대 960시간)×65%
- 청소년(한)부모(0~1세 자녀양육) 추가지원: 248가구×5,043원×960시간×65%
(영아돌봄수당) 4,882백만원
- 4,173가구×1,500원×1,200시간×65%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돌봄수당 예산이 전년 대비 388억 1,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① 2024년 대비 이용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함에 따라 지원 가구수가 확대(11만 가구 → 12만 가구)[117]되었고, ② 정부지원비율

117)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 확대에 따라 지원 가구수 1만명(라형 가구수) 확대

[영아종일제 및 취학전 시간제 돌봄: 다형(20% → 30%), 라형(0% → 15%), 취학후 시간제 돌봄: 나형(30% → 40%), 다형(15% → 20%), 라형(0% → 10%)] 이 높아졌으며, ③ 0~2세 영아돌봄의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였고, ④ 시간당 아이돌봄서비스 단가(11,630원 → 12,180원)가 인상되었기 때문임.

【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소득유형 구분 변경 사항 】

연도	소득유형 구분(기준 중위소득)				
'19년 ~ '24년	75%이하	75%~120%	120%~150%	150%초과	
	㉮	㉯	㉰	㉱	
	← 정부지원 대상				
'25년	75%이하	75%~120%	120%~150%	150%~200%	200%초과
	㉮	㉯	㉰	㉱	㉲
	← 정부지원 대상				

【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정부 지원율 변경 사항 】

'24년 지원율(요금 11,630원)						'25년 지원율(요금 12,18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75%~120%	60%	**30%**			나	75%~120%	60%	**40%**	
다	120%~150%	**20%**	**15%**			다	120%~150%	**30%**	**20%**	
라	150% 초과	-	-	-		라	150%~200%	**15%**	**10%**	
						마	200% 초과	-	-	-

주: 0~2세 영아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아이돌보미에게 추가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의 경우 이용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0,051천원 이하인 경우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118] 대상자가 1만명 추가 확대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이 저조하고, 대기일수가 길어지고 있음.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는 122,729가구로 전년 대비 36,264가구 증가한 반면, 아이돌보미는 28,071명으로 전년 대비 1,396명만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인력이 부족하여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2022년(90.5%) 대비 20.3%p 감소된 70.2%에 불과하였음.[119]

【 2022·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

(단위: 가구, %, %p, 명)

구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신청 가구	연계 가구	연계 율	아이 돌보미	신청 가구	연계 가구	연계 율	아이 돌보미	신청 가구	연계 가구	연계율	아이 돌보미
계	86,465	78,212	90.5	26,675	122,729	86,100	70.2	28,071	36,264	7,888	△20.3	1,396

자료: 여성가족부

118)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중위소득) >

(단위 : 천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가형	75% 이하	3,769	4,573	5,331	6,049
나형	120% 이하	6,030	7,317	8,530	9,778
다형	150% 이하	7,538	9,147	10,662	12,097
라형	200% 이하	10,051	12,196	14,216	16,130

119) 여성가족부는 2024년 9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85.6%로 종전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입장임.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이었으나, 2021년 19일, 2022년 27.8일, 2023년 33일로 크게 증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1달 정도를 대기하여야 하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 】

(단위: 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3	19.0	27.8	33.0

자료: 여성가족부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이 낮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가 전국의 23.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수는 전국의 20.3%에 불과하고, 경북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가 전국의 10.3%인데 아이돌보미수는 전국의 8.6%로 아이돌보미 신청가구 대비 아이돌보미수가 부족한 지자체가 7곳으로 나타났음.

【 2023년도 시·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아이돌보미 현황 】

(단위: 가구, 명, %)

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아이돌보미 인원		전국대비 아이돌보미비율-신청가구 비율 (D-C)
	신청 가구 (A)	전국 대비 신청가구 비율(B)	연계 가구 (C)	연계율 (C/A)	아이돌보미 인원	전국 대비 아이돌보미 비율(D)	
계	122,729	100.0	86,100	70.2	28,071	100.0	0
서울	18,207	14.8	11,641	63.9	4,037	14.4	△0.4
부산	6,198	5.1	4,838	78.1	2,172	7.7	2.6
대구	4,253	3.5	3,321	78.1	1,375	4.9	1.4
인천	5,005	4.1	3,587	71.7	1,391	5.0	0.9
광주	4,141	3.4	3,121	75.4	1,166	4.2	0.8
대전	3,287	2.7	2,319	70.6	757	2.7	0
울산	4,179	3.4	3,221	77.1	998	3.6	0.2
세종	1,532	1.2	985	64.3	363	1.3	0.1
경기	28,373	23.1	18,240	64.3	5,688	20.3	△2.8
강원	5,439	4.4	3,885	71.4	1,232	4.4	0
충북	3,698	3.0	2,598	70.3	813	2.9	△0.1
충남	4,796	3.9	3,455	72.0	1,168	4.2	0.3
전북	4,540	3.7	3,599	79.3	1,196	4.3	0.6
전남	6,220	5.1	4,525	72.7	1,199	4.3	△0.8
경북	12,697	10.3	9,496	74.8	2,414	8.6	△1.7
경남	8,340	6.8	6,155	73.8	1,765	6.3	△0.5
제주	1,824	1.5	1,114	61.1	337	1.2	△0.3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소득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유형별 연계율은 영아종일제서

비스의 경우에는 “라형 가구”에서 85.3%로 가장 낮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고, 다른 유형은 97% 이상의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제서비스의 경우에는 다형 가구가 93.8%, 라형 가구가 88.7%로 낮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고, 다른 유형은 94% 이상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별 연계율 현황 】

(단위: %)

구분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20	89.8	94.8	90.9	88.9	80.0	96.1	98.0	97.8	97.1	85.4
2021	91.5	95.5	92.4	90.6	81.8	97.3	98.4	97.1	92.6	92.8
2022	90.5	95.0	91.4	87.3	78.5	97.8	98.9	97.9	94.9	90.0
2023	94.6	96.4	94.6	93.8	88.7	96.0	97.4	96.8	99.7	85.3

자료: 여성가족부

넷째, 아이돌보미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음.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시간당 2016년 6,500원에서 2025년 12,180원으로 인상되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인상률(전년대비 4.7%)을 보이고 있으나, 최저임금 대비 비율은 2025년 105.6%로 2016년 107.8%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16년~2025년 서비스요금·아이돌보미활동수당·최저임금 】

(단위: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비스요금	6,500	6,500	7,800	9,650	9,890	10,040	10,550	11,080	11,630	12,180
활동수당(A)	6,500	6,500	7,800	8,400	8,600	8,730	9,170	9,630	10,110	10,590
최저임금(B)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9,860	10,030
A/B	107.8	100.5	103.6	100.6	100.1	100.1	100.1	100.1	102.5	105.6

주: 2018년부터 아이돌보미 주휴수당을 주게 됨에 따라 서비스요금과 활동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자료: 여성가족부

2019년~2023년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입사자 및 퇴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이돌보미 입사자(신규 양성자)는 19,623명인데 퇴사자는 15,426명에 달하고 있어 돌봄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2019년~2023년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입사자 및 퇴사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입사자 (신규 양성자)(A)	5,793	2,403	3,937	3,544	3,946	19,623
퇴사자(B)	4,857	2,917	2,456	2,637	2,559	15,426
A-B	936	△514	1,481	907	1,387	4,197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5년도의 경우 이용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3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0,051천원 이하인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비스이용 대상의 신규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연계율이 낮아지고, 대기일수가 길어질 경우 예산 불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 기준 완화로 돌봄서비스를 기대했던 수요자의 실망도 커진다는 점에서 돌봄수당 예산 확대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제고와 대기기간 감소를 위한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횟수 및 방법 재검토 필요

2025년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예산안은 42억 1,200만원으로, 전년(38억 6,100만원) 대비 3억 5,100만원(9.1%)이 증액되었음. 교육비 단가는 18만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나, 대상 인원을 2024년 33,000명에서 36,000명으로 3,000명 확대하였음.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연 1회 16시간 실시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하며, 2023년 1월부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진행 시 총 1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 중임.

그런데 연도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수료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아이돌보미 수가 보수교육 이수자 수보다 많으나, 2022년과

2023년은 아이돌보미 수가 보수교육 이수자 수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수료인원 현황 】

(단위: 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
양성교육 수료자	3,937	3,544	3,946	4,357
보수교육 수료자(A)	22,880	30,418	30,285	26,168
아이돌보미 수(B)	25,917	26,675	28,071	27,537
B-A	3,037	△3,743	△2,214	1,369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교육을 수료한 후 아이돌보미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아이돌보미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교육비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2025년도 보수교육은 2024년 대비 9% 증가(33,000명→36,000명)된 인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수교육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120]에 따라 아이돌보미 활동에 필요한 아동인권과

120)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보수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이돌보미의 연속적 활동을 유인하되, 효과적인 교육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라)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예산 적정 편성 필요

내내역 사업인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330-01)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3,200만원(8.5%)이 증액된 220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 (2024)203억원 → (2025)22,032백만원(1,732백만원 증) - 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20,721백만원(1,564백만원 증) · **1,060명**×2,506천원×12개월×65%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1,311백만원(168백만원 증) · **243개소**×8,303천원×65%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1,060명의 인건비로 207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43개소의 운영비로 13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총 220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을 과소 편성한 문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가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의 인건비·운영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었음. 2020년에는 129.9%, 2022년에는 124.8%, 2023년에는 127.8%를 예산 대비 초과 집행하였고, 2024년 7월 현재 기준으로는 예산의 73%를 집행하여 2024년의 경우에도 집행액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2024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예산액(A)	18,709	19,094	19,870	19,367	20,300
실집행액(B)	24,311	23,821	23,756	24,756	14,715
실집행률(B/A)	129.9	124.8	119.6	127.8	72.5

자료: 여성가족부

특히, 2025년도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원은 2023년 대비 64명이 증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는 2023년 대비 16개소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 예산(220억 3,200만원)은 2023년 집행액(247억 5,600만원)보다 27억 2,4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음.

【 2023·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023년 예산 산출내역	2023년 결산 내역	2024년 예산 산출내역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367백만원)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4,756백만원)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300백만원)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2,032백만원)
·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996명× 약 196만원× 1.2(기관부담금)× 12개월×65%	·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996명× 약 230만원× 1.2(기관부담금)× 12개월×65% * 종사자경력에 따라 호봉 등 상이	·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1,020명× 약 2백만원× 1.2(기관부담금)× 12개월×65%	·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1,060명× 약 210만원× 1.2(기관부담금)× 12개월×65%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227개소× 월 약 63만원× 12개월×65%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227개소× 월 약 211만원× 12개월×65%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233개소× 월 약 63만원× 12개월×65%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243개소×월 약 69만원× 12개월×65%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결산 결과 여성가족부는 3개(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내역사업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매년 예산 부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족한 예산이 돌봄수당에서 충당되고 있음을 지적받았음. 2023년도의 경우 아이돌보미 양성관리는 104억 6,100만원,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53억 8,900만원이 돌봄수당에서 충당되었음.

【 돌봄수당·아아돌보미 양성관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본예산 (A)	전년 대비		실집행액 (B)	B-A	실집행률(B/A)
			증감액	증감률			
2022	돌봄수당	202,031	21,873	12	195,935	△6,096	95.6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50,053	△1,973	△4	52,115	2,062	102.2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038	495	3	23,756	4,718	119.6
2023	돌봄수당	281,874	78,843	40	231,883	△49,991	82.3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46,969	△3,084	△6	57,430	10,461	122.3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367	329	2	24,756	5,389	127.8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것에 대하여 ① 그동안 서비스 이용가구 확대에 비해 서비스기관 운영비는 증가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② 현장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내역사업 간 칸막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의 부족예산을 동 사업의 돌봄수당에서 충당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수당과 아이돌보미 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각각 그 집행 내용이 다르고, 특히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비(돌봄수당, 아이돌보미 관리)와 달리 인건비와 운영비 등 비교적 경직성 경비라는 점에서 명확성과 투명성이 제

고될 필요가 있으므로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마) 광역지원센터 지정 현황, 수행 업무,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 편성 필요

「아이돌봄 지원법」[121]은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었음.

내역사업인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330-01)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700만원(10.6%)이 증액된 5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121)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 ⑤ (생략)

【 20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 **광역지원센터 운영** : ('24)4,697백만원 → ('25)5,194백만원(497백만원 증) - 인건비(187명×평균 4,030천원×12개월×50%)+운영비(17개소×79백만원×50%)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은 17개소를 기준으로 187명의 인건비를 12개월분 편성하고 있는데,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15개로 2개(서울, 울산) 지역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않고 있음.

【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2024. 7. 기준) 】

(단위: 개소)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수	광역지원센터 미지정수	계
15 (세종, 전북, 경남, 전남, 충북,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북, 충남, 경기, 제주, 부산, 인천)	2(서울, 울산)	17

자료: 여성가족부

둘째, 현재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계약 체결 주체와 아이돌보미의 실제 근무 및 관리 주체가 달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① 아이

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②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이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업무 조정 현황 】

현행 광역지원센터 업무(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이관
②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	
③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동일기능 유지
④ 서비스 모니터링, 홍보, 기타 필요한 업무	

참고로, 광역지원센터가 현행법대로 지정·운영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122]은 2022년 8월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해당 법률 개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광역지원센터 지정

122) 감사원에 아이돌보미 등 319인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2022. 3. 21.)가 접수되었음.

및 아이돌보미 채용 조정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통보)”을 통보하였음.

셋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인력은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어 예산 교부 기준 인원 대비 37명이 미달 상태이나, 2025년도 예산안은 광역지원센터 총 187명의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5년 광역지원센터 인원을 187명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하여 2024년도에는 12개소는 12개월, 5개소는 9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17개소 전체에 12개월 인건비를 반영한 것에 더하여 공통 처우개선 3%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여부 및 인력 현황 】

(단위: 명)

시·도	광역지원센터 지정여부	인력채용(2024년 9월말 기준)		
		교부기준인원(A)	현원(B)	미달(A-B)
서울	×	18	11	7
부산	○	13	11	2
대구	○	11	8	3
인천	○	11	8	3
광주	○	8	7	1
대전	○	8	7	1
울산	×	8	6	2
세종	○	8	7	1
경기	○	18	14	4
강원	○	11	9	2
충북	○	8	9	-
충남	○	11	8	3
전북	○	11	9	2
전남	○	11	11	-
경북	○	13	10	3
경남	○	11	11	-
제주	○	8	4	4
합계	○(15), ×(2)	187	150	37
평균	-	11	8.8	2.2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서울과 울산 지역은 광역지원센터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 광역거점기관[123]이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2024년 9월 현재 기준 광역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의 경우에도 충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지자체의 경

123) 여성가족부는 법적 근거 없이 서비스제공기관 중 한 곳을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광역거점기관은 사업시행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홍보, 사업실적 관리를 담당하였음. 광역거점기관 운영비는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으로 집행되었음.

우 인력 운영이 예산 교부기준에 미달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도 신속하게 센터를 지정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지원센터 지정 현황, 수행 업무,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비는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시행이 고려되지 않고 중복 계상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의 조정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증액 소요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법률지원서비스 예산을 제도 시행에 걸맞게 반영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 인원이 크게 늘어나 양육비 회수대상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차질없이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2022년부터 환수한 금액(약 3억 2,400만원)을 2025년도 세입 예산안으로 미반영하였는바, 세입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직접소송 확대에 따른 변호사 인력 증원과 원활한 충원을 위해 유사기관 소송 변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 양육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양육비 선지급)을 수행하는 출연금 사업으로, ① 인건비, ② 운영비, ③ 사업비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28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양육비이행관리원	0	0	28,730	순증	-
· 인건비	0	0	5,501	순증	-
· 운영비	0	0	2,263	순증	-
· 사업비	0	0	20,966	순증	-

자료: 여성가족부

나)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에 따른 적정 예산 반영 필요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47.7%(OECD 평균 31.9%, 2021년 기준)인 반면,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급 대상과 지급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미성년자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2025. 7. 1. 시행)되었음.

【 시행예정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사유 】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그 자녀에 대하여 18세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중위소득 75%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3개월 연장 가능)간 지급〕은 2025년 7월 1일부터 폐지됨.

그런데, 202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의 사업출연금 내역을 살펴보면,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금) 162억원, 시스템 기능개선

8억 6,800만원 등 총 17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사업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편성되는 등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규모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2024년도 및 2025년도 사업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산출내역
○ 사업출연금(350-02): 3,898백만원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1,601백만원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778명×2.1백만원 -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375백만원 · 양육비 이행 정보시스템 운영 1건× 323백만원 = 323백만원 · 우편비용 4.3백만원×12개월=52백만원 - 법률지원서비스 1,802백만원 ·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4,505건×0.4건= 1,802백만원 -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20백만원 · 면접교섭 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2종× 60백만=12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20,966백만원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1,601백만원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778명×2.1백만원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16,200백만원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20만원 × 18,000명 × 신청률 75% × 6개월 = 16,200백만원 -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1,243백만원 · 양육비 이행 정보시스템 운영 1건× 323백만원 = 323백만원 · 우편비용 4.3백만원×12개월=52백만원 · 시스템 기능개선 1건×868백만원 =868백만원 - 법률지원서비스 1,802백만원 ·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4,505건×0.4건= 1,802백만원 -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20백만원 · 면접교섭 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2종× 60백만=120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첫째,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새로 도입되는 선지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 제도 시행이 고려되지 않고 2024년도와 동일 규모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예산이 반영되었음.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5조[124]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종료됨.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의 대상자를 2024년과 같은 수준인 778명을 기준으로 1년간 산정하여 계상하고 있는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의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음.[125]

둘째, 양육비 선지급 예산은 16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추계하여 산정한 것으로, 법률 개정시 대상자 소득기준

1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125)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홍보 확대로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2025년 상반기에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선지급 도입 후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보장기간 동안 기존의 사업대상자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정되었는바, 양육비 선지급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양육비이행지원금의 대상인원은 18,000명으로, 18세 이하 유자녀 한부모가구 중 이혼·미혼 가구(30만 가구), 양육비 채권확보율(21.3%), 그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률(25.9%), 가구당 자녀수(1.45명),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비율(74.24%)을 근거로 산출되었고, 신청률(75%)은 한부모 증명서 발급자 중 한부모 아동 양육비 수급자 비율이 73.2%임을 감안하고, 제도 시행 전 홍보 강화 등을 고려하여 75%로 산정하였다고 함.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라 대상인원이 9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6개월분의 소요예산은 8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소득기준 상향에 따른 양육비이행지원금 추계 】

구 분	대상인원	소요예산(6개월분)
중위소득 100% 이하(A) (정부 편성 기준)	18,000명	162억원
중위소득 150% 이하(B) (국회 확정 기준)	18,900명	170억원
A-B	△900명	△8억원

주: (산식) 중위소득별 대상인원 × 20만원 × 6개월 × 신청률 75%, 단, 제도 시행 전에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변동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에 한계가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셋째, ‘법률지원서비스’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출연금사업(350-02)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한 1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1조 제2항[126]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바, 적정 규모의 법률지원서비스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기존 사업 담당 주체였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매년 법률지원

1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서비스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법률지원서비스사업에 전년도 결산잉여금을 포함하여 집행함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법률지원서비스사업비로 2021년 21억 3,600만원, 2022년 21억 1,100만원, 2023년 20억 6,700만원 등 매년 20억원 이상을 집행하였음.[127] 또한, 2024년의 경우에도 2024년 8월 기준 예산액(18억 200만원)의 99.5%를 집행하여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법률지원서비스사업 예산액·실집행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8.	2025
당초예산액(A)	1,097	1,616	1,802	1,802	1,802
결산잉여금(B)	1,057	495	265	-	-
예산액(결산잉여금포함) (C=A+B)	2,154	2,111	2,067	1,802	-
실집행액(D)	1,079	1,616	1,802	1,793	-
실집행액(결산잉여금포함)(E)	**2,136**	**2,111**	**2,067**	**1,793**	-
당초예산액-실집행액 (결산잉여금포함)(A-E)	△1,039	△495	△265	9	-
집행률(D/A)	98.4	100	100	99.5	-
집행률(E/A)	194.7	130.6	114.7	99.5	-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매년 '법률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실집행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전년도 결산잉여금을 활용하였으나, 2025년도

12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부출연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결산잉여금을 당해 연도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회계규정」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거나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에는 소송 단가가 낮은 직접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고, 결산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24년 9월 27일부터 독립법인화되었고,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소송 관련 업무의 증가가 예상됨.

또한, 단가가 낮은 직접 소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인력 증원이 선제될 필요가 있는데, 예산안에 반영된 추가 증원 9명은 모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을 위한 행정 지원 인력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확대를 위한 변호사 인력은 동결된 상황임. 현재의 변호사 인력으로는 증가하는 소송 건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연도별 변호사 인건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8.
변호사 인건비 집행액	632	529	483	475	368
정 원	-	-	-	-	-
현 원	17	11	10	10	10
입사 후 이탈(이직)인원	2	6	1	0	1
신규채용 인원	2	0	0	0	1

주: 1. 변호사 인건비 집행액은 변호사 기본연봉 및 제수당이며, 퇴직적립금, 기관부담금이 제외됨.
2. 정원은 별도로 없음.
3. 현원에는 휴직자가 포함됨.(원장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시행이 고려되지 않고, 중복 계상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의 조정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증액 소요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법률지원서비스 예산을 제도 시행에 걸맞게 반영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양육비 지원 회수율 제고 및 결산잉여금으로 편입되었던 환수금 세입 예산 계상 필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3개월 연장 가능)간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이후 지급 한도 내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국세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임.

긴급지원한 양육비의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구상권 청구의 첫해인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누적회수액은 3억 8,300만원이고, 미회수금액은 15억 8,500만원으로 누적회수율은 18.42%에 불과함.

【 연도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비 회수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합 계
청구금액 (A)	95	74	105	122	239	552	772	120	2,079
회수금액 (B)	-	2	1	17	39	92	150	82	383
소멸금액 (c)	2	-	-	6	4	30	37	32	111
미회수금액 (A-B-C)	-	72	104	99	196	430	585	6	1,585
누적회수율 (B/A)	-	1.18	1.09	5.05	9.29	12.72	15.36	18.42	18.42

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금액은 누적된 청구금액 중 당해 연도에 회수가 확인된 금액임.
자료: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달리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및 회수금액이 크게 늘어남. 양육비 회수율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양육비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2024년 8월까지 총 3억 8,300만원임. 이 중 2021년까지 환수한 금액은 결산잉여금으로 산입하여 집행하였고, 2022년부터 환수한 금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체수입(기타수익)에 계상 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연도별 양육비 환수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8.	계
환수 금액	-	2	1	17	39	92	150	82	383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양육비 긴급 지원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국고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부터 환수한 금액(약 3억 2,400만원)에 대하여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세입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양육비이행 직접소송 변호사의 처우 개선 및 인건비 적정 반영 필요

‘인건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5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인건비 예산안 산출 근거 】

○ **인건비** : ('24) 5,063 → ('25) 5,501백만원, 438백만원 증액 - (내용) 정원 81명, 공무직 25명 인건비, 공통처우개선 및 정원 증원(9명) 포함 - (산출) 약 52백만원×106명= 5,501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128]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용 부담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소송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직접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3.8%이었으나, 2023년 21.5%, 2024년 8월말 기준 19.5%

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 ⑤ (생 략)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로 직접소송 비율이 낮아졌음.

【 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직접소송(A)	1,532	1,820	1,323	1,031	1,252	1,519	1,041
위탁소송(B)	4,912	8,968	5,895	4,497	5,124	5,537	4,306
계(C=A+B)	6,444	10,788	7,218	5,528	6,376	7,056	5,347
직접소송비율 (A/C)	23.8	14.4	18.3	18.7	19.6	21.5	19.5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 수는 2020년 14인에서 2024년 8월 기준 7인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0년 94.5건에서 2023년 253.17건으로 늘어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4년 8월말 기준 148.7건으로 2021년(93.73건) 건수를 초과하고 있음.

【 연도별 직접소송 변호사 현황 및 담당 사건 수】

(단위: 건,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직접소송 수행 건수 (종결 기준)(A)	1,323	1,031	1,252	1,519	1,041
직접소송 수행 변호사 수(B)	14	11	6	6	7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 수(A/B)	94.5	93.73	208.67	253.17	148.71

주: 부서장 포함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그런데, 2024년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되었고,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되면, 소송 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호사 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인건비 예산안에는 인력 증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변호사 충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양육비 이행관리 소송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24년도 변호사 처우를 비교해 보면, 초임 변호사 인건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53% 수준인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경우 매월 채권 금액의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등 추가 업무가 많아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처우 비교 현황 】

구분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공통 업무	소장 작성, 기일 참석	소장 작성, 기일 참석
추가 업무		- 매월 채권 금액 변동 점검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채권 매월 누적 발생 - 양육비 이행 수시 점검(양육비 미지급 사태 많음) -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당사자 간 대립구조와 처한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전문적 협상 필요
초임 인건비	65~70백만원	37백만원
비율	100%	53%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소송은 위탁소송 대비 양육비이행률이 약 2.3배 높고,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처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여 위탁소송으로 이관하는 경우 사건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부족으로 한부모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다고 함.[129]

따라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접소송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직접소송 확대에 따른 변호사 인력 증원 및 원활한 충원을 위해 유사기관 소송 변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한 인건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129)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4, p236.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가족센터 건립(2333-334)

○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진척 등 모니터링, 실집행 제고를 위한 지자체 독려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기반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건립비를 정액으로 보조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330-03)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51억원(△56.4%)이 감액된 3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가족센터 건립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가족센터 건립	14,660 (7,740)	9,050	3,950	△5,100	△56.4

자료: 여성가족부

나) 가족센터 건립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족센터 건립[130]’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센터 건립비를 정액(기본형 10억원 이하, 확장형 15억원 이하)으로 사업기간(2년 또는 3년)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9개소[131]가 추진되었음.

130)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기재부가 부여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31) 2024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가족센터는 244개소임(통합가족센터 21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3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

【 가족센터 건립 사업 개요 】

○ (목적) 지역 기반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적 기반 조성

○ (주요기능) 가족형태별,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교육·돌봄 서비스 및 세대·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 제공

○ (공간구성) 상담실,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사무공간, 다목적 소통·교류공간 등

[가족센터 공간별 적정 표준면적]

세부구분	기본형(509㎡)	확장형(759㎡)
가족상담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가족교육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가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소통	-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사무공간	가족센터 (前,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前,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본형에 포함되는 시설은 필수 조성 / (전용+공용) 기본형 814㎡, 확장형 1,214㎡

○ (건립비 지원) 가족센터 건설비 지원(기본형 10억원 이내, 확장형 15억원 이내)

* 지자체별 사업기간('21년까지 2~3년, '22년부터는 3년)에 따라 총예산 연차별 차등배분(2년간 4:6, 3년간 2:3:5) 지원, 리모델링은 80% 지원(기본형 8억원, 확장형 12억원 이내 지원)

- ('19년) 5개소 250억원, ('20년) 60개소 345억원, ('21년) 89개소 439억원, ('22년) 77개소 486억원 지원, ('23년) 24개소 142억원 지원

○ (건립현황)

(단위 : 개소 / '24.6.30.기준)

계	'15	'17	'19	'20	'21	'22	'24
109	2	1	5(8)	60(68)	26(94)	12(106)	3(109)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가족센터 건립사업 예산안은 ① 2024년에 선정된 1개 가족센터의 2차년도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4억 5,000만원, ② 2025년에 신규로 선정될 가족센터 6개소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35억원을 합한 총 39억 5,000만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가족센터 건립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선정개소)	산출 근거		
'24년 1개소 (2차 연도)	450 (1개소)	확장형	3년	1개×1,500백만원×30%=450백만원 (부산 동래)
'25년 6개소 (1차 연도)	3,500 (6개소)	확장형	3년	3개×1,500백만원×20%=900백만원 (경북 구미·울릉, 부산 남구)
		기본형	2년	1개×1,000백만원× 40%=400백만원 (경기 광명)
		확장형 (리모델링)	1년	1개×1,200백만원×100%=1,200백만원(인천) 1개×1,000백만원×100%=1,000백만원 (충남 당진)
계	3,950 (7개소)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기간은 2~3년이므로, 2022년에 선정된 사업은 2024년까지는 건립이 완료되어야 하고, 2023년에 선정된 사업은 2025년까지는 건립이 완료되어야 함.

그런데, 2022년에 선정된 11개의 가족센터 건립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2024년 9월 현재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가족센터가 1개소, 설계 중인 가족센터가 2개소나 되고, 3년 차 사업 중 건립이 완공된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임.

【 2022년 선정된 가족센터 지자체별 예산집행 및 진행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유형	사업기간	연도별 국비 지원액				국비 집행액 (2023년까지)	진행현황 (2024.9.)
					합계	2022	2023	2024		
합계					16,000	3,000	4,930	6,950	2,214	
1	서울	송파구	확장형	3	1,500	200	550	750	139	설계중
2	부산	연제구	기본형	3	1,500	200	300	500	361	공사중
3	부산	영도구	확장형	3	1,500	300	450	750	0	공사중
4	대전	동구	확장형	3	1,500	300	450	750	163	공사중
5	경기	고양시	확장형	3	1,500	200	450	750	0	사전절차
6	경기	용인시	확장형	3	1,500	300	450	750	300	설계중
7	강원	인제군	확장형	3	1,500	300	450	750	188	공사중
8	충북	제천시	확장형	3	1,000	300	450	750	120	공사중
9	충북	보은군	기본형	2	1,500	300	480	0	264	건립완료
10	경북	울진군	확장형	3	1,500	300	450	750	399	공사중
11	경남	고성군	확장형	3	1,500	300	450	450	280	공사중

주: 부산 금정은 사업 포기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2022년 선정된 가족센터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 13.8%, 2023년 44.9%, 2024년 9월말 현재 38%로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

【 가족센터 건립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구분	2022	2023	2024.9월
2022년 선정 가족센터	예산액	3,120	4,930	6,950
	실집행액	429	2,214	2,640
	실집행률	13.8	44.9	38.0

주: 사업포기 지자체(부산 금정 1개소) 제외, '23년의 경우 가족센터 건립 지자체 선정이 없었음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따라 2020년~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20년 27.3%, 2021년 42.6%, 2022년 52.3%, 2023년 53.0%로 매년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당해연도 교부액이 전액 또는 대부분 이월 (당해연도 교부액 대비 이월률 : 2020년 96.3%, 2021년 105.4%, 2022년 84.8%, 2023년 159.3%)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20년~2023년 가족센터 건립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2023년말 기준)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실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D)	불용액	실집행률 (C/B)	이월률 (D/A)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실집행액				
2020	36,545	36,545	37,034	37,034	11,989	49,023	13,370	37,034	10,470	35,653	-	27.3	96.3
2021	45,178	44,878	42,398	42,398	35,653	78,051	33,215	42,098	11,249	44,704	132	42.6	105.4
2022	48,166	48,166	51,857	51,857	44,404	96,261	50,355	51,856	16,110	43,979	1,927	52.3	84.8
2023	14,660	14,660	14,660	14,660	43,979	58,639	31,098	14,660	1,941	23,356	4,185	53.0	159.3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차년도 사업(부산 동래 가족센터) 역시 2024년 9월말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은 전무한 상황이나, 2차년도 예산으로 4억 5,000만원(15억원의 30%)을 반영하였음.

또한, 사업기간이 3년인 3개소에 대하여 1차년도 사업 예산으로 9억원(각 15억원의 20%)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단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사업비 100%를 편성하였음.

여성가족부는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과 달리 설계공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사전 행정절차가 일부 면제되어 사업기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가족센터 리모델링 건립사업의 경우, 일반 신축건립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있으나, 공사금액이 신축단가의 80%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연례적으로 동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진척 등 모니터링, 실집행 제고를 위한 지자체 독려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라. 양성평등기금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대상인원을 전년 대비 약 △5.6% 각각 감하였으나, 2024년 9월말 기준 목표대비 아동양육비 지원인원은 12.0%,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은 17.9% 미달된 상황이라는 점, 2025년도에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 2024년과 동일하다는 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대상인 만 18세 기준 한부모가족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 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파악 및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가구에게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저소득가구와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은 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② 우편요금, ③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72억 3,800만원(3.2%)이 증액된 5,52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45,293 [416,978]	535,595	552,833	17,238	3.2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445,265 [416,950]	535,552	552,790	17,238	3.2
· 우편요금	7 [7]	13	13	-	0.0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2 [22]	30	30	-	0.0

자료: 여성가족부

나)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필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① 아동양육비, ② 추가 아동양육비, ③ 아동교육지원비, ④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330-01)임.

2025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계획안은 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사업의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로 2024년과 동일하나, ②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증액되었고, ③ 학용품비 지원 등 아동교육지원비 지원대상이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4년 대비 172억 3,800만원(3.2%) 증액된 5,52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계획안 산출 근거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2024) 535,552백만원 → **(2025) 552,790백만원(17,238백만원 증)**
- (내용)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생활보조금 등 복지급여 지원 필요
- (산출)

① **아동양육비**: (2024) 514,101백만원 → **(2025) 531,587백만원(17,486백만원 증)**
· 서울 29,773명×23만원×12월×50% + 지방 222,147명×23만원×12월×80%

② **추가아동양육비** : (2024) 20,564백만원 → **(2025) 19,416백만원(△1,148백만원)**
· [미혼모부 및 조손] 서울 267명×5만원×12월×50% + 지방 1,246명×5만원×12월×80%
· [청년한부모[132](5세 이하 자녀)] 서울 1,052명×10만원×12월×50% + 지방 9,948명×10만원×12월×80%
· [청년한부모(6~18세 미만 자녀)] 서울 1,765명×5만원×12월×50% + 지방 16,720명×5만원×12월×80%

③ **아동교육지원비** : (2024) 820백만원 → **(2025) 1,720백만원 (900백만원 증)**
· 서울 1,620명×9.3만원×50% + 지방 21,482명×9.3만원×80%

④ **생활보조금** : (2024) 67백만원 → **(2025) 67백만원 (전년 동)**
· 서울 18가구×5만원×12월×50% + 지방 127가구×5만원×12월×80%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계획안의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는 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인원수를 2024년 대비 각각 5.6% 감소(아동양육비: 266,836명 → 251,920명, 추가 아동양육비: 32,833명 → 30,998명)하여 산정하였음.

그런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98.7%, 98.7%, 97.3%, 93.7%로 양호하였으나 2023년에는 84.1%로 감소하여 예산집행 실적이 다소 부

132) 청년한부모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함.

진하였음.

이는 2023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목표인원)이 259,089명으로 지원인원(212,340명)보다 46,749명(약 18%)이 많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목표인원)이 31,515명으로 지원인원(25,960명)보다 5,555명(약 17.6%)이 많아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목표인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임. 2024년 9월말 기준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은 목표대비 12.0%,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은 17.9% 미달된 상태임.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별·연도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명, 가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계획현액(A)	259,071	297,393	405,174	475,264	514,101
		집행액	259,071	297,393	405,174	426,774	435,207
		실집행액(B)	256,566	287,594	378,541	399,447	338,299
		실집행률(B/A)	99.0	96.7	93.4	84.0	65.8
		목표인원(C)	142,464	204,274	221,475	259,089	266,836
		지원인원(D)	135,817	188,361	203,816	212,340	234,871
		D-C	△6,647	△15,913	△17,659	△46,749	△31,965
	추가 아동양육비	계획현액(A)	1,080	8,287	15,112	19,739	20,564
		집행액	1,080	8,287	15,112	17,725	17,417
		실집행액(B)	886	10,184	15,672	16,626	12,895
		실집행률(B/A)	82.0	122.9	103.7	84.2	62.7
		목표인원(C)	2,400	21,179	24,247	31,515	32,833
		지원인원(D)	1,821	22,247	24,374	25,960	26,951
		D-C	△579	1,068	127	△5,555	△5,882

(단위: 백만원, %, 명, 가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기준
	아동교육지원비	계획현액(A)	1123	787	787	790	820
		집행액	1123	787	787	816	909
		실집행액(B)	467	593	584	816	779
		실집행률(B/A)	41.6	75.3	74.2	103.3	95.0
		목표인원(C)	28,124	12,332	12,332	11,067	11,488
		지원인원(D)	10,831	9,176	9,291	11,414	10,861
		D-C	△17,293	△3,156	△3,041	347	△627
	생활보조금	계획현액(A)	132	132	132	64	67
		집행액	132	132	132	57	57
		실집행액(B)	75	61	55	61	47
		실집행률(B/A)	56.8	46.2	41.7	95.3	70.1
		목표가구(C)	290	290	290	139	145
		지원가구(D)	118	90	112	129	121
		D-C	△172	△200	△178	△10	△24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5년도 계획안 편성 시 2024년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대상인원을 10.0% 감축한 후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133]을 반영하여 대상인원을 일부 늘려 최종적으로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인원을 전년 대비 약 5.6% 각각 감하여 반영하였다는 설명임.

133) < '25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

연도	기준중위소득	가구 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	1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5	100%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인상률)		(6.8%)	(6.6%)	(6.4%)	(6.2%)	(5.9%)

그런데, 최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대상인 만 18세 기준 한부모가족 수가 감소하고 있음.

【 만 18세 기준 한부모가족 현황 】

(단위: 천가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한부모	1,533	1,539	1,529	1,533	1,510	1,494	1,493
18세 이하	425	408	384	373	369	355	350
18세 이상	1,108	1,131	1,145	1,160	1,141	1,139	1,143

주: 막내자녀 기준
자료: 인구총조사, 통계청

종합하면, 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급여는 2024년 9월말 기준 목표대비 아동양육비 지원인원은 12.0%,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은 17.9% 미달된 상황이라는 점과 2025년도에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 2024년과 동일하다는 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대상인 만 18세 기준 한부모가족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 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파악 및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도 생활지원금 지원 방안 검토 필요

‘한부모 복지급여’ 사업 중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145가구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과 동일한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의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복지급여의 지급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복지급여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 5. (생략)
② ~ ⑤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는 생활보조금(생계비)의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으로 규정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생계급여 대상자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에게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4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와 중복지급 제한)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생계급여와 중복지급 제한)	가구당 월 5만원

자료: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의 내용을 발췌함(p16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입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시설 입소를 연계한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가능하며, 2024도 기준 전국에 출산지원시설(26개소), 양육지원시설(38개소), 생활지원시설(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등이 운영 중에 있음.

【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현황 】

(단위: 개소, 세대)

시설유형 (시설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 기간)	입소 정원
출산지원시설 (26)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6월 (6월)	536명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1년)	15명
양육지원시설 (38)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3년(1년)	314세대
생활지원시설 (48)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5년(2년)	1,043세대
일시지원복지시설(9)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6월(1년)	228명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9)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235.

한편, 2021년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3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416.9만원)의 58.8%에 불과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가구에게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저소득가구와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계획안에 반영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1,672명)와 자립촉진수당 등의 대상가구(157가구) 추계는 2024년 8월말 기준 아동양육비(1,444명), 자립촉진수당(67가구) 및 2023년도 결산 기준 아동양육비(1,639명), 자립촉진수당(71가구)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는바, 복지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서울시의 경우 ① 기준 중위소득 65~90%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는 동 사업 아동양육비 지원액뿐만 아니라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는 사업대상이 한부모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편성되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적정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②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5억 8,000만원(△17.6%)이 감액된 2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5,002 [4,071]	3,303	2,723	△580	△17.6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3,786 [2,895]	2,852	2,582	△270	△9.5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1,121 [1,081]	-	-	-	-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95 (95)	451	141	△310	△68.7

자료: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적극적 홍보 필요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월 37만원(0~1세 영유아 3만원 추가)과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330-01)임.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 2억 7,000만원(△9.5%)이 감액된 2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2024) 2,852백만원 → (2025) 2,582백만원(△270백만원) - (내용)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필요 - (산출) ① 아동양육비 : 2,442백만원(전년 대비 270백만원 감) ·(중위 63~65%)(서울 1명×37만원×12월×50%)+(지방 6명×37만원×12월×80%) ·(중위 63% 이하)(서울 183명×15만원×12월×50%)+(지방 1,482명x15만원×12월×80%) · <0~1세 추가> (중위 65% 이하)(서울 53명×3만원×12월×50%) + (지방 381명×3만원×12월×80%) ② 자립촉진수당 등 : 140백만원(전년 동) ·(서울) 29가구×10만원×12월×50%+(지방) 128가구×10만원×12월×80%=140백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최근 4년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2023년 실집행률은 67.0%(2021년) → 68.2%(2022년) → 76.5%(2023년)로 예산집행실적이 매년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조함. 2023년도의 경우 예산액이 전년 대비 11억 2,700만원 감액 편성 〔49억 1,300만원(2022년)→37억 8,600만원(2023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 9,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1년~2024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계획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당초	수정(A)							
2021년	5,006	5,006	5,006	5,006	5,006	3,354	-	1,652	67.0
2022년	4,913	4,913	4,765	4,765	4,765	3,351	-	1,414	68.2
2023년	3,786	3,786	3,786	3,786	3,786	2,895	-	891	76.5
2024년 8월말	2,852	2,852	2,409	2,409	2,409	1,632	-	-	57.2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주요 원인은 아동양육비 목표인원과 자립촉진수당 목표가구가 매년 과다하게 산정되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임.

2021년~2023년 아동양육비의 경우 과다산정된 목표인원이 1,091명(34.1%) → 1,086명(37.8%) → 983명(37.5%)으로 매년 목표인원의 35% 정도가 과다 편성되었고,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과다산정된 목표가구가 198가구(55.5%) → 297가구(83.2%) → 86가구(54.8%)로 매년 목표가구의 절반 이상이 과다 편성되었음.

2024년도 아동양육비의 경우 실제 지원인원을 반영하여 목표인원을 전년 대비 822명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19.8% 과다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립촉진 수당 등은 2024년 8월말 기준 57.3%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2025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지원내역 】

(단위: 명, 가구, %)

사업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말 기준	2025년 (안)
청소년 한부모 복지 급여	아동 양육비	목표인원(A)	3,199	2,871	2,622	1,800	1,672
		지원인원(B)	2,108	1,785	1,639	1,444	-
		과다 편성인원(A-B)	1,091	1,086	983	356	-
		과다 편성율(A-B/A)	34.1	37.8	37.5	19.8	-
	자립 촉진 수당 등	목표가구(C)	357	357	157	157	157
		지원가구(D)	159	60	71	67	-
		과다 편성가구(C-D)	198	297	86	90	-
		과다 편성율(C-D/C)	55.5	83.2	54.8	57.3	-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계획안은 기존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를 2024년 대비 128명(7.1%) 감소 편성하고, 자립촉진수당 등은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최근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현황 】

(단위: 세대,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대	3,633	3,783	3,441	3,213	2,408	2,017	1,626
새대원	7,296	8,893	6,956	6,513	4,841	4,082	3,340

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그러나, 계획안에 반영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1,672명)와 자립촉진수당 등의 대상가구(157가구) 추계는 2024년도 8월말 아동양육비(1,444명), 자립촉진수당(67가구) 및 2023년도 결산 기준 아동양육비(1,639명), 자립촉진수당(71가구)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는바, 복지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상향 검토 필요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대비 2025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결산결과 실제 지원인원은 2021년 2,108명에서 2023년 1,639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25년 예산안은 1,672명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2021년~2025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가구, %)

사업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청소년한부모복지급여	아동양육비	지원액	3,149	3,214	2,810	2,712	2,442
		지원인원	2,108	1,785	1,639	1,800	1,672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단가	월 35만원	월 35만원	월 35만원	월 35만원 월 40만원 (0~1세)	월 37만원 월 40만원 (0~1세)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액	205	137	113	140	140
		지원가구	159	60	71	157	157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단가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1,606,000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4,169,000원)[134]의 38.5%에 불과하고 한부모가족 월 평균소득(2,453,000원)의 65.5%에 불과하므로, 청소년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이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20만원 추가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에

134) 가구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임.

만 ① 기준 중위소득 65~90%의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동 사업 아동양육비 지원액(월 35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

(단위: 만원)

기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지원대상	월 지원액	지원대상	월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35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55(35+20)
기준 중위소득 65~90%	-	기준 중위소득 65~90%	20

참고로 2021년도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23.4%), 서울특별시(10.0%), 인천광역시(7.7%) 등으로 나타났음.

【 2021년도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역별 현황 】

(단위: 가구, %)

시·도	가구수	비중	시·도	가구수	비중
서울특별시	303	10.0	강원도	117	3.9
부산광역시	155	5.1	충청북도	155	5.1
대구광역시	122	4.0	충청남도	174	5.8
인천광역시	233	7.7	전라북도	157	5.2
광주광역시	117	3.9	전라남도	138	4.6
대전광역시	142	4.7	경상북도	151	5
울산광역시	80	2.6	경상남도	194	6.4
세종특별자치시	15	0.5	제주특별자치도	63	2.1
경기도	708	23.4	계	3,024	100

자료: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그런데, 2025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사업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동일한 수준이고, 지원금액을 2024년보다 2만원 추가 인상하는 대신 0~1세 영아 추가금은 전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2만원 감액 편성하여 영아 아동양육비는 사실상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청소년한부모의 유아 유기, 입양 등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원가족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를 다른 사업으로 이관 검토 필요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는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침 제작, 회의 및 사업추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음.

【 2025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 141백만원 - (내용) 사업홍보 비용 51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90백만원 - (산출) 일반수용비: 인쇄비, 사례비 등 47백만원 사업추진비: 자문회의비 4백만원 일반연구비: 90백만원

그런데 동 사업은 청소년한부모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전체를 위한 홍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에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의 예산규모, 실집행내역 등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는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양성평등기금 2331-43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양성평등기금 2331-433)에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 코드	세부사업명	예산(계획) 현액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 현황	사업대상
양성평등 기금	2331 -43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445,293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금융조회 우편요금, 신고포상금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한부모 가족
	2331 -43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23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청소년 한부모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는 사업대상이 한부모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편성되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적정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가족센터 운영은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가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센터 통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서비스 지역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가족센터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은 사업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데이터 오류, 중복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민원인의 불편함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전담인력 인건비가 사업비의 26%를 차지하는 등 사업의 직접적 효과성도 떨어지는바,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4년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는 2024년과 동일한 435개소를 기준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 반영되었는바, 2025년도에 신규로 개소될 공동육아나눔터(20개소)의 운영비를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가족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9억 3,400만원(△0.6%)이 감액

된 1,45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07,480 [97,352]	146,131	145,197	△934	△0.6
· 가족센터 운영	52,389 [49,496]	91,523	92,928	1,405	1.5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0,327 [10,102]	11,813	12,132	319	2.7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7,619 [30,886]	33,873	33,252	△621	△1.8
·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127 [116]	247	400	153	61.9
·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5,532 [5,289]	5,644	5,782	138	2.4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856 [833]	703	703	0	0.0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630 [630]	2,328	0	△2,328	△100

자료: 여성가족부

나) 가족센터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센터 통합 추진 적극 필요

‘가족센터 운영’은 ① 가족센터운영(통합),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④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운영, 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⑥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⑦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330-01)임.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14억 500만원(1.5%)이 증액된 929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동 사업의 가족센터 운영 계획안 산출 근거 】

□ 가족센터 운영
: ('24) 91,523백만원 → ('25) 92,928백만원, 1,405백만원 증액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2,928백만원

가. **가족센터운영(통합)** : 36,469백만원
· **218개소**×350.7백만원×30~70%('25년 신규 6개소 반영)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919백만원
· **7개소**×264.9백만원×50%('25년 2개소 통합센터 전환 반영)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282백만원
· **14개소**×183백만원×50%('25년도 4개소 통합센터 전환 반영)

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2,628백만원
· 120개소×45.14백만원×30～70%

마.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26,251백만원(△612)
·(진로설계지원) 3,405백만원(+22)
· 135개소(147식)x48백만원×30～70%
·(기초학습지원) 7,220백만원(+563)
· 183개소(276식)x54.5백만원×30～50%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5,626백만원(△1,197)
* **(교육활동비) 11,563백만원**
(초등) 연 400천원×33.4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3.3천명×30～70%
(고등) 연 600천원×6.7천명×30～70%
* **(전담인력) 4,063백만원**
230개소×36.87백만원×30～70%

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2,176백만원(△824)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2,176백만원
* 70과정×60백만원×30~70%

사.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 23,203백만원(+737)
· 227개소×212.8백만원×30~70%
* '25년 신규 7개소 반영

자료: 여성가족부

현행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135]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내 정착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136]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음.

---

13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4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및 건가-다가 통합센터 시범운영 사업 안내」(2014. 3. 1.)를 통해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 가족사업 안내」 개정(2021.10.13.)을 통해 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음.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센터 13개소, 다문화가족센터 19개소는 통합되지 않고 각각 운영되고 있음.

【 가족센터 지역별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가센터	13	-	3	-	1	-	-	-	-	5	-	-	2	1	-	-	1	-
다가센터	19	-	4	-	1	-	2	-	-	5	-	1	2	1	-	3	-	-
가족센터	212	26	10	9	9	5	3	5	1	26	18	11	13	13	22	20	19	2
계(244)	244	26	17	9	11	5	5	5	1	36	18	12	17	15	22	24	20	2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두 센터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가족센터의 실질적인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2024년 10월 현재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의 통합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78개소에 불과한 상황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족센터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가족센터 현장에서 행정적 문제, 종사자 처우 문제, 타 기관과의 협력 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함.

더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별도 운영에 따른 예산은 예산안 편성 근거 기준으로 개소당 건강가정지원센터 2억 6,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억 8,300만원인 반면, 통합된 가족센터의 예산은 개소당 3억 5,100만원이라는 점에서 센터의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가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센터 통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서비스 지역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가족센터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이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2024. 8. 30.)되어 있음.

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방식의 비효율 개선 필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156억 2,600만원임.

【 2025년도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계획안 산출 근거 】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15,626백만원 - (내용) 교육활동비 11,563백만원 - (산출) (초등) 연 400천원×33.4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3.3천명×30~70% (고등) 연 600천원×6.7천명×30~70% - (내용) **전담인력 4,063백만원** - (산출) **230개소×36.87백만원×30~70%**

동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1인당 1년 동안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 교육급여[137]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사업의 수행 방식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

137) 2025년도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8만 7천원, 중학생 67만 9천원, 고등학생 76만 8천원임.

용,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신청 접수, 조사 결정을 전담하는 인력(230명)이 직접 사업을 수행함. 전담인력 1인당 인건비는 연 3,687만원을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율을 적용하여 40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교육활동비 지원절차를 보면, 가족센터가 교육활동비 신청·접수를 받아 시·군·구 사업팀으로 이송하면, 시·군·구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가구·소득 등을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는 교육부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교육활동비의 신청·접수부터 조사·결정까지 모든 업무처리를 엑셀·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음.

【 교육활동비 지원절차 】

신청 및 상담 (5~9월)	→	수급자 결정 (6~9월)	→	카드포인트 지급 (7월, 9월, 10월)	→	교육활동비 사용 (7~11월)	→	지출·정산 (12월)
가족센터		시·군·구, 교육부		NH농협카드		수급자		가족센터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이러한 사업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지연, 데이터 오류, 중복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민원인도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서류 등을 발급받아 가족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

움과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예산 구조는 전체 사업비(156억 2,600만원) 대비 교육활동비 지원액(115억 6,300만원)은 74%이고, 전담인력 인건비(40억 6,300만원)는 26%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사업의 직접적 효과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4년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활동비 신청·접수부터 조사·결정, 지급·정산 등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행복e음 연계시스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138]

라) 2025년도 신규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비 반영 필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139]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서울 46개소(보조율 30%), 지방 389개소(보조율 50~

138) 여성가족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5년 ISP(정보화전략계획) 예산 3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39)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70%) 등 총 435개소의 운영비 12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계획안 산출 근거 】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2,132백만원 - (내용)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지역 돌봄 문화 확산 - (산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 12,132백만원 (서울) 46개소×58.244백만원×30% (지방) 389개소×58.244백만원×50~70%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웃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고, 2024년도 현재 435개소가 전국에 운영되고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및 실적 】

(단위: 백만원, 개소, 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산 액	8,548	9,892	10,437	11,813
개소 수	332	376	395	435
돌봄품앗이 가구	7,936	9,328	9,608	-
이용자 만족도	87.3	87.7	90.1	-

주: 돌봄품앗이 가구는 매년 12월 기준 실인원 가구수
자료: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을 발굴하고, 기업이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정부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확충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4년 6월 신한금융그룹과의 공동육아나눔터 신규조성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90억원 규모의 민간재원을 유치하였고, 2025년도에 90억원 중 30억원을 활용하여 20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임.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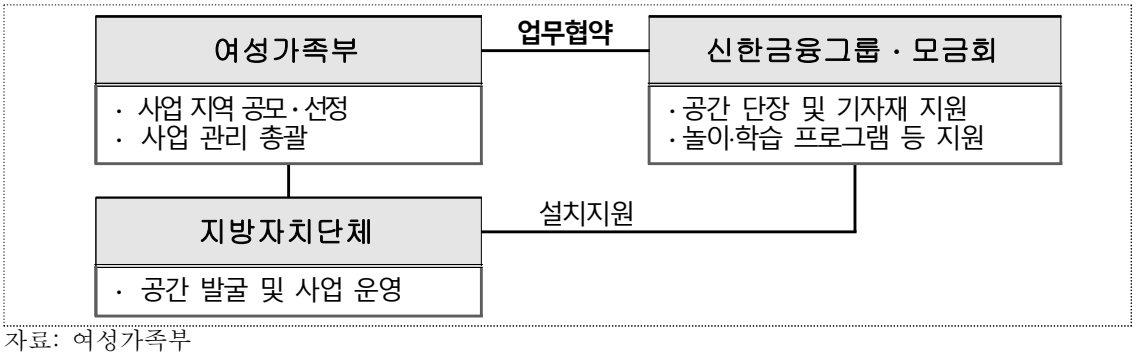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5년도 계획안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는 2024년과 동일한 435개소를 기준으로 반영되었는바, 2025년도에 신규로 개소될 공동육아나눔터(20개소)의 운영비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40]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총 80개소가 지원하여 이 중 부처협업 생활SOC 시설이 있는 20개소를 선정하였고, MOU 및 협업이 중단될 경우 민간재원 활용이 불가하여 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140) 2024년 11,813백만원(435개소×56.712백만원×30～70%)→ '25년 12,715백만원(455개소×58.244백만원×30～70%) 20개소 추가 반영, 582백만원 증액 필요

5. 기획조정실 · 대변인실 · 운영지원과

가. 총괄

1) 개요

2025년도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이하 '기획조정실 등'이라 함)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주요사업의 총액은 247억 5,900만원으로 전년(260억 2,600만원) 대비 12억 6,700만원(△4.9%)이 감소하였음.

2025년도 기획조정실 등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정책연구개발사업,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국제개발협력(ODA),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기획조정실 등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6,026	26,026	24,759	△1,267	△4.9
정책연구개발사업	132	132	125	△7	△5.3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575	575	900	325	56.5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8,992	8,992	9,345	353	3.9
국제개발협력(ODA)	808	808	678	△130	△16.1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930	1,930	1,833	△97	△5.0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13,118	13,118	11,334	△1,784	△13.6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471	471	544	73	15.5

자료: 여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5년 기획조정실 등 소관 예산 중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4개 사업임.

이 중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정책연구용역 평균 단가를 조정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1억 3,200만원) 대비 700만원(△5.3%)이 감액되어 1억 2,500만원이 편성됨.

'국제개발협력(ODA)'은 인도네시아 사업 종료 및 신규 수원국(르완다) 예산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8억 8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16.1%)이 감액되어 6억 7,800만원이 편성됨.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은 주요정책 기획홍보 및 캠페인 콘텐츠 제작 단가 조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19억 3,000만원) 대비 9,700만원(△5.0%)이 감액되어 18억 3,300만원이 편성됨.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은 내역사업 중 사이버안전

센터 구축사업 종료 및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인프라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131억 1,800만원) 대비 17억 8,400만원(△13.6%)이 감액되어 113억 3,4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기획조정실 등 주요 감액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정책연구개발사업	132	132	125	△7	△5.3	정책연구과제 평균단가 조정
국제개발협력(ODA)	808	808	678	△130	△16.1	인도네시아 사업 종료 및 신규 수원국(르완다) 예산 수요 반영
여성·가족정책의식 확산	1,930	1,930	1,833	△97	△5.0	주요정책 기획홍보 및 캠페인 콘텐츠 제작 단가 조정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13,118	13,118	11,334	△1,784	△13.6	2024년 종료사업 반영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아이돌봄플랫폼 구축 3단계)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과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은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에 따라 여성경제회의 개최 예산이 반영되어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5억 7,500만원) 대비 3억 2,500만원(56.5%)이 증액되어 9억원이

편성됨.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사업은 기존 공여 수준인 유엔여성기구 약 470만불, 유엔성평등센터 약 250만불 유지와 환율 상승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89억 9,200만원) 대비 3억 5,300만원(3.9%)이 증액되어 93억 4,500만원이 편성됨.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은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인건비·여비 증액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4억 7,100만원) 대비 7,300만원(15.5%)이 증액되어 5억 4,4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기획조정실 등 주요 증액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575	575	900	325	56.5	'25년 APEC 의장국 수임에 따라, 여성경제회의 개최 예산 반영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8,992	8,992	9,345	353	3.9	환율 상승에 따른 증액 소요 반영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471	471	544	73	15.5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인건비·여비 증액

자료: 여성가족부

나. 일반회계

1)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1138-511)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업 중 MS Office(GA) 및 한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PC 도입 등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라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족부 운영 전반에 관한 경상경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당 사업 목적의 내역사업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7억 8,400만원(△13.6%)이 감액된 11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	15,778 (15,459)	13,118	11,334	△1,784	△13.6
·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649	660	631	△29	△4.4
·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4,285	3,217	2,695	△522	△16.2
· 청소년활동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25	436	605	169	38.8
· e새일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628	553	525	△28	△5.1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93	594	547	△47	△7.9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648	578	477	△101	△17.5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428	341	341	-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7,939 (7,620)	3,484	3,484	-	-
· 공공데이터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83	284	255	△29	△10.2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	2,971	1,774	△1,197	△40.3

자료: 여성가족부

나) 주요사업비 예산 중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 편성 관련 검토 필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실태점검, 소프트웨어 도입 등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및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한 3억 4,100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솔루션 구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실태점검, MS Office(GA) 및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 PC 도입 등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예산안 산출내역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예산안 : 341백만원

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솔루션 구입(101백만원)

- 상용SW 라이센스 구입(자산취득비) : 101백만원

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실태점검(10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실태점검(정책운영, 관리용역비) : 100백만원

다. 상용SW 구입(90백만원)

- MS Office(GA) 및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기타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 90백만원

(단위 : 개, 원)

구분	제품명	조달식별번호	수량	조달단가	금액
운영체제/오피스	Microsoft, US/GA Subscription 2021, 1PC, 임대	24489064	260	261,800	68,068,000
문서작성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2022, ALA	24423532	260	87,560	22,765,600
계					90,833,600

라. 노후전산기기 교체(50백만원)

- 노후전산기기 교체(PC도입, 자산취득비) : 50백만원

(단위 : 식, 원)

제품명	조달식별번호	수량	조달단가	금액
데스크톱	24459992	51	807,300	41,172,300
Microsoft, Windows 10 Pro	23709989	51	180,000	9,180,000
계				50,352,300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세출 예산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서 기관 전체 및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

하는 기본행정경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집행함.

【 예산안 편성지침의 기본경비 예시 】

구 분	내 용
① 기본행정경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ㅇ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 인건비, 일용임금
	ㅇ 사무용품 구입·복사·인쇄 책자발간, 간행물 구입 등
	ㅇ 전화사용료, 유선방송 수신경비 등 공공요금
	ㅇ 특근근무자 매식비
	ㅇ 일·숙직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ㅇ 행사차량, 해외주재공무원 주택임차료 등
	ㅇ 사무실 유지·보수공사비, 전기·통신시설 보수비 등
	ㅇ 기관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재료비 등(예 : 검사용 시약)
	ㅇ 업무출장, 직무교육 여비 등
	ㅇ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해외파견 공무원 여비, 국제회의 참석여비 등
	ㅇ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동호회 지원 등
	ㅇ 맞춤형 복지 경비
	ㅇ 기본 연구용역비
	ㅇ 업무유공 격려 및 신고자 포상, 피해보상금, 이달의 공무원 표창 등
	ㅇ 업무용차량 구입(교체) 및 임차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ㅇ 자동차세, 보험료 등
	ㅇ 사무용자산 구입(자산취득비)
	□ 기준성 경비
	ㅇ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ㅇ 공무원 대상 급식비 등
	□ 교육훈련 경비
	ㅇ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ㅇ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특근매식비, 재료비 등
	ㅇ 교육훈련여비
	ㅇ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ㅇ 자산취득비 등
② 소규모 전산 운영 경비	□ 업무전산화 관련 기관운영 기본경비
	ㅇ 전산용 소모품 구입비
	ㅇ 주전산기 및 서버 임차료
	ㅇ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구 분	내 용
	ㅇ PC 등 소규모 전산장비 구입비
	ㅇ 전산운영요원 특근매식비
	ㅇ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 등
	ㅇ 전산 전문교육 여비 및 지도점검 여비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ㅇ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업 중 MS Office(GA) 및 한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PC 도입 등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라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족부 운영 전반에 관한 경상경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당 사업 목적의 내역사업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출예산은 편성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편성의 목적은 사업에 따라 구분하는 큰 틀 아래에서, 기본경비는 일상적·반복적 소규모 경상경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고, 정보화추진 등 특정 목적을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이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 노후 전산기기 및 SW 라이센스 구입비는 예산 목적 등을 재검토하여 세출예산 유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전산경비(7111-261)

○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유지보수는 연간 계약 체결을 통해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비목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관리용역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전산경비'는 전산실 장비의 안정적 운영,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인용 PC·SW 구입 및 교체, 부내업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700만원(3.9%)이 증액되어 4억 4,3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여성가족부 전산경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전산경비	439	426	443	17	3.9
·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306	320	320	-	-
· 전산기기 및 SW구입비	110	80	77	△3	△3.8
· 정보화추진 관련 부대경비	23	26	46	20	76.9

자료: 여성가족부

나)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의 적정비목 편성 필요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유지보수’는 전산실 장비 및 행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계약 체결을 통해 행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내역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하게 3억 2,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유지보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2억 8,200만원과 관리용역비(210-15)에 3,8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여성가족부 전산경비 예산안 산출내역 】

전산경비 예산안 : 32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82,000천원

가.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유지보수(282,000천원)

- PC, 프린터, 노트북 : 740,000,000원×8%=59,200천원
- 전산실, 랜시설 : 140,900,000원×8%=11,272천원
- 네트워크 장비 : 197,350,000원×8%=15,788천원
- 부내서버, 보안장비 : 241,567,520원×8%=19,325천원
-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 : 175,500,000원×8%=14,040천원
- 정보보호시스템 : 315,999,300원×8%=25,280천원
- 상주인건비(통신기능사) : 38,000,000×1명=38,000천원
- 상용SW 유지보수 : 90,000천원
- 정보통신기반시설 유지관리 : 115,875,000원×8%=9,270천원

나. 예산조정(-175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38,000천원

가.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유지보수(38,000천원)

- 중급기술자 : 38,000,000×1명=38,000천원

자료: 여성가족부

최근 4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고 연간 계약체결을 통해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유지보수 계약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집행액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내용
2021년	273	274 (274)	2021. 1. 1. ~ 2021. 12. 31.	(주)아사달	2021년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2022년	295	260 (260)	2022. 1. 1. ~ 2022. 12. 31.	(주)리앙커뮤니케이션즈	2022년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2023년	306	301 (301)	2023. 1. 1. ~ 2023. 12. 31.	(주)에스엠티정보기술	2023년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2024. 9.	320	211 (317)	2024. 1. 1. ~ 2024. 12. 31.	(주)에스엠티정보기술	2024년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41]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관리용역비(210-15)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유지보수는 연간 계약체결을 통해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비목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관리용역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14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31p.

[참고자료 1]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2024년 근속연수별 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 천원)

새일센터 근속연수	월 급여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미포함, 근로자 부담금 포함)
1년 미만	2,077
1년 이상 2년 미만	2,092
2년 이상 3년 미만	2,116
3년 이상 4년 미만	2,140
4년 이상 5년 미만	2,174
5년 이상 6년 미만	2,204
6년 이상 7년 미만	2,246
7년 이상 8년 미만	2,290
8년 이상 9년 미만	2,332
9년 이상 10년 미만	2,377
10년 이상 11년 미만	2,428
11년 이상 12년 미만	2,446
12년 이상 13년 미만	2,456
13년 이상 14년 미만	2,467
14년 이상 15년 미만	2,477
15년 이상	2,487

자료: 「2024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참고자료 2]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5호)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호봉	2,010,580	2,076,510	2,240,510	2,430,280
2호봉	2,030,620	2,171,580	2,367,010	2,553,930
3호봉	2,073,910	2,223,840	2,423,990	2,625,440
4호봉	2,133,390	2,298,970	2,505,860	2,696,310
5호봉	2,186,940	2,359,610	2,571,960	2,764,740
6호봉	2,218,900	2,417,410	2,634,980	2,829,710
7호봉	2,265,250	2,475,450	2,698,220	2,894,800
8호봉	2,306,820	2,532,370	2,760,280	2,958,470
9호봉	2,353,550	2,588,070	2,820,990	3,023,570
10호봉	2,405,390	2,627,490	2,863,950	3,087,050
11호봉	2,454,610	2,669,630	2,909,890	3,148,740
12호봉	2,510,360	2,734,950	2,981,090	3,214,860
13호봉	2,566,650	2,796,260	3,047,920	3,279,090
14호봉	2,621,770	2,854,040	3,110,880	3,343,540
15호봉	2,683,080	2,911,640	3,173,700	3,407,720
16호봉	2,717,960	2,966,370	3,227,610	3,469,040
17호봉	2,756,350	3,002,960	3,273,220	3,531,490
18호봉	2,816,680	3,046,560	3,344,840	3,595,040
19호봉	2,871,570	3,103,240	3,389,100	3,661,530
20호봉	2,903,490	3,171,750	3,470,250	3,720,110
21호봉	2,965,660	3,241,500	3,536,630	3,779,620
22호봉	3,023,460	3,308,670	3,575,660	3,840,110
23호봉	3,065,380	3,348,800	3,616,530	3,900,220
24호봉	3,097,570	3,384,800	3,683,630	3,958,710
25호봉	3,157,900	3,446,150	3,753,130	4,013,990
26호봉	3,213,770	3,501,280	3,820,580	4,070,200
27호봉	3,265,190	3,557,300	3,882,360	4,127,170
28호봉	3,316,380	3,613,080	3,940,330	4,184,950
29호봉	3,367,180	3,668,420	3,999,640	4,244,890
30호봉 (최고호봉)	3,417,670	3,723,440	4,061,680	4,304,280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 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 (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및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 3] 여성가족부 2025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2024년 예산(A)	2025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일반회계	1)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275	275	-	-	
	※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250	-	△250	순감	'24년 사업종료
	- 성평등 공공외교 활성화 (APEC)	-	575	575	순증	'24년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250백만원) 사업종료 후 신규 APEC 추가
	2)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ODA)	8,992	9,345	353	3.9	
	3) 국제개발협력(ODA)	808	678	△130	△16.1	
	4)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930	1,833	△97	△5.0	
	5)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48	318	△30	△8.6	
	6)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4,075	3,940	△135	△3.3	
	7) 양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주간	93	93	-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710	578	△132	△18.6	
	8) 여성사전시관[1]	4,352	2,411	△1,941	△44.6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2,191	11,796	△395	△3.2	
	10)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 참여 확대	386	606	220	57.0	
	1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	1,109	1,109	순증	'24년 예산은 1,077백만원
	12)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3,415	4,054	639	18.7	'24년 부터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세부사업) 폐지로 해당 내역사업 전체 이관

회계	세부사업	2024년 예산(A)	2025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	1,228	841	△387	△31.5	
	※ 5대폭력 피해자 지원 중앙 총괄 기능 수행	648	-	△648	순감	
	-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및 정책확산	-	110	110	순증	'24년 예산은 160백만원
	-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	707	707	순증	'24년 예산은 707백만원
	-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	140	140	순증	'24년 예산은 140백만원
	1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5,403	5,518	115	2.1	
	1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27	16,425	1,598	10.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68	-	△68	순감	
	1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 청소년지도사 양성[1]	-	312	312	순증	'24년 예산은 312백만원
	17) 가족역량강화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1,590	1,590	순증	'24년 예산은 2,250백만원
	18)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2]	2,070	2,070	-	-	
	19) 아이돌봄지원	467,866	513,428	45,562	9.7	
	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가족친화지원사업	830	830	-	-	
	2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4,163	28,730	24,832	637.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

회계	세부사업	2024년 예산(A)	2025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22)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2]	75,177	87,713	12,536	16.7	
청소년 육성기금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879	4,932	53	1.1	'24년부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은 내역사업 양성평등기금으로 이관
	2)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485	30,387	△1,098	△3.5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3,164	-	△13,164	순감	
	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0,855	33,079	2,224	7.2	
양성평등 기금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510	19,037	527	2.8	
	5)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497	43,167	1,670	4.0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7,961	8,123	162	2.0	
	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552,833	17,238	3.2	
	8)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2,723	△580	△17.6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시설 기능보강 지원	864	-	△864	순감	
	9)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45,197	△934	△0.6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78,077	89,783	11,706	15.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30,923	2,723	△28,200	△91.2	
총 계		1,444,349	1,535,503	91,154	6.3	

주: 세부사업명의 ※표시는 전년대비 순감된 세부사업(내역사업)임.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4]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훈령 제518호, 2020. 10.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전문평가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①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5] 부처별 성인지 대상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	2024년		2025년	
	대상사업	금액	대상사업	금액
국회	1	128	1	210
대법원	1	7,600	1	7,5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68	-	-
기획재정부	3	11,822	1	592
교육부	5	68,502	10	258,3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110,711	18	270,574
외교부	9	113,369	6	131,365
통일부	5	48,209	6	46,838
법무부	9	133,255	9	141,331
국방부	7	90,026	6	91,277
행정안전부	4	3,384	4	3,310
국가보훈부	1	3,223	-	-
문화체육관광부	21	304,034	25	379,514
농림축산식품부	14	616,059	11	311,449
산업통상자원부	5	10,112	5	9,583
보건복지부	31	4,955,584	25	5,289,975
환경부	1	2,144	3	14,709
고용노동부	35	6,102,324	34	8,091,795
여성가족부	30	1,444,349	31	1,535,503
국토교통부	7	461,773	3	227,918
해양수산부	10	18,823	11	23,966
중소벤처기업부	23	9,010,423	23	8,813,766

기관	2024년		2025년	
	대상사업	금액	대상사업	금액
인사혁신처	2	4,283	2	4,190
법제처	1	1,328	1	1,362
식품의약품안전처	1	2,366	-	-
국가인권위원회	2	173	2	173
국민권익위원회	2	30	1	8
국세청	1	432	1	432
조달청	2	16,100	-	-
방위사업청	2	43,890	-	-
경찰청	7	40,169	6	39,896
소방청	2	1,179	2	1,139
국가유산청	2	20,395	1	1,520
농촌진흥청	4	11,269	4	11,575
산림청	2	7,452	2	7,385
특허청	5	20,173	5	19,630
질병관리청	1	2,167	1	1,99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762	1	1,285
새만금개발청	1	4,648	1	3,224
해양경찰청	2	3,212	1	2,854
총계	**283**	**23,697,050**	**264**	**25,746,184**

자료: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참고자료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